ISSN 3092-0825 (Online)
ISSN 3092-0809 (Print)

젠더리뷰
Gender Review

2026
가을

기획특집: 변화하는 젠더폭력의 사각지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적 과제

- 인공지능 매개 젠더폭력의 확장·변형과 피해자 보호·지원의 과제 | 김애라
- 교제폭력 법제화 논의의 쟁점과 과제 : 관계 기반 위험과 피해자 안전을 중심으로 | 박상민
-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의 한계와 개선방안 : 현행 공공주거지원제도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황정임

이슈리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GGP MOU 체결과 의미 : 한국가족패널조사의 국제비교 연구 확장 | 조선미
-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정부지원 활동과 향후계획 | 강민정
- 단기육아휴직제 시행의 의의와 향후 과제 | 구미영

교제폭력 법제화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변화하는 젠더폭력의 사각지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적 과제

단기육아휴직제 시행

고용평등 공시제 도입

인공지능 매개 젠더폭력

한국가족패널조사의 국제 비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26 가을

젠더리뷰
Gender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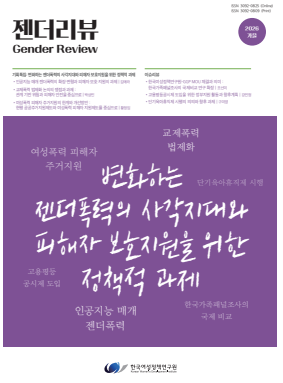

발행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인 김종숙

편집인 조선주

젠더리뷰 편집위원 (원내) 구미영, 김동식, 김영숙, 김원정, 김은경, 김효정, 배호중, 신우리, 이민호, 이승현, 이택면, 정가원, 황정임
(원외) 임희정(한양사이버대학교), 정혜윤(강남대학교)

실무간사 남정연

* 젠더리뷰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원의 공식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젠더리뷰
Gender Review

CONTENTS

2026 가을호 Vol. 82

기획특집: 변화하는 젠더폭력의 사각지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적 과제

004 인공지능 매개 젠더폭력의 확장·변형과 피해자 보호·지원의 과제 | 김애라
013 교제폭력 법제화 논의의 쟁점과 과제 : 관계 기반 위험과 피해자 안전을 중심으로 | 박상민
014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의 한계와 개선방안 : 현행 공공주거지원제도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황정임

이슈리뷰

040 한국여성정책연구원-GGP MOU 체결과 의미 : 한국가족패널조사의 국제비교 연구 확장 | 조선미
047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정부지원 활동과 향후계획 | 강민정
053 단기육아휴직제 시행의 의의와 향후 과제 | 구미영

통계로 보는 여성

060 통계로 보는 여성 건강 | 한진영

국내·외 정책동향

078 해외
101 국내

원고투고 및 자료구독 안내

120 『젠더리뷰』 원고투고 안내
121 『여성연구』 논문투고 안내
1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구독회원제' 가입 안내
123 연구보고서 판매 안내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기획특집

변화하는 젠더폭력의 사각지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적 과제

- **인공지능 매개 젠더폭력의 확장·변형과 피해자 보호·지원의 과제**
  김애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교제폭력 법제화 논의의 쟁점과 과제 : 관계 기반 위험과 피해자 안전을 중심으로**
  박상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의 한계와 개선방안 : 현행 공공주거지원제도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황정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공지능 매개 젠더폭력의 확장·변형과 피해자 보호·지원의 과제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딥페이크'를 넘어 확장되는 인공지능 매개 젠더폭력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중화는 디지털 젠더폭력의 양상을 바꾸고 있다. 불법 촬영과 촬영물 유포, 유포 협박이 기존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문제였다면 이제는 실제 촬영물이 없어도 특정인의 얼굴과 신체, 음성을 성적으로 합성·변형할 수 있다. 공개된 사진과 개인정보를 결합해 특정인을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 모욕과 위협의 문구를 대량으로 만들어 전송하는 일도 가능해졌다.

인공지능이 전혀 새로운 폭력을 만들어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기존의 성적 괴롭힘과 사칭, 스토킹, 이미지 기반 성폭력에 생성·변형·자동화 기능이 결합하면서 폭력의 방식과 규모가 달라지고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제작의 문턱은 낮아지고 확산은 쉬워졌으며 이미지·영상의 합성을 넘어 음성·텍스트를 이용한 사칭과 성적 괴롭힘, 개인정보와 정체성의 도용 등으로 피해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이 젠더폭력에 가져오는 피해 유형이 어떻게 확장·변형되고 콘텐츠의 생성과 유통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피해의 형태와 발생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합성물의 정교함이나 진위 여부만으로 피해를 설명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McGlynn과 Rackley (2017)는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의 제작과 유포를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image-based sexual abuse)'로 개념화하고 이를 존엄성, 사생활, 성적 자율성의 침해로 설명한 바 있다. 합성물에 나타난 신체가 실제 피해자의 것인지, 사람들이 이를 진짜라고 믿는지는 피해의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요소뿐 아니라 당사자의 정체성이 동의 없이 성적으로 이용되고 그 이용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 피해 지원 현장에서 나타나

는 피해 양상의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중앙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2024년 지원한 피해자는 1만 305명으로 전년보다 14.7% 증가했으며 합성·편집 피해는 1,384건으로 전년 423건에 비해 227.2% 늘었다. 합성·편집 피해자의 92.6%는 10대와 20대였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5). 물론 이는 지원기관에 접수된 사례에 관한 통계이므로 전체 인구의 피해 발생률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합성·편집 피해 전체를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한 피해로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적어도 피해 지원 현장에서 합성, 편집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도 확대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업무 계획에서 중앙·지역 지원센터 인력 확충, 탐지·삭제 시스템 고도화, 유관기관을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를 제시하였다(성평등가족부, 2026a). 같은 해 4월에는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자동화, 인공지능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 착취 선제 대응 시스템, 딥페이크 판별 솔루션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성평등가족부, 2026b).

그러나 인공지능이 젠더 기반 폭력에 이용되는 상황에서는 피해물을 탐지하고 삭제하는 것만으로 대응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탐지와 삭제는 이미 생성, 유통된 이미지나 영상에 대응하는 데에는 중요하지만, 동일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콘텐츠가 반복 생성되거나 개인정보 악용, 텍스트나 음성을 통한 성적 괴롭힘처럼 특정 파일의 삭제만으로 피해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에는 삭제뿐 아니라 반복 생성·유포에 대한 대응, 플랫폼 신고와 법률·상담 지원, 나아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등이 다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매개 젠더폭력을 이러한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여 주요 피해 양상과 현행 법·제도 사이의 간극, 피해자 보호·지원의 과제를 살펴본다.

2. 인공지능 매개 젠더폭력의 개념과 주요 양상

젠더 기반 폭력에 인공지능이 이용되는 현상은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TFGBV)에 관한 기존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UNFPA(2021)는 이를 성별을 이유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정보통신기술이나 디지털 미디어에 의해 실행·지원·악화·증폭되는 폭력으로 정의한다. 비동의 성적 이미지와 딥페이크뿐 아니라 온라인 성적 괴롭힘, 사이버 스토킹, 신상털기, 해킹, 사칭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UNESCO(2023) 역시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미지 기반 학대, 사이버 괴롭힘, 사칭과 허위정보의 생성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자동화·대량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개념들의 범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딥페이크'가 특정한 합성 기술이나 그 결과물을 가리킨다면,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는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적 이미지의 제작·이용과 그로 인한 침해에 초점을 둔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매개 젠더폭력'은 이미지뿐 아니라 음성·텍스트·대화형 서비스 등으로 확장되는 피해를 포함하고 인공지능의 생성·변형·자동화 기능이 기존 젠더폭력의 실행과 확산을 용이하게 하면서 또한 피해 양상을 변화시키는 현상을 함께 포괄하기 위한 개념이다.

가. 성적 콘텐츠 제작 기능의 상품화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져온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성적 콘텐츠 제작의 기술적 장벽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일정한 수준의 편집 기술이나 별도의 제작 도구가 필요했던 작업을 이제는 일반 이용자도 온라인 서비스나 공개된 생성모델을 통해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Gibson 등(2024)은 누드 합성(nudification) 웹사이트 20곳을 분석했는데, 이 가운데 19곳이 여성 사진의 변형을 명시적으로 내세우고 있었으며 유료 기능과 결제 수단도 제공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실제 인물의 사진으로 서비스의 성능을 시험한 것은 아니므로 광고된 기능이 모두 구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성적 이미지 변형 기능이 온라인에서 하나의 상품과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완성된 이미지뿐 아니라 특정 인물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모델 자체도 유통되고 있다. Hawkins 등(2025)은 공개 모델 저장소를 분석하여 기존 이미지 생성 모델을 특정 실존 인물의 모습을 재현하도록 추가 학습·조정한 모델 약 3만 5천 개가 공개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세 분석 대상의 96%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모델의 수나 다운로드 횟수가 곧 성적 이미지 생성이나 실제 피해의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연구는 성적 이미지의 제작과 유통이 완성된 결과물의 차원을 넘어 제작 도구와 모델의 유통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작 기능과 모델의 공유, 결과물의 게시가 서로 다른 서비스에서 이루어질 경우 특정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동일한 인물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콘텐츠가 다시 생성될 수 있다. 이는 인공지능 매개 젠더폭력의 변화가 단순히 더 많은 콘텐츠가 유통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물을 만들어내고 재생산하는 구조 자체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피해 대응에서도 개별 파일의 유통과 삭제뿐 아니라 반복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제작·유통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이미지와 음성의 성적 합성, 변형

인공지능 매개 젠더폭력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유형은 이른바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이다. 초기에는 유명인의 얼굴을 기존 성적 영상에 합성하는 방식이 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옷을 입은 사진을 나체 이미지로 변형하는 도구나 사진 한 장으로 여러 장면을 생성하는 모델, 짧은 음성 샘플을 이용해 특정인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음성 합성 등으로 기술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제작과 유통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2024년 경찰청 특별 집중 단속 과정에서 드러난 지인 합성물 공유방, 이른바 '겹지방' 사건은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해 지인의 사진으로 합성물을 제작·공유하는 구조를 보여준다(경찰청, 2024). 2026년 1월에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내장된 인공지능 기능이 실존 인물의 사진을 동의 없이 나체화하는데 이용되면서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엑스 측에 안전장치 마련과 청소년 보호 계획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였다(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2026). 생성 기능이 대규모 플랫폼 내부에 직접 결합되면서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이 동일한 서비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피해는 불법 촬영 피해와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진다. 실제 성적 촬영물이 없어도 공개된 일상 사진을 이용해 성적 합성물을 만들 수 있고, 특정

합성물을 삭제하더라도 같은 사진이나 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결과물을 다시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매개 피해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성적 촬영물의 유출뿐 아니라, 일상적인 목적으로 공개·공유된 이미지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 콘텐츠의 제작에 이용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해 피해의 출발점이 사적인 성적 이미지의 노출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으로 유통되는 사진과 정보가 비동의적인 성적 이용의 대상이 되는 데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상적인 이미지가 성적 콘텐츠로 이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피해의 중대성을 합성물의 정교함이나 사실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잡한 합성물이라도 피해자의 이름, 학교, 직장, 사회관계망 계정 등과 함께 공유되면 특정인을 겨냥한 성적 모욕이나 괴롭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 지원에서는 합성물의 완성도뿐 아니라 피해자의 식별 가능성, 공유 범위, 신상정보의 결합 여부, 협박이나 추가 접촉의 위험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나아가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겠다는 위협도 피해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은 관계 유지나 금전 지급, 추가 이미지 제공 등을 강요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합성물 자체의 제작·유포뿐 아니라 합성 기술이 기존의 협박이나 착취와 결합해 피해자를 통제하는 방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 정체성 도용과 대화형 서비스를 통한 성적 괴롭힘

인공지능 매개 피해는 이미지에 한정되지 않는다. 특정인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이용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은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은 특정인의 이름, 학교, 직장, 사회관계망 계정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성적 서사나 허위 프로필, 성매매 광고 형식의 게시물, 실제 대화처럼 보이는 성적 문구 등을 손쉽게 생성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계정을 탈취하거나 사칭 계정을 만든 뒤 피해자 명의로 성적 게시물이나 대화를 만들어내는 방식도 가능하다.

대화형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정체성 도용이 고정된 게시물의 형태로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10대 이용자를 중심으로 캐릭터 챗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청소년의 성적 대화 노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에서 실존 인물의 이름과 사진, 말투, 관계 정보를 이용해 해당 인물을 모사한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가 성적인 대화에 참여하도록 설정하거나 이를 다른 이용자와 공유한다면 특정 인물에 대한 사칭과 성적 대상화가 결합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의 특징은 성적 이미지나 신체의 시각적 재현이 없어도 특정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임신이나 성매매, 특정인과의 성적 관계 등을 사실처럼 서술하거나 피해자의 사진과 성적 설정을 결합한 허위 프로필을 만들고, 실존 인물을 모사한 캐릭터가 성적인 대화를 하도록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특정인을 성적으로 지목하고 낙인찍을 수 있다. 이는 인공지능 매개 젠더폭력의 피해 유형이 기존의 이미지, 영상 중심에서 텍스트와 대화, 정체성의 비동의적 이용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피해를 판단할 때에는 콘텐츠의 노출 정도나 음란성뿐 아니라,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정체성이 어떤 방식으로, 성적으로 이용되고 그 결과 일상과 사회관계에 어떠한 침해가 발생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해는 피해자가 얼마나 쉽게 특정되는지, 어떤 정보와 함께 유통되는지에 따라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결과물 자체만 보면 누구를 지칭하는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이를 공유하는 집단 안에서는 피해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여기에 연락처나 학교, 직장 정보가 결합되면 온라인에서의 성적 대상화가 원치 않는 접촉이나 생활공간에서의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개인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그러한 정보를 새로운 맥락에서 결합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현행 지원체계에서 충분히 포착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체계는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등 법률이 정한 피해물과 그에 결합된 신상정보의 삭제·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텍스트 기반의 성적 사칭이나 허위 프로필, 대화형 서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괴롭힘은 기존 지원체계에 곧바로 포섭되기 어려울 수 있다. 자신을 모사한 챗봇이나 사칭 계정의 존재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서비스 안에서 실제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조차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챗봇의 응답은 고정된 게시물이 아니라 이용자의 입력과 캐릭터 설정에 따라 생성되기 때문에 문제의 캐릭터 설정이 유지되는 한 유사한 성적 상호작용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개별 대화나 캡처의 삭제뿐 아니라 사칭 프로필이나 캐릭터 설정, 공개·공유 기능 등 반복적인 피해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상의 요소에 대해서도 조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화형 서비스에서는 특정한 실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규율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로 여러 캐릭터 챗 플랫폼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이나 '초등학생' 등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가 성적인 상황과 결합되어 제공된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연합뉴스, 2026. 5. 15.). 이는 특정 피해자의 권리 침해와는 별개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콘텐츠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동시에 10대의 캐릭터 챗 이용이 빠르게 늘고 성적·자극적 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실제 청소년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상호작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연령 확인과 콘텐츠 제한, 신고·차단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이때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의 판단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3. 피해 특성과 피해자 보호·지원의 과제

인공지능 매개 피해는 하나의 콘텐츠나 범죄 유형으로 정리되기 어렵다. 동일인을 대상으로 여러 형태의 이미지와 음성, 텍스트가 반복적으로 생성될 수 있고, 생성·가공·유포가 서로 다른 사람과 서비스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피해자는 무엇이 어디까지 만들어지고 공유되었는지를 알기 어렵고, 공개된 게시물을 삭제한 뒤에도 재생성이나 비공개 유통의 가능성 때문에 불안을 겪을 수 있다.

McGlynn 등(2021)은 영국·호주·뉴질랜드의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 피해자 75명을 면접하여, 피해가 일회적인 사건이나 심리적 외상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자기 감각과 사회관계, 일상의 자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특히 피해물의 재유포 가능성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피해를 끊임없이 현재화하고, 언제 어디서 다시 등장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일상적인 경계와 자기 제한으로 이어졌다. 연구자들은 이를 사회적 단절,

상시성, 실존적 위협, 고립, 자유의 제약이라는 다섯 차원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분석은 인공지능이 매개된 피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 피해물이 재유포되는 데 더해 동일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콘텐츠가 반복 생성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피해자가 무엇이 어디까지 만들어졌는지를 알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 자체가 피해의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현행 법·제도와 피해 현실의 간극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제작 단계의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되었으며 해당 편집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었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모든 성적 침해가 이 조항에 그대로 포섭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규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담은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특정인의 기존 사진을 직접 편집하거나 합성하지 않고, 텍스트만으로 그 사람을 닮은 성적 이미지를 새롭게 생성한 경우에도 이를 이 조항의 '편집·합성·가공'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더욱이 성적 문구나 허위 프로필을 생성하거나, 실존 인물을 모사한 챗봇을 성적 대화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경우처럼 피해가 이미지·영상·음성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행위는 허위 영상물에 관한 규정만으로 다루기 어려우며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의 형태에 따라 다른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술의 발전이 빠른 사회에서 결국 법적 판단은 해당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었고 그 결과 어떤 침해가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인공지능 생성 성적 콘텐츠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촬영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라고 해서, 또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촬영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성인 대상 성적 합성물이 주로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이나 정체성을 동의 없이 이용한 침해를 중심으로 논의된다면, 아동·청소년 관련 사안에서는 실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표현물 자체가 별도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촬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침해의 보호 필요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성인 피해에서도 마찬가지다. 실제 촬영 여부나 생성물의 진위보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이용과 그로 인한 권리 침해를 중심으로 피해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은 성인 피해자 보호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를 현행 피해 지원체계가 어느 범위까지 포착하고 지원할 수 있는가이다. 형사법상 처벌 가능성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경험하는 침해가 기존 지원체계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삭제 지원과 지원센터의 법정 업무는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법률에 규정된 피해 유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지만 성적 사칭이나 계정 탈취와 결합된 괴롭힘, 텍스트 기반의 성적 허위 정보, 반복적으로 생성되는 성적 메시지 등은 기존 지원 경로에 곧바로 포섭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간극은 피해 지원 통계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2025년 지원 통계에는 SNS 해킹과 사칭 등 피해자가 호소한 '기타' 피해가 1,55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체 피해 유형의 8.8%에 해당한다. 해당 보고서는 이를 피해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성평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6). 물론 이 사례들이 모두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 침해를 호소하더라도 그 피해가 현행 지원체계의 분류와 지원 범위에 포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피해자 보호·지원의 방향

피해 지원 정책에서는 먼저 인공지능 매개 젠더폭력을 폭넓게 접수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는 모든 행위를 새로운 범죄로 규정하자는 뜻이 아니다. 특히 인공지능 매개 젠더폭력과 같이 기술변화에 따라 다변화한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그 피해 자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 지원의 기준은 '법적 피해에 해당하는가?'보다 '어떤 침해와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가깝게 설계해야 한다. 피해 지원은 피해와 위험이 확인되면 시작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원 기준을 넓히는 것과 함께 지원의 내용도 인공지능 매개 피해의 특성에 맞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 삭제 지원은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의 핵심적인 영역이다. 2025년 전체 지원 서비스의 90.3%가 삭제 지원이었다는 수치는 하나의 피해물에 대해 다수의 URL을 반복적으로 삭제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인공지능 매개 피해는 동일인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의 재생성, 사칭 계정이나 개인정보의 악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삭제만으로 피해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증거보전, 계정과 개인정보 보호, 수사·법률 지원, 심리·의료지원, 학교나 직장에서의 안전조치 등을 함께 연계하는 사례관리 기능이 중요하다.

또한 피해물의 발견과 신고를 피해자 개인에게 반복적으로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UNESCO(2023)는 피해자가 스스로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지속적으로 차단·신고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의 확산과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문제 콘텐츠의 선제적 식별과 신속한 신고 처리, 반복적·자동화된 괴롭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안한다. 정부가 2026년 도입한 시스템 역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유인 정보를 자동 수집·분석하고 딥페이크 의심 콘텐츠를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성평등가족부, 2026b). 이러한 기능을 발전시키는 한편 성인 피해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의사와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반복 유포와 변형물의 탐지·모니터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플랫폼과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반복 유포 사이트에 대한 분석과 차단, 수사의뢰, 국제공조뿐 아니라 증거자료의 보존, 긴급 신고의 처리와 결과 회

신 등 피해 지원기관과 플랫폼 사이의 협력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발·운영 단계에서도 성적 합성이나 괴롭힘에 악용될 위험을 점검하고 안전장치를 반복적으로 우회하는 이용 행위를 탐지하며 피해자가 해당 콘텐츠나 계정을 신속하게 신고하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 통계를 인공지능 환경의 변화에 맞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의 개입 여부, 생성물의 형태, 실제 사진·음성의 이용 여부, 사칭이나 개인정보의 결합 여부, 반복 생성·재유포 여부, 가해자 특정 여부 등을 함께 파악해야 새로운 피해 양상과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현행 피해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침해를 호소하고 있는지를 별도로 분석한다면, 기존의 피해 분류가 포착하지 못하는 영역과 지원체계의 공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나가며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는 최근 몇 년 사이 허위 영상물 제작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중앙·지역 지원센터의 법제화, 인공지능 기반 탐지·삭제 시스템의 도입, 범정부 통합지원단 설치 등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문제는 딥페이크 영상의 증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미지와 음성, 텍스트, 개인정보와 정체성을 결합해 특정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할 수 있고 동일인을 대상으로 한 침해를 반복·변형할 수도 있다. 피해 유형은 이미지, 영상에서 음성, 텍스트, 대화형 서비스 및 정체성 도용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생성기능이 플랫폼과 서비스 내부에 결합되면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또 공유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생성과 유통이 여러 행위자와 서비스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현행 법률과 지원체계가 규정하고 있는 피해 유형만으로는 실제 피해 경험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영역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매개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은 얼마나 많은 피해물이 생성, 유통되고 있는지 뿐 아니라 기술변화에 따라 피해 유형과 발생 방식이 어떻게 확장, 변형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해 지원은 법적 분류에 앞서 피해자가 현재 겪고 있는 침해와 위험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기술이 바뀔 때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가 왜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설명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 시대의 피해 지원 정책 역시 얼마나 많은 합성물을 탐지하고 삭제했는지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지원체계에 접근하고 있는지, 필요한 보호와 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일상과 정체성에 대한 통제권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4).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 실시」 보도자료(2024. 8. 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 엑스(X) 내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미지 생성 관련 보호계획 제출 요구(2026. 1. 14.).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2026a).『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성평등가족부 (2026b).「'디지털 성범죄' 이제 인공지능(AI)으로 24시간 자동 탐지·분석」 보도자료(2026. 4. 1.).
성평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6).『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5).『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연합뉴스 (2026. 5. 15.).「[샷!] 교복 입히고 성적 요구까지…AI 캐릭터챗 성착취 논란」.

2.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undefined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https://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4%B1%ED%8F%AD%EB%A0%A5%EB%B0%A9%EC%A7%80+%EB%B0%8F+%ED%94%BC%ED%95%B4%EC%9E%90%EB%B3%B4%ED%98%B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undefine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https://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4%B1%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undefine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https://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5%84%EB%8F%99%C2%B7%EC%B2%AD%EC%86%8C%EB%85%84%EC%9D%98+%EC%84%B1%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undefined

3. 국외 문헌

Gibson, C., Olszewski, D., Brigham, N. G., Crowder, A., Butler, K. R. B., Traynor, P., Redmiles, E. M., & Kohno, T. (2024). Analyzing the AI nudification application ecosystem. arXiv:2411.09751.
Hawkins, W., Mittelstadt, B., & Russell, C. (2025). Deepfakes on demand: The rise of accessible non-consensual deepfake image generators. In Proceedings of the 2025 ACM Conference on Fairnes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FAccT '25) (pp. 1602–1614). ACM.
McGlynn, C., & Rackley, E. (2017). Image-based sexual abuse.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37(3), 534–561.
McGlynn, C., Johnson, K., Rackley, E., Henry, N., Gavey, N., Flynn, A., & Powell, A. (2021). 'It's torture for the soul': The harms of image-based sexual abuse. Social & Legal Studies, 30(4), 541–562.
UNESCO (2023). "Your opinion doesn't matter, anyway": Exposing 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in an era of generative AI. Paris: UNESCO.
UNFPA (2021). 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Making all spaces safe. New York: UNFPA.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교제폭력 법제화 논의의 쟁점과 과제 : 관계 기반 위험과 피해자 안전을 중심으로[1)]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 의한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교제폭력에 대한 입법적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교제폭력은 더 이상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갈등이나 우발적인 폭력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 역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교제폭력을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거나,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왔다. 정부 역시 교제폭력 법제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도입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교제폭력에 대한 별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현행 형사법으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은 아니다. 교제 중인 상대방에 대한 폭행·협박·상해·감금·성폭력·재물손괴 등은 이미 각각의 형사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그럼에도 교제폭력 법제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대한 사후적 처벌만으로는 교제관계에서 나타나는 지속적·반복적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제폭력의 특징은 개별적인 폭력행위 자체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에서 비롯된다. 가해자는 교제관계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와 직장, 일상생활의 패턴, 가족 및 지인관계 등 다양한 사적 정보를 알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기도 용이하다. 이러한 특성은 폭력의 반복과 통제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관계를 종료하거나 신고·고소와 같은 공적 대응

1) 이 글은 박상민·홍미리·정다은·전윤경(2026),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화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을 선택하는 경우 보복 위험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에서는 이미 발생한 개별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추가 폭력의 위험을 어떻게 조기에 발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그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실제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2023년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은 192건으로 전체 살인사건 778건의 약 25%에 해당한다.[2] 또한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신변보호 기간 중 추가 범죄가 발생한 사건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전·현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파트너 관계인 경우가 88.7%에 이르렀으며, 추가 범죄 중에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 중대범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3] 이러한 자료는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신고나 공권력의 개입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재범 및 보복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교제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 다양한 보호수단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 또는 과거의 법률상·사실상 배우자 등 법에서 정한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에 적용된다. 따라서 혼인 의사가 없는 일반적인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문제되는 행위가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결국 교제폭력 법제화에서 문제되는 법적 공백은 '교제폭력을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이라기보다, 교제관계를 기반으로 반복·심화될 위험이 있는 폭력에 조기에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위험관리의 공백'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교제폭력 법제화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세 가지 과제를 살펴본다. 첫째, 교제폭력에 대한 특별한 법적 개입이 필요한 근거를 관계 기반 위험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교제관계 또는 친밀관계의 법적 개념화 방향을 살펴본다. 둘째, 교제폭력을 가정폭력과 함께 규율하는 경우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 보호' 중심 목적을 어떠한 방향으로 재구성하여야 하는지 검토한다. 셋째,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가해자의 객관적인 위험성을 구분하여 사건처리와 피해자 보호체계를 재설계할 필요성을 살펴본다.

2. 교제폭력의 관계 기반 위험과 법적 규율

가. 교제폭력에 대한 특별한 개입의 필요성

교제폭력에 대한 법제화 논의에서는 주로 어떠한 법률의 형식으로 교제폭력을 규율할 것인지가 먼저 문제되어 왔다. 19대 국회 이후 발의된 법률안은 대체로 ① 교제폭력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2) 허민숙(2025), 친밀 관계 살인 예방을 위한 사망검토(Death Review) 도입의 입법·정책 과제, 이화젠더법학 제17권 제2호, 109면.

3) 김혁·엄윤호(2022),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가해자 조치 법제화 방안 연구, 치안논총 제38집, 718면. 신변보호사건 71건 중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전 연인, 전 남편, 부부, 연인,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한 사이, 전 배우자, 전 동거남, 배우자, 사실혼 관계, 전 동거인, 동거남, 내연관계, 법적 부부'인 사례를 집계하였다.

제정하는 방식, ②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범위를 교제관계까지 확대하는 방식, ③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여 교제폭력에 대한 보호조치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 방식은 법체계상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실제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교제관계 또는 친밀관계를 정의하고 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수단을 도입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입법형식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검토되어야 할 것은 왜 교제폭력에 대하여 일반 폭력범죄와 다른 특별한 개입수단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이다.

교제폭력에 대한 별도의 규율 필요성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인 폭력범죄에서는 개별 범죄행위가 종료되면 행위자와 피해자의 접촉 역시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소, 직장, 일상생활, 가족·친구 관계 등 다양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더라도 가해자가 직장이나 주거지 등으로 찾아오거나 주변인을 통해 접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전의 관계를 근거로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또한 교제폭력은 단발적인 폭력사건이라기보다 일정 기간 동안 통제와 폭력이 누적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교제폭력의 피해경험은 물리적 폭력에 한정되지 않고 피해자의 인간관계, 외출, 연락, 경제생활 등을 통제하는 강압적 통제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다.[4]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피해경험을 분석한 연구 역시 가해자가 관계를 통해 확보한 정보와 접근 가능성을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피해자가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긴장과 위험이 오히려 증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5]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관계의 종료와 함께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거나 신고·고소를 하는 등 가해자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할 때 폭력이 심화되거나 스토킹·보복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가해자의 관점에서 관계 종료는 기존의 통제력을 상실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제폭력의 법적 대응에서 관계 종료의 과정과 종료 이후의 위험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가정폭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배우자 또는 가족이라는 법적 관계와 연애를 기반으로 한 교제관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높은 정보접근성, 지속적인 접촉 가능성, 장기간에 걸친 통제와 폭력의 반복, 관계 종료 과정에서의 위험 증가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교제폭력에 대한 특별한 법적 개입의 근거는 특정한 관계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과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폭력의 반복 및 보복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관계 기반 위험성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교제폭력 법제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제폭력 법제화의 목적은 새로운 범죄를 추가적으로 구성하는 데 있기보다, 이미 발생한 폭력의 맥락과 향후 위험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특별한 절차와 보호수단을 마련하는 데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4) 김효정·유화정(2024), 강제된 동의, 강요된 관계: 교제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통해 본 강압적 통제의 메커니즘과 자유 탈환을 위한 여성 행위성, 여성학논집 제41권 제1호, 80면 이하.

5) 이태린(2026), 관계성 범죄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와 피해자의 긴장성 부동화 메커니즘 분석: 아동·가정·교제 폭력 및 스토킹 피해 경험에 관한 혼합방법론적 접근, 한국범죄심리연구 제22권 제1호, 40면 이하.

나. 교제관계의 법적 정의와 명확성의 문제

교제폭력 대응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을 법의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명확하여야 한다. 특히 접근금지, 퇴거 등과 같이 상대방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하려면 해당 조치가 적용되는 관계의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발의된 법안에서는 '친밀한 관계', '애정에 기인한 관계', '정서적 유대가 있는 관계' 등 다양한 개념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는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더라도 법적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는 불명확할 수 있다. '친밀성'이나 '정서적 유대'의 존재 여부가 법 집행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친밀한 관계'의 법적 개념화 가능성에 대한 신중론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일부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시된 정의만으로 단순한 친구관계 등을 명확히 배제하기 어렵고, '친밀한 관계'를 개념화할 객관적인 요소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6)]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 다만 친밀관계를 법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교제관계에 대한 특별한 법적 보호를 포기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필요한 것은 모든 교제관계를 하나의 문장으로 완벽하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는 기본적인 관계의 성격을 제시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제관계를 일정 기간 이상의 만남이나 일정 횟수 이상의 연락과 같이 정량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짧은 기간의 관계에서도 폭력과 통제가 빠르게 심화될 수 있고, 대면보다는 온라인 또는 비대면 연락을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일정한 기간이나 횟수를 법률상 요건으로 규정하면 오히려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제관계의 기본적인 성격을 객관화하면서 구체적인 관계의 실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연애 의사에 기반하여 수차례의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사적 교류를 하는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와 같이 기본적인 정의를 두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관계의 지속기간, 대면·비대면 연락의 빈도와 방식, 공동 활동의 정도, 생활 또는 경제적 연계, 관계 종료의 경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의 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가 두 사람이 '진정한 연인'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지 않다. 판단의 목적은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관계인지, 즉 그 관계를 통해 상대방의 일상과 사적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지속적인 접촉과 통제가 가능한 관계였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다. '친밀관계폭력'이라는 통합적 접근의 가능성

교제관계를 정의하는 문제는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와도 연결된다. 별도의 교제폭력 특별법을 제정하면 교제관계와 사실

6) 박동찬(2024.9.),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제안일 2024.7.10., 의안번호 제2201584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 13면; 박동찬(2024.9.),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제안일 2024.7.12., 의안번호 제2201685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 12-13면.

혼 등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을 엄격하게 구분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일정 기간 동거한 연인 사이에서 폭력이 발생한 경우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인지 단순한 교제관계인지를 먼저 판단하여 적용 법률을 결정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는 해당 관계가 사실혼인지 교제관계인지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것보다 그 관계에서 지속적 폭력과 보복의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교제폭력을 단순히 스토킹처벌법에 포함시키는 방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스토킹처벌법은 특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용대상을 설정하는 반면 교제폭력에서 특별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폭행·협박·상해·감금·스토킹 등 다양한 범죄가 동일한 관계에서 반복되거나 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친밀관계폭력'이라는 상위 범주를 통해 함께 규율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이 모든 면에서 동일한 폭력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가족관계와 교제관계는 법적 지위와 생활관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피해자가 직면하는 구체적인 문제 역시 서로 다를 수 있다.

다만 두 폭력 모두 특정 관계를 통해 형성된 높은 정보접근성과 지속적 통제 가능성, 폭력의 반복과 보복 위험이라는 점에서 형사사법적 대응의 공통된 필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친밀관계폭력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정서적으로 친밀한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과 통제가 용이하고 폭력이 지속·반복될 위험이 높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기능적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가정폭력처벌법을 단순히 교제폭력까지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공통적인 위험관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체계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교제폭력 대응 법제의 목적과 피해자 안전

가.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 보호' 목적의 한계

교제폭력을 가정폭력과 함께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경우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 목적이다.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의 특례와 보호처분을 규정하면서 그 목적으로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후 2002년 개정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현재까지도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이라는 목적과 피해자의 인권 보호라는 목적이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 보호' 목적은 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폭력의 피해자 보호와 가족관계의 유지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가족관계의 유지에 독립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 피해자의 안전과 의사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폭력범죄를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와 결합하여 가정폭력을 '형사처벌보다 관계의 회복이 우선되는 범죄'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7]

다만 '가정 보호'라는 목적이 도입된 역사적 맥락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6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던 당시에는 가해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가족관계가 해체될 경우 피해여성과 아동·노인 등이 충분한 사회보장 없이 생계의 어려움에 놓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크게 고려되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을 보호할 사회보장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피해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웠고, 이러한 현실적 조건 속에서 위기가정의 보호라는 목적이 포함된 것이다.[8]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가정 보호라는 목적은 본질적으로 형사법이 보호하여야 할 독립적인 이념이었다기보다 당시의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생존을 고려한 실용적인 타협의 성격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약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동일한 논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피해자 지원과 사회복지제도는 당시보다 확대되었고, 여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주거·자립 지원 등 다양한 제도 역시 마련되어 있다. 무엇보다 폭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전제 자체를 더 이상 국가의 형사사법 정책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을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의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화해·조정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사법적 책임을 강화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해 왔다.[9]

나. 교제폭력 법제화와 입법목적의 재구성

가정폭력처벌법의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단순히 교제관계를 법의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의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이라는 목적을 교제관계에도 확장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실제로 일부 개정안은 현행법의 가정 회복 목적을 유지하거나 교제관계의 신뢰와 보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교제폭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폭력이 발생한 교제관계의 유지 또는 회복은 국가가 추구하여야 할 형사정책적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교제관계는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관계이다. 피해자가 폭력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일시적으로 관계를 중단할 것인지, 완전히 종료할 것인지는 피해자가 결정할 문제이다.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해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제폭력을 가정폭력과 함께 규율하기 위해서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 자체를 재구성

7) 이호중(200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공청회-가정의 보호·유지에서 피해자의 보호·인권강화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70면; 고미경(2013),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 방향과 쟁점, 가정폭력방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토론회-무력화된 현행법, 이대로 둘 것인가?, 한국여성의전화, 59면; 김수정(2018),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토론회 - 가정폭력을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해결한다는 것, 7면.

8) 이찬진(1996), '가정폭력방지법' 시안의 내용과 방향,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공청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6-17면; 이찬진·이종걸(1996),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같은 자료집, 28면.

9)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2018), 대한민국 제8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2024), 대한민국 제9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할 필요가 있다. 즉 '가정의 보호와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예방,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 재범 및 보복의 방지를 법의 중심적인 목적으로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입법목적의 변화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갖는 데 그치지 않는다. 법의 목적은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처리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관계 회복이 중요한 목적이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가해자와의 화해 가능성이 사건처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반면 피해자 안전과 재범방지가 중심이 된다면 사건의 중대성뿐 아니라 반복된 폭력의 이력, 보복의 위험, 보호조치 위반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진다.

따라서 교제폭력 법제화는 단순히 기존 가정폭력 처벌법의 적용대상을 넓히는 방식이 아니라, 가정폭력 대응체계 자체를 '관계의 보호'에서 '피해자의 안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4. 피해자의 의사와 국가의 위험관리 책임

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객관적 위험성의 구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사건처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이다.

교제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는 최초 신고 이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다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요청과 반복되는 폭력의 위험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요청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두 문제를 반드시 대립적인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와 가해자가 다시 폭력을 행사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는 서로 다른 판단 대상이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가해자와의 정서적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 의존이나 주거·자녀 문제 등으로 관계를 즉시 종료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가해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믿을 수도 있으며, 처벌 이후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다고 하여 그 결정을 일률적으로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하거나 피해자의 의사결정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하는 것과 가해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폭력이 반복되어 왔는지, 과거 신고·처벌 이력이 존재하는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는지, 살해나 보복을 암시하는 위협이 있었는지,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지, 관계 종료 이후 통제와 접근이 심해지고 있는지 등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친밀관계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해자의 안전을 동일시하지 않는 관점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폭행죄와 협박죄 등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러나 친밀관계폭력의 경우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수사와 형사절차가 조기에 중단되면 비교적 경미한 폭력이 반복되다가 중대한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을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친밀관계폭력에 해당하는 폭행·협박 등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10] 이때 적용 배제의 근거를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피해자의 의사는 존중하되, 재범 및 중대한 위해의 위험을 판단하고 이를 방지하는 것은 국가가 독립적으로 부담하는 책임이라는 점에서 근거를 찾아야 한다.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처벌의사는 검사의 사건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국가의 모든 개입이 당연히 종료되는 구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 재범위험성에 따른 사건처리 원칙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객관적인 위험성을 구분한다는 원칙은 반의사불벌죄 뿐 아니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와 가해자 처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의2는 검사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 중대한 가정폭력사건에서도 폭넓게 활용되어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사건 종결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회에 제출된 일부 법률안은 이를 전면 폐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안에서는 재범위험성이 없는 사건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재범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11]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효과에 대해서도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2018년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상담프로그램 종료 이후 피해자가 보고한 신체적 폭력의 재발률은 30.8%, 언어적 폭력의 재발률은 68.4%였고, '심각한 폭력'의 재발률도 1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상담프로그램 참여만으로 재범위험이 충분히 통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렇다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반드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험성이 매우 낮고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사건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면 검사가 아무런 조건 없는 단순 기소유예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오히려 행위자에 대한 교정적 개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상담이라는 수단 자체의 존폐보다 어떠한 위험수준의 사건에서 어떠한 개입을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예컨대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반복적인 폭력이나 중대한 강압적 통제의 이력이 없으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위반한 전력도 없으며, 객관적인 위험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은 사건에 한하여 상담·교육·치료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단기간에 폭력이 반복되었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

10) 문지선(2025), 교제폭력범죄 대응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체계 개편—친밀관계 내 폭력 대응 법률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제17권 제1호, 25면.

11)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제안일 2024.7.24., 의안번호 제2202219호;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일 2024.7.30., 의안번호 제2202404호.

12) 박소현(2018),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실제와 과제, 제115차 KWDI 양성평등정책포럼—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평가와 향후 과제,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35면.

중대한 위해 또는 보복을 구체적으로 위협한 경우, 기존의 보호조치를 위반한 경우, 반복적인 신고나 형사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13]

상담이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단순히 일정 시간 프로그램에 출석하였는지만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기관의 구조화된 프로그램, 최소 이수 시간, 행위자의 태도 및 위험성 변화에 대한 평가, 전문기관의 이행 결과 통보와 검사의 확인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거나 상담기간 중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유지하지 않고 공소제기로 전환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에서 상담·교육·치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가해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형사사법적 개입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 위험평가와 피해자 보호조치의 연계

교제폭력 법제화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과제 중 하나는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의 법적 공백 역시 교제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강제적인 접근제한을 신속하게 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교제폭력 대응체계가 단순히 새로운 잠정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추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친밀관계폭력의 위험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최초 신고 당시에는 비교적 경미한 폭행사건으로 보이더라도 피해자가 관계 종료를 통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계기로 가해자의 통제와 보복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반대로 높은 위험성이 확인된 사건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분리와 적절한 관리가 지속된다면 위험수준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종료 이후까지 위험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각 단계의 사건처리와 보호조치에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위험평가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발생한 상해의 정도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폭력과 신고 이력, 폭력의 빈도와 심화 양상, 흉기 사용, 살해 또는 자살 위협, 강압적 통제, 피해자의 일상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개입, 관계 종료 과정의 갈등, 보호조치 위반 여부 등 친밀관계 전체의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평가의 결과는 경찰 단계에서만 활용되고 사라져서는 안 된다. 경찰이 초기 신고 단계에서 확인한 반복성·보복 위험 등의 정보가 검찰의 사건처분과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활용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위험 요소 역시 이후 피해자 보호에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피해자보호명령도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하다. 형사사건의 처리 결과와 피해자의 현재 안전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증거 부족이나 사건의 경미성을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접근과 보복의 위험은 남아 있을 수 있다. 반대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형의 선고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향후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와 일정

13) 가정보호사건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적용 제외 사유로 상습성, 위험한 물건의 사용, 일정 기간 내 재범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 이승현(2019), 가정폭력처벌법을 통해 본 입법쟁점과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제11권 제2호, 97-99면.

부분 독립하여 피해자의 현재 위험과 보호 필요성에 근거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교제폭력 대응에서는 응급조치나 긴급조치, 수사·재판 단계의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 가해자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형사처벌 및 집행유예 등의 제도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보다 하나의 연속된 위험관리체계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은 교제폭력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발생한 범죄에 대한 처벌'에서 '향후 위험의 예방과 관리'를 포함하는 체계로 확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5. 맺는 말

결국 교제폭력 법제화의 실질적인 성패는 새로운 법률의 제명이나 범죄명을 만드는 데 달려 있지 않다. 신고된 교제폭력 사건이 다시 중대한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언제 개입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하며, 어느 시점까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관리를 지속할 것인지에 관한 일관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가'가 보다 본질적인 문제이다.

향후 교제폭력 법제화 논의는 이러한 관점에서 '어떠한 관계를 법의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넘어, '어떠한 관계에서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며 국가가 그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제폭력에 대한 대응 역시 사후적 처벌을 중심으로 한 체계를 넘어 친밀한 관계에서 누적되는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미경(2013),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 방향과 쟁점, 가정폭력방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토론회-무력화된 현행법, 이대로 둘 것인가?, 한국여성의전화.

김수정(2018),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토론회-가정폭력을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해결한다는 것

김효정·유화정(2024), 강제된 동의, 강요된 관계: 교제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통해 본 강압적 통제의 메커니즘과 자유 탈환을 위한 여성 행위성, 여성학논집 제41권 제1호.

김혁·엄윤호(2022),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가해자 조치 법제화 방안 연구, 치안논총 제38집.

문지선(2025), 교제폭력범죄 대응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체계 개편—친밀관계 내 폭력 대응 법률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제17권 제1호.

박동찬(2024.9.),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제안일 2024.7.10., 의안번호 제2201584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 13면

박동찬(2024.9.),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제안일 2024.7.12., 의안번호 제2201685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 12-13면.

박소현(2018),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실제와 과제, 제115차 KWDI 양성평등정책포럼—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평가와 향후 과제,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2018), 대한민국 제8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2024), 대한민국 제9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이승현(2019), 가정폭력처벌법을 통해 본 입법쟁점과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제11권 제2호.

이찬진(1996), '가정폭력방지법' 시안의 내용과 방향,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공청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이찬진·이종걸(1996),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공청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이태린(2026), 관계성 범죄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와 피해자의 긴장성 부동화 메커니즘 분석: 아동·가정·교제 폭력 및 스토킹 피해 경험에 관한 혼합방법론적 접근, 한국범죄심리연구 제22권 제1호.

이호중(200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공청회-가정의 보호·유지에서 피해자의 보호·인권강화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허민숙(2025), 친밀 관계 살인 예방을 위한 사망검토(Death Review) 도입의 입법·정책 과제, 이화젠더법학 제17권 제2호.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의 한계와 개선방안 : 현행 공공주거지원제도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중심으로[1)]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며

그동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서 주거지원은 폭력 발생 공간으로부터 여성폭력 피해자를 분리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인 쉼터 혹은 생활시설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쉼터 혹은 생활시설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최근 들어 노후된 시설, 협소한 공간, 공동생활에 따른 개인공간이나 개인생활, 자율성 보장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현행 보호시설 중심의 주거지원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선택권을 확대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준비로서의 주거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폭력피해여성의 주거지원 관련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해여성에게 집이 먼저 해결된다면 나머지 문제들은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지금처럼 보호시설을 경유하고 자립이 준비된 경우에 주거지원이 제공되는 한정적이고 단계적 접근이 아니라 선제적인 주거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그런 면에서 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도 필요하지만, 변화하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거지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방식을 다변화하여 여성폭력 피해자의 여건과 수요 등에 부합하는, 보호시설 이외의 다양한 주거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 본 원고는 황정임·정수연·홍미리·송아영·임세희(2025)의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안적 주거지원 방안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보고서를 참고한다.

2) 고은정(2022).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주거 이동 경험과 맥락에 관한 연구: 자기만의 방을 향한 불완전한 분투. 가족과 문화 34(2): 1-59. p.9.

2.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관련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가.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주거지원 관련 법적 근거

「여성폭력방지법」 제15조(피해자 보호·지원) 및 「성폭력방지법」 등 개별 법령에 주거지원이 규정되어 있지만 주거지원의 범위, 주거지원을 위한 내용, 방법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여성폭력방지법」 제15조(피해자 보호·지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3]. 주거지원과 관련된 별도 조항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개별 법령의 경우도 「여성폭력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주거' 혹은 '주거지원' 관련 별도 조항은 없고, 국가 책무 관련 조항의 세부 내용으로 언급되어 있다. 보호시설이나 상담소 등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업무, 설치·운영 등에 대한 개별 조항이 있고 구체적으로 기술된 것과 달리, 주거지원은 국가 책무 관련 조항의 세부 내용만 명시되어 있다. 다만, 가정폭력의 경우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와 관련해 법률과 시행령에 별도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제4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가 규정되어 있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에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이는 임대주택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우선 입주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보호시설 및 주거지원시설 입·퇴소를 전제하고 있고, 신청 가능한 기간을 퇴소 이후 특정 시점으로 제한함으로써 제도 이용의 접근성을 제약할 수 있다.

한편, 주거지원정책은 「대한민국헌법」에서 가장 큰 틀을 정하고, 「주거기본법」에서 주거권을 정의하고 정책 대상을 정하고 있다. 즉 소득수준과 생애주기 등에 따라 주택이나 주거비를 스스로 마련할 수 없으면 국가가 이를 지원하고 개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중에서도 특수한 상황이나 필요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해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설정해 왔다.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2호에 따르면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5], 여기에 여성폭력 피해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여성폭력방지기본법 (검색일: 2025.6.14.)
4) 「가정폭력방지법」. https://www.law.go.kr/법령/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검색일: 2025.11.10).
5) 「주거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주거기본법 (검색일: 2025.12.7.)

<표 1> 여성폭력 관련 법제의 주거지원 관련 조항

법률	내용
여성폭력방지법	제15조(피해자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성폭력방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성매매방지법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스토킹방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여성폭력방지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https://www.law.go.kr/법령/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검색일: 2025.6.14.)

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내 주거지원제도 현황과 문제점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과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보호시설 형태가 아닌 개별주거(독립주거) 형태로 제공되는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 주거수요 충족 및 주거전환 지원 기반 취약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은 2008년에 서울, 부산 지역에 임대주택 24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사업'용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 물량으로 받아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1개의 운영기관에 임대주택 10호 내외를 배정해 운영하고 있다. 임대기간은 2년 원칙이며(2년씩 연장 가능),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공실 현황, 입주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는데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을 면제하고 운영기관에서 부담하며, 관리비(월 임대료 포함)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로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가정폭력, 성폭력, 스

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다수이고, 성매매 피해자는 제외되고 있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자립의지(계획) 등을 기준으로 여성폭력 피해자지원기관(보호시설, 상담소, 1366 등)의 추천을 통해 입주 대상을 선정하고 있어서, 이들 기관을 이용하거나 경유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둘째, 전국에 354호가 운영되어(2024년 기준) 주택 수가 충분하지 않고,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임대주택의 80% 가까이가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거지원 수요는 수도권에 많아 공급과 수요간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거주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지만, 주택 물량 확대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서 신규 이주도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임대주택이 노후화되어 안정성, 단열·난방 부분에서 취약하고, 생활설비나 가구, 가전 노후 문제 등도 존재하며, 주택수리나 교체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속·반복적 공실도 존재한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높아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넷째, 임대주택 10호 중 4호 가량은 비상벨, 안전벨, 침입감지기, 현관/창문 이중 잠금장치 등의 기타 안전설비가 미설치 상태여서, 가해자에 의해 폭력이 언제라도 다시 발생할 수 있음을 상기할 때 다양한 방식의 안전 조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들은 입주 기간 동안의 생활 지원, 입퇴소 과정에서의 주택 및 입주자 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립상담원 1인이 10호의 주택을 담당하고 있어서 임대주택 퇴거 후 주거지 마련 등을 위한 밀착된 지원을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

실제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이용 경험에 따르면,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에서 제공되는 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입주 및 이주 일정이 기약 없이 지연되거나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여 입주·이주 예정인 이용자들이 주거 계획을 세우지 못해 혼란을 겪고, 운영기관에 따라 지원의 밀도와 지원 연속성에 있어 편차가 있었다.

2)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사업 : 긴급보호를 위한 주거지원, 퇴거 후 주거 마련 지원의 한계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사업은 스토킹(교제폭력 포함)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동거인 포함, 성별을 기반으로 한 폭력으로서의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채권·채무관계·층간소음 등의 갈등으로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긴급 주거지원과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제공한다. 긴급 주거지원은 원룸 오피스텔 등 임시숙소를 활용한 긴급 보호·지원으로, 30일 이내로 이뤄지고 24시간 상담 및 숙소 관리 등 피해자 지원을 제공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3개월 이내, 1회 연장이 가능하며(2025년 기준), 개별 거주 및 일상생활(출퇴근 등)이 가능한 임대주택, 입주자 상담 및 주택 관리·점검 등 피해자 지원을 제공한다. 긴급 주거지원과 마찬가지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본 사업은 직장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가해자에게 노출 가능성이 상존한 상태여서 CCTV 설치, 112신고 비상벨 설치, 입주자 동선 확인 등 주거지원에서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기존 주거지가 노출되어 주거이동이 필요한데, 안전하고 안정적인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기에는 입주기간이 짧고, 주거지원

관련 전문성이나 인력 등 주거 전환을 위한 지원 기반이 취약하다.

실제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스토킹피해자 주거지원사업 이용 경험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은 경찰 단계에서 타 기관 경유 없이 빠르게 입주하였고, 입주자 1인의 독립 생활공간으로 운영되어 개인 활동의 제약은 크지 않았지만, 안전을 위한 규칙들이 있었다. 그러나 입주 기간이 짧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운영기관의 역량과 인력이 충분치 않아 퇴거 이후 주거이동의 선택지가 피해자 보호시설 혹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에 한정되어 주거이동의 단절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과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주거(임대주택 기준)에 대해 접근성, 주택상태, 안전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6],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은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골고루 분포하지만, 4점(매우 양호)에 가까운 경우는 없었고, 스토킹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은 주택 상태나 안전 상태는 양호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황정임·정수연·홍미라·송아영·임세희(2025)의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안적 주거지원 방안 연구'. p.88.

[그림 1]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및 스토킹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의 주택상태 및 주거환경 비교(임대주택 중심)

다. 공공주거지원제도 내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현황 및 문제점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공공주거지원제도 내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 : 주택공급대상으로 제도화, 실제 수혜는 제한적인 운영 구조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이용 자격은 부여하였으나, 실제 수혜는 제한적인 운영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성폭력 및 가정폭

6) 각 운영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 1.매우 불량~4.매우 양호를 기준으로 응답한 결과를 평균을 제시함. 자세한 조사 결과는 황정임·정수연·홍미라·송아영·임세희(2025)의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안적 주거지원 방안 연구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함.

력 피해자가 우선공급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는 '나. 장애인 등(20%) 우선공급'에 포함되어 있는데, '나'에 포함된 대상 집단은 총 18개 집단이다(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포함). 따라서 다수와 경쟁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물량 확보나 확대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동일 순위 내 경쟁할 경우 역시 연령이 높고, 부양가족 수와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지 등에 따라 선정되므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결국 우선공급 대상에 속하나, 다른 주거약자 집단들과 함께 묶여 있어서 할당도 적고 경쟁률이 높아 선정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다.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경우[7] 일반 공급/기존 공급에서는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별도 고려가 없고, 운영기관을 선정해 운영기관에게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공동생활 특례 방식만 존재한다.

공공임대주택 자기부담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 중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계약 시 임대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것인데,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금액 수준은 상이하다. 전세임대는 보증금의 5%나 2%, 영구임대는 250만 원이나 150만 원 등인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1호, 3호, 4호[8]에 해당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모두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이다. 이는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므로 자기부담금을 낮춘 것이다. 그런데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다른 대상자들은 50만 원이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한데, 2호에 명시된 가정폭력 피해자는 각 임대주택 유형별 표준보증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5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어 이중 지원이 된다는 이유인데,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는 전세임대를 신청하려면 보증금의 5%나 2%를 부담해야 하므로 자기부담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신청 과정에서도 여성폭력 피해 특성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하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과거에는 세대주만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는데, 이때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있는 모든 구성원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가정

7) 매입임대주택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기 매입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방식이고,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LH 청약+. 임대주택 가이드. 매입임대.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1508&cntntsId=1029 ; LH 청약+. 임대주택 가이드. 전세임대.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240&cntntsId=1143 (검색일: 2025.10.3.)

8)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https://www.law.go.kr/행정규칙/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최종 검색일 : 2026.9.8.)
제3조(입주대상자)에 따르면, 1호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각 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라목의 경우 3개월 이상 노숙인시설에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쪽방(상가건물 내 쪽방을 포함한다)
나. 고시원, 여인숙
다. 비닐하우스
라.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마. 컨테이너, 움막 등
바. PC방, 만화방
사. 최저주거기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 6] 제5호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미달하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이하 "지하층"이라 한다.)과 시장 등이 홍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
아. 「최저주거기준」제3조에 따른 필수설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옥탑방
3호는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4호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

폭력 피해자가 이혼을 하지 않아 등본상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자산이 있거나 주택이 있으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주택이고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무주택 여부, 자산 및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어렵다. 주소를 분리하면 신청자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소득과 자산만 적용될 수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고 있을 경우 주소지 노출 우려로 주소지 등록이 어렵고, 다른 주소지를 등록할 곳이 없으면 결국 이혼할 때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지 못하기도 한다. 보호시설 등에서 사실상 이혼관계 확인서를 발급받아 LH에 제출하여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을 제외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균질하게 모든 지역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혹은 LH 지역본부마다 그 판단과 적용이 상이하다.

또한 임대주택 신청은 등록된 주소지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많은 사회복지제도를 신청하려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주민센터에 해야 하는 것처럼 공공임대주택(국민주택 제외)도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폭력 피해자는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주소지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해 폭력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에 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제약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 했던 가정폭력 피해자가 트라우마 때문에 등록주소지를 방문하지 못해 결국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

한편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공공주거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도 어려웠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공공주거지원제도에 대한 이해와 역량에도 차이가 있고, 피해자 지원기관과 주거지원기관이 유기적인 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의 정보접근성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아서 개인이 공공주거지원제를 찾아나서지 않더라도 보호시설과 주거지원센터 간의 업무 협력 프로세스를 통해 주거 안정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두 영역 간 협업 사례가 드물어, 제도 접근과 이용은 비체계적이며 우연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2) 주거상향지원사업 :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외 여성폭력 피해자까지 확대 적용 미흡

주거상향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긴급하게 주거가 필요한, 예를 들어 고시원이나 쪽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미혼모, 한부모 등에게 긴급하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상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모집기간이 있는데, 이러한 주거취약계층은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집 기간이 없이 상시적으로 주거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즉시 신청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거상향지원사업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9], '등'과 관련해 규정에 대한 판단의 여지를 두었지만 많은 경우 가정폭력에만 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주거지원 실무자들은 가정폭력 이외에 다른 폭력 피해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도하지만, 주거상실

9)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https://www.law.go.kr/행정규칙/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업무처리지침/ (검색일: 2026.9.8.)

상황에 놓여있는 성폭력, 성매매 등 다른 여성폭력 피해자까지 폭넓게 해석하지 않고, 폭넓게 판단되더라도 그건 담당자에 따라 좌우된다. 다른 여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여부가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성폭력 피해자 전반으로 확대하려면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정책 개선 방안

가.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의 성격 : 주거권 및 주거취약계층으로의 포괄적 접근 필요

주거지원정책은 인권 차원에서, 주거를 권리로 접근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되어 왔다.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4호(1991)(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규약 제11조 1항)」에 따르면[10], '주거권은 '단순히 비를 피할 지붕이 있으면 된다는 식의 좁거나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안전하고 편리하며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곳에서 살 권리'이며, '적절한 주거'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때 '적절한 주거'란, 적절한 사생활, 적절한 공간, 적절한 안전, 적절한 조명과 통풍, 적절한 기본적 인프라, 직장과 기본 시설 이용에 대한 적절한 위치 등을 의미하며, 이 모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한편 UN의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2019)[11]에 따르면, 여성은 적절한 주거권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차별에 직면하고, 이에 국가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기반 위에서 '적절한 주거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여성의 적절한 주거권에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거권도 포함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거권보장을 위해, 국가는 1) 여성폭력 피해자가 안전하고 부담가능한 다양한 주거지를 제공해야 하며, 2) 강제퇴거로부터의 보호, 3) 긴급주거와 전환주거의 제공, 4) 장기적인 주거 대책, 5) 사회주택에서의 우선 공급순위에 배치, 6) 임대료 지원, 7) 젠더기반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서비스들과의 협력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간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거권에 대한 논의와 문제제기는 가시화되지 못했는데, UN 등의 논의, 일반적인 주거권 논의 등을 볼 때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은 '주거권'의 개념 속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즉 주거권의 개념 속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거지원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주거 대안이 부족하여 폭력 상황에 머무르지 않도록, 부담가능한 다양한 주거지를 제공해야 하고, 폭력피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쾌적하며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도 주거권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의 환경권,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16조의 주거의 자유 등에 주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에서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2]. 이에 따라 주거빈곤, 주거불

10)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04호(1991):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규약 제11조 1항)」. https://uhr.humanrights.go.kr/pub/uhrstd/409 (검색일: 2025.6.14.)

11)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2019).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p.21

안, 주거취약, 주거위기 등의 다양한 개념에 근거하여 주거지원의 정책 대상을 주거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13], 정책 대상 범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이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주거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여성폭력 피해자는 주거취약계층의 범주에서 상대적으로 가시화되지 못하여 일부 특정 피해 유형 및 특정 지원제도에 국한되어 왔다. 주거지원 정책 대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들 중 주거취약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폭력 피해자도 주거취약계층에 속하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거지원제도를 통한 주거지원의 정책 대상이어야 한다. 즉 현재의 주거가 얼마나 취약한지 뿐 아니라, 어떤 계기로 주거문제를 겪게 되었는지,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지, 주거문제가 악화가 될 상황인지 등의 동태적 의미에서 주거 취약성을 규정했을 때, 여성폭력 피해자는 주거취약계층인 것이다. 왜냐하면, 폭력 발생 혹은 폭력 위협의 긴급하고 위기적인 상황을 피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거지를 상실하게 되고, 가해자로부터의 안전 보장, 피해에 따른 치유와 회복, 자립 등을 이루기까지는 주거상실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특정 피해 유형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여성폭력 피해자 전체가 주거취약계층으로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피해 유형이 아닌 포괄적으로 접근되어 주거취약계층으로서 국가의 공공주거지원제도 안에서 가시화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여성폭력 피해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거지원제도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전략 : 해외 동향을 중심으로

OHCHR(2012)의 WOMEN AND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에 따르면, 여성폭력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내용을 권고하고 있다[14]. 첫째, 여성의 주거권을 제한하는 법·정책 등을 개정·개선하고, 주거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며, 폭력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하는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셋째,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지 내외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법률지원, 심리지원, 사회적 자원 등을 위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유관기관들이 협력해야 한다. 다섯째, 여성의 주거권 관련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 설계 및 이행 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한편,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에 대한 논의가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하우징 퍼스트는 주거를 먼저 제공하고 주거 유지 및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추후에 지원하는 것이다. 즉 계단식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 '주거 준비'가 완료된 후에 주거를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하우징 퍼스트는

12) 「대한민국헌법」.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검색일: 2025.12.7.)

1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미선·조정희·허소영·이후빈·임이랑·윤진희·송아영·다무라 후미노리(2021)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 및 대응 전략', 최은희·조승연·이슬해(2023)의 'LH 임대주택 중장기 공급·운영 발전 방안 연구', 이길제·김지혜·윤성진·박미선·우지윤·임지현(2022)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 방안 연구' 등을 참고한다.

14)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2012). WOMEN AND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pp.74-80.

주택을 계단식 모델에서처럼 '마지막'이 아니라, '먼저' 제공함에 따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우징 퍼스트 관점은 주류 정책은 아니지만, 하우징 퍼스트에 기반한 정책이 확산되고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성과를 낳고 있다[15].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도 쉼터 등을 경유한 후에 주거지원이 제공되는 단계적 접근에서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이탈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하우징 퍼스트 논의가 시도되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하우징 퍼스트 모델(Domestic Violence Housing First Model, 이하 DVHF)[16]에서는 '주거(안전한 주택)를 우선(First)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안전한 주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문제(예를 들어 고용, 교육)도 지원하며, 주거비용뿐 아니라 안전과 웰빙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한 현금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독립주거 방식의 주거지원에서 피해자의 안전 문제 대응도 강화하는 전략이 시도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독립주거에서의 안전 논의가 부족했는데, WASHINGTON STATE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의 Domestic Violence Housing First에 따르면[17], 독립주거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피해자가 안전에 대한 판단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그 선택을 존중하되 위험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2) 입주할 때 입주 전, 입주 후, 입주 기간이 유지되는 동안의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연락 방식, 주소 관리, 비상 대응 방법 등),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하고, 3) 우편물, 행정문서 등에서 주소 노출을 줄이는 절차를 진행하고, 4) 디지털기기/기술을 활용한 안전 체크리스트(위치추적 기능 점검 및 제거 등)를 마련·실행하며, 5) 보안문/잠금장치/비상연락 체계 등 물리적·비상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물리적 안전 뿐 아니라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재정적 안정, 사회적 연결, 심리적 회복 등도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

1) 여성폭력 피해자를 포괄하는 주거지원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와 같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개별 피해 유형을 나열하여 특정 피해 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여성폭력 피해자 전체를 포괄하여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거권을 제기하고 주거지원제도의 정책 대상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가시화하여 시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판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의 제2호에 여성폭력 피해자를 추가하며, 이때 여성폭력 피해자는 「여성폭력방지법」 제3조 1호(여성폭력 정의)와 2호(여성폭력 피해자 정의)의

15) 임덕영(2023).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하우징 퍼스트 관점에 기반한 노숙인 지원 현황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가을호 Vol. 26. pp.65-67.
16) 이인선·김보화·최지현·차정음(2023).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pp.41-42
17) WASHINGTON STATE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Domestic Violence Housing First Toolkit. https://wscadv.org/projects/domestic-violence-housing-first/toolkit/survivor-driven-trauma-informed-mobile-advocacy/?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10.14.)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조(정의)에 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표기된 내용을 여성폭력 피해자로 변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성폭력방지법」 제15조(피해자 보호·지원)의 하위로 제15조의 1(주거지원)을 신설하고, 신설된 조항에서는 주거지원에 대해 정의하고, 주거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 실무적인 부분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때 주거지원에 대한 정의는 기존 보호시설을 통한 보호와 그 외의 다양한 주거지원제도를 포괄함으로써, 현행 보호시설 중심에서 보다 더 다양한 주거지원 경로를 마련하고,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주거지원사업 운영 개선

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의 운영 개선

첫째, 보호시설을 퇴소했으나 독립을 위한 자원이 부족한 폭력피해여성들이 독자적인 삶을 꾸릴 수 있는 안정적인 독립주거(민간임대, 공공임대 등)를 마련하여 퇴거할 수 있도록 주거 준비(전환)를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주거 전환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사업 위탁방식이 아닌 주거지원 전담기관으로 전환하여, 거주기간 동안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보다 더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주거 전환을 위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사업 위탁방식 구조를 전면적으로 변경하기 어렵다면 현재 10호당 자립상담원 1명을 배치하는 것에서 최소 2~3명으로 확대해 생활상담, 주택관리 뿐 아니라 '주거전환을 위한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후화된 임대주택을 교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나 LH, 지방자치단체 등 간에 실무협의 채널을 운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전제품 등 노후화된 제품 교체 및 구비를 위한 기능 보강비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입주자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 지원을 상향하고 월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전환보증금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독립주거에서의 안전 문제는 다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과 구분되는,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므로, 안전문제가 여성폭력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혹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운영기관의 책임과 부담으로만 맡겨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는 안전 설비 예산을 마련하고,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정례적인 순찰 등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운영기관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CCTV, 잠금장치 등 물리적 안전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주소지 노출 등을 줄이며, 입주자 개인별로 안전 관리 혹은 안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계획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입주자의 안전 관련 인식과 대응 행동을 개선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입주자 선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현행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의 입주대상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운영 관련 근거 법령 역시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 「스토킹방지법」으로 되어 있는데,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된 주거지원 관련 규정도 포함하여,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의 포괄범위를 변경해야 한다. 더불어 입주 우선순위의 추천기관에서 '가정폭력상담소장'으로 특정되어 있는 것을 '상담소장'으로 변경하여 보호시설장, 상담소장,

1366센터장 등과 같이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피해 유형에 무관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포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사업 운영 개선

첫째, 현재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은 긴급주거지원이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확보된 주거지의 성격(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과 보호기간의 차이를 둔 '긴급' 보호의 성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고정된 지역(공간)보다는 경찰서 인근 등 긴급하게 안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 방식은 유지하되, 기존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하고,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3개월, 긴급주거지원은 30일로 구분해 왔던 것을 긴급 주거지원 중심으로 단일화하면서 주거지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긴급 주거지원 이후에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 전환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긴급보호 이후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주거 전환(새로운 주거 마련) 지원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운영 등의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3)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가) 공급대상을 개별 피해 유형이 아닌, 여성폭력 피해자로 변경하여 규정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에 명시된 우선공급 대상 중 '나.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기 포함되어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규정을, 성폭력, 가정폭력 뿐 아니라 스토킹/데이트폭력/성매매 피해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여성폭력 피해자'로 변경해야 한다. 이때 여성폭력 피해자는 「여성폭력방지법」 제3조 1호(여성폭력 정의)와 2호(여성폭력 피해자 정의)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외에 국민임대주택 신규공급은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여성폭력 피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의 경우 각각의 업무지침에 공동생활가정 등 운영 특례(각 지침 4장에 공동생활가정 등 운영 특례가 위치함)가 있는데, 이들 지침에 성폭력, 가정폭력, 탈성매매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는 대상자 규정을 '여성폭력 피해자'로 변경해야 해야 한다. 이때 여성폭력 피해자는 「여성폭력방지법」 제3조 1호(여성폭력 정의)와 2호(여성폭력 피해자)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임대주택 신청 시 보호시설 거주기간 관련 규정 변경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4]에 명시된 우선공급과 관련한 자격요건 중 가정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규정은, 「가정폭력방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은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성폭력방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하고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다. 최근에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서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이와 같은 규정은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임대주택 신청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최근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도 시설에서의 거주기간을 임대주택 신청 요건으로 설정했던 것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자 한 바, 여성폭력 피해자도 현행 보호시설의 6개월 이상 입소 기간 요건을 단축하거나 퇴소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한 것을 5년 이내로 변경해야 한다.

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폭력 피해에 따른 예외 인정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등에 의한 피해 발생이 있을 수 있고 이들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한 주거 공간이 필요하여 임대주택을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 등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임대주택 신청이 제약되고 있다. 따라서 가구 단위로 입주 자격을 심사하는 것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 최근 자립준비청소년(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해 건설임대의 입주자격을 소득과 자산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에서 '본인'의 무주택으로 변경하였는데[18], 여성폭력 피해자 역시 본인의 무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가구 단위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적용을 유지할 경우 사실상 이혼관계 확인서를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배우자의 자산이나 소득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거상실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상 이혼관계 확인서'는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가 해소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초연금 수급 등 특정 목적으로 법률상 이혼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혼 상태임을 입증하여 소득 산정을 변경하거나 분리된 가구로 인정받고자 사실상 이혼 관계를 확인해야 할 경우 사용되고 있음을 참고한다.

라)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가해자의 침입 등 폭력 피해 등 입주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주거이동이 필요할 경우 이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여성폭력방지법」 제15조의 1(주거지원)을 신설할 경우 여기에 입주자 주거이동 관련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주거이동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동가능한 주택의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민들이 주거이동 과정에서 불편을 겪음에 따라, 주거이동이 필요한 사유를 규정하고 이때 범죄 피해를 포함하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18)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5.9.22.일자). 여성가족부, 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강화.

4)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정책의 운영기반 마련

가) 주거정책 수립·추진 과정에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수요 반영을 위한 성평등가족부 참여 확대

「주거기본법」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여기에는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주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동법 시행령[19] 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10개의 중앙행정기관[20]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성평등가족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주거정책 수립 및 주거지원제도 운영 과정에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거수요를 반영하고,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 기 확보된 임대주택 중 노후주택 개량, 주거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원회에 성평등가족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5조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5년마다 수립되는 여성폭력방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0년마다 수립되는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과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 통계 생산

증거기반정책 수립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거 실태 및 주거 수요, 주거지원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취합·생산하여 시계열 자료로 구축하는 것은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의 설계 및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 작업이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3년마다 진행되는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거 현황, 주거 수요 등을 파악함으로써 기초 실태를 파악하고,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과 스토킹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을 통한 주거지원 실적을 체계화하여 기초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취합된 통계 자료를 토대로 3년마다 공표되는 여성폭력통계에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거 관련 통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공주거지원제도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통계를 산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 시도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주자격 기초 조사서'에 따르면, 대상자 유형 중에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도록 해서, 가정폭력 피해자 등과 관련된 통계 산출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국토교통통계누리 플랫폼에 공시하거나 국토부가 발간하는 주택업무편람에 게재하거나,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의 주거 메뉴에 포함하는 등 주거복지제도 관련 통계에도 포함되어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 「주거기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주거기본법 시행령 (검색일: 2026.11.03.).

2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경제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정보 제공체계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했기 때문에,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주거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개괄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는 대한민국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보들이 누락되거나 오기되어 있어서,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관련 제도 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누락 여부, 정보 오류 여부 등을 점검하여 보완해야 한다. 둘째, 공공 주거지원제도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도움될 수 있는 정보는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가공 혹은 정제하여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 인력, 예산과 조직 등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LH 청약+. 임대주택 가이드. 국민임대.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cntntsId=1021&mi=1142 (검색일: 2025.10.3.)

LH 청약+. 임대주택 가이드. 매입임대.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150&cntntsId=1029 (검색일: 2025.10.3.)

LH 청약+. 임대주택 가이드. 전세임대.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240&cntntsId=1143 (검색일: 2025.10.3.)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2012). WOMEN AND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pp.74-80.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2019).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p.21

WASHINGTON STATE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Domestic Violence Housing First Toolkit. https://wscadv.org/projects/domestic-violence-housing-first/toolkit/survivor-driven-trauma-informed-mobile-advocacy/?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10.14.)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이슈리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GGP MOU 체결과 의미 : 한국가족패널조사의 국제비교 연구 확장**
  조선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정부지원 활동과 향후계획**
  강민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단기육아휴직제 시행의 의의와 향후 과제**
  구미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한국여성정책연구원–GGP MOU 체결과 의미 : 한국가족패널조사의 국제비교 연구 확장

조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2026년 7월 6일(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WDI)과 세대와 젠더 프로그램(Generations and Gender Programme, GGP) 간 연구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1]. GGP는 네덜란드 학제간인구학연구소(Netherlands Interdisciplinary Demographic Institute, NIDI)가 주관하는 국제 연구 프로그램으로, '세대와 젠더 조사(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GGS)'라는 국제 인구·가족 종단조사를 통해 가족과 개인의 생애 변화를 장기간 추적하고 국가 간 비교자료를 구축해 왔다. GGS-II Wave 1에는 한국을 포함한 25개 이상의 국가·지역이 참여하였거나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2].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26년 착수된 한국가족패널조사(Korean Family Panel Survey, KoFPS) 1차 웨이브에 GGS-II Wave 1의 국제 공통문항을 포함함으로써 한국 GGS를 수행하고 있다(조선미 외, 2025:56-57).

한국가족패널조사(2026~)는 여성가족패널조사(2007~2025)의 후속조사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약 20년간 축적한 가족 종단조사의 성과를 이어 개인의 생애과정과 가족생활의 변화를 장기간에 걸쳐 추적하도록 설계되었다. GGS의 도입으로 한국 가족패널은 기존의 종단적 조사체계에 국제비교의 관점을 더해 한국의 가족변화를 다른 국가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GGP의 협력은 2023년 GGS 참여를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꾸준히 이

1) Generations and Gender Programme. (2026.7.8.). GGP Korean National Team Visits GGP Central Hub. https://www.ggp-i.org/news/general-news/ggp-korean-national-team-visits-ggp-central-hub/ (최종 접속일: 2026.9.28.). Generations & Gender Programme

2) Generations and Gender Programme, GGS - Round II, https://www.ggp-i.org/data/generations-and-gender-survey/ggs-round-2/ (최종 접속일: 2026.9.02.).

어져 왔다. 2025년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한국·대만·노르웨이·독일의 GGS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국제비교 세션을 구성하고, GGP 총괄책임자(Director)인 Anne H. Gauthier 교수의 해외 초청강연을 개최하는 등 국제비교 연구를 위한 학술교류도 확대하였다(조선미 외, 2025:53, 68).

올해 양 기관이 체결한 MOU는 한국가족패널의 국제비교 데이터 생산과 공동연구 참여를 연계함으로써, 국내 가족·성평등 연구와 GGP 국제연구 네트워크 간 협력의 접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본원은 국제비교 데이터의 생산주체로 참여하여 국제 연구자들의 비교연구 수행에 기여하는 한편, 공동연구에서 도출된 성과를 국내 가족·인구정책 연구에 다시 활용하는 환류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지에서는 한국가족패널의 GGS 참여가 한국의 가족·젠더 변화를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데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이번 MOU를 계기로 확대된 연구협력과 국제비교 가족·성평등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한국가족패널과 GGP: 한국의 가족·성평등 변화를 국제비교로 읽기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서도 성평등과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고려가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2026년 9월 시행된 「인구전략기본법」은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성평등 실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구형태를 고려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도 정책과제로 포함하고 있다(동법 제4조 제2항 및 제10조). 이러한 변화는 저출생 대응을 포함한 인구정책의 방향을 가족구성의 다양성, 일과 돌봄, 생애과정 전반의 성평등 여건과 함께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3].

특정 시점의 인구지표와 실태만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개인의 삶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나타나는지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가족구성에 대한 전망은 이후의 연애·결혼 등 파트너십과 출산, 일자리 진입과 이동, 돌봄부담과 주거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를 둘러싼 제도적 조건도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가족구성에 대한 개인의 전망과 실제 생애경로가 어떠한 조건에서 변화하는지를 장기간 추적할 수 있는 종단자료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가족패널의 2024~2025년 예비조사 결과를 포함한 GGS 참여국 자료를 활용한 출산의향 비교는 가족구성과 생애전망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림 1]은 파트너가 있는 19~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향후 3년 이내 출산의향(자녀를 가질 의향)을 비교한 결과이다. 한국 여성의 출산의향은 1.57점으로 비교대상 8개국 중 가장 낮은 반면, 남성은 2.10점으로 나타나 성별 격차가 가장 크게 확인되었다. 홍콩에서도 여성 1.73점, 남성 2.06점으로 유사한 성별 차이가 나타난 반면,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남녀의 출산의향 수준이 유사하였다(조선미 외, 2025:174-176).

국가별 차이는 출산의향의 평균 수준뿐 아니라

3)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구전략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인구전략기본법 (최종 접속일: 2026.9.28.).

동일한 가족구성 전망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양상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의 경우 향후 출산을 위한 경제적 여유, 주거여건, 일·가족양립, 보육서비스,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출산조건의 충족 가능성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하였으며, 특히 일·가족양립과 보육서비스,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제도적 지원과 관련된 항목에서 유의한 성별 차이가 나타난 바 있다(조선미 외, 2025:177–179). 이러한 결과는 출산의향의 성별 차이를 개인의 선호 차이만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해당 국가의 가족구성을 둘러싼 일·돌봄의 제도적 여건에 대한 전망을 함께 분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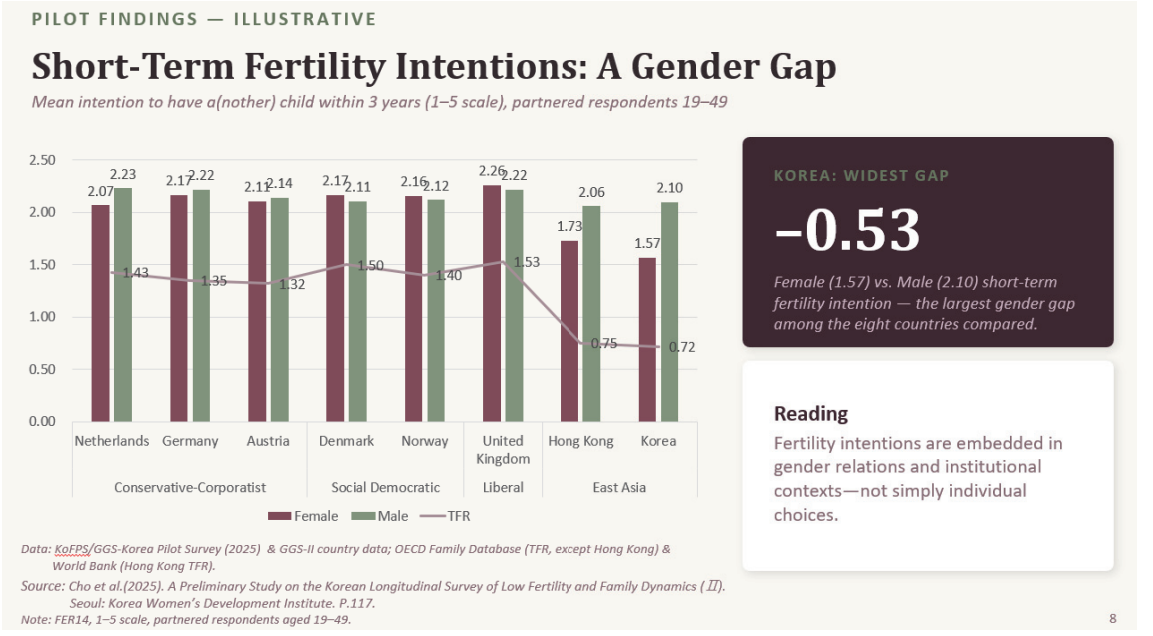

자료: 조선미 외(2025:174–176)의 분석결과를 조선미(2026.7.6.)에서 수정·재구성하여 제시함.

[그림 1] 향후 3년 이내 출산의향의 성별 차이: 8개국 비교

GGS 자료가 축적되면 현재의 국가 간 비교를 개인의 생애과정 변화를 추적하는 종단적 국제비교로 발전시킬 수 있다. 예컨대 1차 웨이브 조사에서 확인된 출산의향과 출산조건에 대한 인식이 이후 파트너십과 출산, 일과 돌봄, 주거여건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추적함으로써 가족구성에 대한 전망과 실제 생애경로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주요 국가에서 생애여건이 형성되는 방식과 이에 따른 생애경로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향후 국내 가족·인구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조건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가족패널과 GGP: 조사협력에서 공동연구로[4)]

이번 MOU의 주요 함의는 한국 GGS의 조사수행과 데이터 구축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양 기관의 협력범위를 국제비교 연구와 공동연구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협약에는 한국가족패널과 GGP의 연계를 위한 조사방법론 및 설문도구의 표준화, 국제비교 연구, 연구성과의 정책 활용과 확산, 연구자 교류와 공동 워크숍·교육 프로그램, GGP 네트워크 활동 참여 등이 주요 협력내용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기존 서비스·데이터 협약에 따른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하고, 조사자료의 품질과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연구협력을 지속한다는 방향도 제시되었다.

MOU에서 제시된 협력방향은 2026년 7월 6~7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연구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7월 6일(월)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NIDI의 연구현황, GGP의 국제 연구 인프라, 한국 GGS의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기관별 발표와 연구성과 공유가 이루어졌다. Helga A.G. de Valk 교수(NIDI 소장)는 가족·젠더, 노동과 인구변동, 이주, 데이터 인프라 등 NIDI의 주요 연구영역과 정책연계 활동을 소개하고, GGP 조정기관으로서 국제비교 데이터 구축과 공동연구를 수행해 온 경험을 공유하였다. Anne H. Gauthier 교수(GGP 총괄책임자)는 GGP의 운영체계와 국제비교 데이터 구축, 참여국 네트워크 및 향후 연구방향을 소개하였다. 한국 연구진은 한국가족패널과 GGS-Korea의 조사설계 및 추진경과와 함께, 예비조사 자료를 활용한 출산의향과 출산여건의 국제비교 분석결과를 공유하였다.



MOU 체결식



GGP 연구 인프라 소개

일시 및 장소: 2026년 7월 6일, 네덜란드 헤이그 NIDI

[그림 2] KWDI-GGP 연구협력 MOU 체결 및 국제연구 협의

4) 이 절의 MOU 체결 및 2026년 7월 6~7일 연구협의 내용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MOU 체결 현황과 공개 출장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MOU 체결, 네덜란드 학제간인구학연구소(NIDI) 주관 '세대와 젠더 프로그램(GGP)', https://kwdi.re.kr/about/mou.do?idx=124515&p=1 (최종 접속일: 2026.9.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6). NIDI 업무협약 체결 및 국제협력회의 개최를 위한 네덜란드 출장 결과보고서, https://www.kwdi.re.kr/research/traReportView.do?idx=134181&p=1 (최종 접속일: 2026.9.2.).

7월 7일(화)에는 한국 GGS의 조사운영과 국제비교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한국가족패널 연구팀과 GGP 중앙 허브팀 간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국 연구진은 한국가족패널 예비조사와 1차 웨이브 조사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GGP 연구진과 문항 구성과 조사대상 범위, 응답범주, 패널 접촉·유지 등 국가 간 비교가능성과 패널 운영에 관한 조사방법론적 쟁점을 논의하였다. GGP 중앙허브에서는 문항개발과 필드워크, 데이터 처리와 문서화, 자료 공개로 이어지는 GGS의 데이터 생애주기와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화 체계를 공유하였다.



GGS Korea 추진현황 발표



GGP 연구팀과 데이터·공동연구 협의

일시 및 장소: 2026년 7월 7일, 네덜란드 헤이그 NIDI

[그림 3] 한국가족패널·GGS Korea 조사설계와 예비조사 결과 공유

GGP 연구팀은 GGS 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 연구사례를 발표하였다. 주거소유와 첫 출산의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11개 유럽국 자료를 활용하여 주거소유와 출산의향 간 관계가 국가별 주거환경과 관련 규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였다. 이어서 싱글 상태(singlehood)[5]의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성별·연령별·출산욕구별·국가별 차이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한국 연구진은 두 연구와 관련하여 높은 주거비용과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 주거와 혼인·출산의 관계, 청년층의 파트너십 의향과 성별 차이 등 한국의 연구맥락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연구사례는 가족구성과 생애전망을 주거제도, 파트너십 규범, 성평등 여건 등 사회적 조건과 연계하여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연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5) 혼인 또는 1인가구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배우자·연인 등 친밀한 파트너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주거소유와 첫 출산의향
(Daniel van Wijk, NIDI)



싱글 상태(Singlehood)와 생활만족도
(Lonneke Van den Berg, NIDI)

일시 및 장소: 2026년 7월 7일, 네덜란드 헤이그 NIDI

[그림 4] GGP·NIDI 연구진과 국제비교 공동연구 협의

국제비교 연구사례 발표 이후에는 후속 연구협력 방안도 검토하였다. 양측 연구진은 한국가족패널 자료를 활용한 가족구성과 성평등 분야의 국제비교 연구 방향을 검토하고, 공동연구와 학술교류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하였다.

4. GGS 참여와 가족·젠더 연구의 확장

해외의 가족·인구정책 연구와 국제기구의 논의에서는 출산율의 단기적 변화만으로 가족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접근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Gauthier와 Gietel-Basten(2025)은 가족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대체로 크지 않고 국가별 제도와 정책 맥락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책의 성과를 출산율 변화와 함께 가족의 삶과 일·가족 양립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원하는지를 포함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UNFPA의 「세계인구현황보고서 2025 (State of World Population 2025)」 역시 출산율을 둘러싼 인구문제를 출산율 수준보다 개인이 원하는 가족구성과 재생산에 관한 선택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를 '재생산 자율성(reproductive agency)'으로 설명하며, 경제적 불안정, 성차별적 규범, 파트너와 공동체의 지원 부족, 보육·교육서비스 접근의 제약 등을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주요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UNFPA, 2025:4-5).

UNFPA는 인구 규모나 구성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인권에 기반해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인구 회복력(demographic resilience)'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구변화를 위기 자체로만 바라보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인구자료와 증거기반 정책을 토대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접근을 의미한다(UNFPA, 2025:18, 50).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가족구성과 생애전망을 실현하거나 제약하는 사회

적 조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가족정책 연구의 측정대상과 근거자료의 구축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출산율과 같은 결과지표와 함께 가족구성 의향과 생애전망, 이를 둘러싼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구성 의향과 관련 여건에 대한 인식에서 뚜렷한 성별 격차가 나타난 만큼, 그 차이의 지속과 변화 양상을 생애과정에 걸쳐 장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족종단 자료는 개인이 원하는 가족생활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을 파악하고, 성별·세대별로 상이한 삶의 전망 속에서 공통의 정책과제로 다루어야 할 여건을 구체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을 출산율 수준 자체보다 사회적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과 성평등한 생애기회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설계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한국가족패널 자료를 안정적으로 축적하고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GGP 연구진과의 공동연구와 학술교류를 통해 한국 자료의 국제적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 운영되는 패널조사에서는 사회변화를 반영하면서도 조사설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GGP와의 협력은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적 기준과 조사경험을 공유하고, 한국가족패널의 조사 정체성과 자료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구전략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인구전략기본법 (최종 접속일: 2026.9.28.).

조선미. (2026.7.6.). The GGS-Korea Project: Korean Family Panel Survey (KoFPS) [발표자료]. NIDI × KWDI MOU Signing, The Hague, Netherlands.

조선미·한진영·김은지·주재선·정성미·이다경·이서현·박민규·김수정·이근복·이혜정. (2025). 저출생 대응 가족패널조사 사전연구(Ⅱ).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MOU 체결, 네덜란드 학제간인구학연구소(NIDI) 주관 '세대와 젠더 프로그램(GGP)', https://kwdi.re.kr/about/mou.do?idx=124515&p=1 (최종 접속일: 2026.9.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6). NIDI 업무협약 체결 및 국제협력회의 개최를 위한 네덜란드 출장 결과보고서, https://www.kwdi.re.kr/research/traReportView.do?idx=134181&p=1 (최종 접속일: 2026.9.2.).

Gauthier, A. H. & Gietel-Basten, S. (2025). Family policies in low fertility countries: Evidence and reflection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51(1), 125–161

Generations and Gender Programme. (2026.7.8.). GGP Korean National Team Visits GGP Central Hub, https://www.ggp-i.org/news/general-news/ggp-korean-national-team-visits-ggp-central-hub/ (최종 접속일: 2026.9.28.).

Generations and Gender Programme, GGS – Round II, https://www.ggp-i.org/data/generations-and-gender-survey/ggs-round-2/ (최종 접속일: 2026.9.28.).

UNFPA(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2025). *The Real Fertility Crisis: The Pursuit of Reproductive Agency in a Changing World. State of World Population 2025*. New York: UNFPA.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정부지원 활동과 향후계획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논의배경

2025년 새로운 정부에서 발표한 국정과제(97.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성평등한 일터 조성을 위해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별 임금 실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공개'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9월 30일,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되면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이하 AA), 성별근로공시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집단상담 업무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특히 성평등가족부에 고용평등정책관을 신설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된 사업과 함께 노동시장의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게 되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5.9.30.). 이후 성평등가족부는 AA의 안정적 이관과 고용평등 공시제의 도입을 위해 본원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2. 주요 활동내용

2025년 10~11월 성평등가족부와 본원은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전문가 포럼'을 총 4회 운영하였다. 1차 포럼은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필요성과 관련 쟁점', 2차 포럼은 '해외 성별임금격차 공시제도 유사 사례 검토 및 시사점', 3차 포럼은 '고용평등임금공시제 항목·대상 등 세부사항 논의', 4차 포럼은 '고용평등임금공시제와 공공조달 연계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26년 초, 본원과 성평등가족부와의 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해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수시과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입법 방안 연구', AA 및 고용평등임금공시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지원과제 '고용평등 정책 방향 및 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026년 3월~5월 성평등가족부와 본원이 함께

참여하는 총 5회의 고용평등공시제[1] 도입 준비 TF를 운영하였다. 이 TF는 성평등가족부의 성평등정책실장이 주재하였으며, 고용평등국 실무자들이 참여하였고, 본원에서는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자들이 참여하였다.

2006년부터 시행된 AA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해 왔다. 2025년 9월 AA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이 사업을 운영할 전문기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2026년까지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하게 되었지만 2027년부터는 더 이상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할 수 없고, 특히 고용평등공시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AA와 고용평등공시제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다른 전문기관이 필요해졌다.

이와 같이, 국정과제인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준비,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된 AA 운영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본원과 성평등가족부는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본원은 개원 이래 '남녀고용평등법'제정 및 노동시장 내 성평등 관련 연구를 꾸준히 해 온 국내 유일한 연구기관으로서, 그동안 축적해 온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고용평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성평등가족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본격적인 업무협의를 위해 2026년 6월 10일, 'AA 이관 및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성평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이 업무협약에는 1) 고용평등 공시 및 AA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7년부터 본원을 고용평등전문기관으로 지정, 2)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준비와 전문기관으로의 AA 업무 이관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부터 공시제 도입 공동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6.10.). 이 업무협약을 통해, 본원이 내년부터 고용평등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준비를 위한 공동기획단을 운영할 것임이 공표되었다.

2026년 7월 14일 성평등가족부와 본원은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을 출범하고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이 공동기획단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공시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성별 격차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성평등가족부의 담당자와 본원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기획단은 2027년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 전까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준비 ▲노사발전재단이 맡아 온 AA 업무의 실질적 이관 ▲전문기관 설치 준비(인력 등) ▲제도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7.14.).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은 발족 이후 AA 업무 인수인계, 고용평등공시제도의 구체적 설계, 공시시스템 구축, 전문기관 운영 기반 마련, 기업 대상 제도 안내 및 홍보, 자가진단 도구·전문컨설팅·인센티브 등 기업지원서비스 마련 등 2027년 AA의 안정적 이관과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부처와도 긴밀히 협업 중이다.

3. 고용평등공시제 설계와 쟁점[2]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1) 임금현황 뿐 아니라 남녀고용현황도 함께 공시하는 것으로 논의하면서, 제도 설계 과정에서 '고용평등공시제'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2) 본 절의 내용은 저자의 '고용평등공시제의 의의와 정책과제'. 2026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미래전략포럼(2026.8.27.) 발표자료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나라로, 2024년 기준 성별임금격차가 29.0%로 OECD 평균 11.3%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다. 2026년 발간된 OECD 국가 대상 성별임금격차보고, 임금감사, 성중립적 직무분류 조치에 관한 실태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OECD 국가의 55%(38개국 중 21개국)는 민간기업에 임금격차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6년 말까지는 OECD 국가의 84%(38개국 중 32개국)가 성별임금격차 보고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확대는 EU 임금투명성지침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3]. 이에,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한국도 임금투명성 제도로서의 임금공시제도에 대한 요구가 계속 커져 왔다. 하지만 한국에 공시제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는 알리오 시스템, 지방공사 및 공단의 정보를 공개하는 클린아이 등 공공영역에서는 이미 공시제도가 운영중이며, 지난 정부 국정과제로 '성별근로공시제'가 시범도입된 바 있다. 다만 이 공시제는 이미 공개하고 있는 공시데이터를 집계하여 공시하는 것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그 외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DART 공시에서도 남녀 간 평균임금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성별 임금정보 공개제도가 존재하지만, 각 제도별로 정보공개의 범위와 대상이 다르고, 서로 다른 기준과 서식으로 성별임금격차를 공개하고 있어, 자료를 제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중복자료 제출, 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보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표 1> 성별 고용·임금정보 공개제도 현황(2025년 기준)

대상	개수	공개 플랫폼	주요 공개 내용	주무부처
공공기관	355개사	알리오	성별 1인당 평균 보수액	재정경제부
지방공사공단	165개사	클린아이	성별 1인당 연간 평균임금	행정안전부
고용형태 공시제	4,176개사	워크넷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수	고용노동부
사업보고서 제출공시대상회사	3,146개사*	DART	성별 1인당 평균 보수액	금융감독원
AA 대상	2,768개사	비공개	성별 1인당 연간 평균 보수총액	성평등가족부

* 성별임금격차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기업 수(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9.7., 참고)

한편 2006년 도입된 AA제도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남녀근로자 및 관리자 현황, 임금자료(남녀 평균임금, 4분위별 남녀 비율)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를 위해 시행계획과 이행수준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고용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로,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 성평등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제도 운영 기간 동안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다만 이 증가가 성과로 볼 수 있는 증가인지, 20년 동안의 제도성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 OECD(2026). *Pay Transparency in Progress: Valuing Jobs, Closing Gender Pay Ga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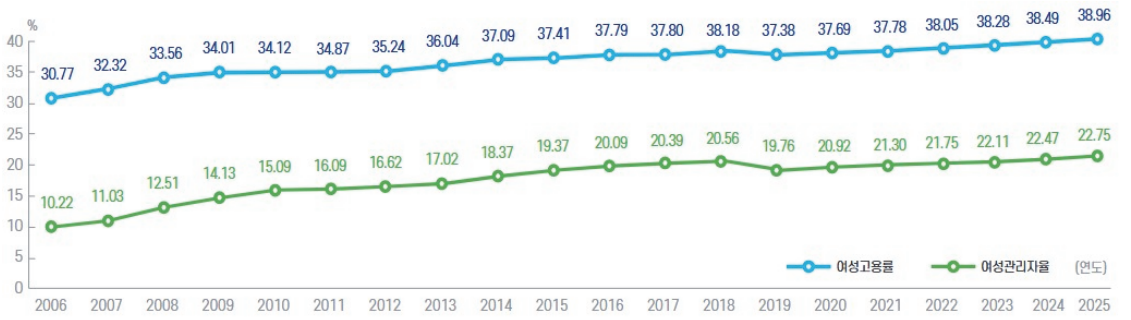

자료: 「202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남녀근로자 현황 분석보고서」(https://aa-net.or.kr)

[그림 1] AA 대상 사업장의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율 변화 추이(2006~2025년, 단위: %)

AA제도에서는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는 공시하지 않고, 대신 심사를 통해 기업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공시제도를 논의할 때 기업의 성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인 AA제도를 빼놓고 논의할 수는 없다.

1단계	남녀근로자 및 임금현황 서류제출 (매년 4월 30일 까지 제출)	- 여성고용기준 확정 - 대상 사업장 남녀근로자 및 임금현황 분석 - 시행계획서 작성대상 선정·통보
2단계	시행계획서 제출 (다음 해 4월 30일 까지)	- 시행계획서 심사·평가 (적정, 부분보완, 재작성 등급) - '부분보완 및 재작성' 등급 기업 보완제출
3단계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시행계획서 제출 다음 해 4월 30일 까지)	- 이행실적보고서 심사·평가 (적정, 보통, 이행촉구 등급) - '이행촉구' 등급 기업 이행보완계획서 제출
우수기업 포상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국무총리·장관 표창		관보게재 또는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6개월간)

자료: 상동

[그림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단계별 운영 과정

AA제도가 운영된 기간 동안 수많은 연구와 개선과제들이 도출되어 왔다. 대상기업, 미달기업 선정기준, 제출자료의 신뢰성, 제출서식, 시행계획서 및 이행실적보고서, 명단공표제도 등 제도설계에 대한 검토뿐 아니라, 이 제도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성별격차 해소에 기여했는가에 대한 효과성까지 다양한 분석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공시제로 연계하게 된다면 사실상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AA 운영상의 개선과제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AA는 공시하지 않는 제도였기 때문에 가장 큰 패널티가 명단공표였는데, 각 기업별로 자료를 공시하게 되면 사실상 명단공표제도의 효과에 대

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따라서 명단 공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운영과정 역시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AA는 말 그대로 고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향후 도입될 고용평등공시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공시할 항목 역시 성별임금격차를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동안 공시제도를 논의함에 있어, AA제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계속 쟁점이 되어 왔다. 성평등가족부로의 이관 후 이루어진 여러 논의체를 통해, 공시제도의 대상을 AA제도의 대상과 동일하게 시작하고, 기존 AA제도의 제출서식을 성별임금격차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 중심으로 개선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익숙한 방식으로 한 번에 자료를 낼 수 있도록 설계하게 되었다.

여전히 남아 있는 쟁점이 적지 않다. 대상기업의 경우, 노동계에서는 현재의 AA 대상이 매우 협소하므로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공시항목에 대해서도 직종, 직급, 고용형태 등 보다 세분화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제계에서는 자료제출의 행정적 부담, 세분화된 임금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 등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공시제도 설계와 운영에 있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시 이후이다. 공시제도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 제공의 역할을 하는 제도이며, 이 데이터를 통해 성별 격차의 원인과 취약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즉 '공시-평가·분석-피드백-개선·환류'의 선순환구조의 시작점인 것이다.

4. AA의 안정적 이관 및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향후계획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은 2026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인데, 이 기간 동안 부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반영한 법안을 마련하고 개정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운영계획을 갖고 있다.

<표 2> AA 및 공시제 운영계획

구분	현행 성별근로공시제		개선 고용평등임금공시제	
			기본 방향	실행방안(안)
대상	▪ **공공부문 중심** 시범운영 단계	⇨	▪ **공공·민간을 포괄, 단계적 확대**	▪ 단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 중장기 300인 이상
항목	▪ **인력 정보** 위주 한정된 정보 공시	⇨	▪ **성별격차**를 나타내는 **핵심지표 중심 설계**	▪ 남녀 임금비율, 임금분위별 성별 비율, 남녀임원 수 등
지원	▪ **사후개선**을 위한 **지원은 미흡**	⇨	▪ **공시 → 진단**(자가평가) → **개선**(컨설팅)의 **선순환 구조 확립**	▪ 공시시스템 운영 ▪ 포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자료: 성평등가족부 업무계획(2025.12.19.)

본원의 공동기획단에서는 내년에 수행하게 될 AA제도의 운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있다. 또한 관련 연구과제들을 통해 공시제도의 구체적 설계(시행령, 시행규칙 등 세부사항 및 공시서식 등), 기업의 의견수렴 및 홍보, 공시제도 매뉴얼 제작, 기업 지원서비스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본원은 AA 및 공시제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제도운영의 공백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향후 법개정을 통해 본원이 2027년 전담기관으로 지정된다면, 본원은 제도의 운영뿐 아니라 AA 및 공시제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검증 및 분석하여, 기업들이 자료제출에서 그치지 않고 성별 격차의 원인, 동종업종과의 비교 등 다양한 분석보고서를 통해 자신들의 현황과 격차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원은 축적된 연구역량과 고용평등 분야 연구자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 검증, 성별격차의 원인분석과 개선 방안 도출, 정책에의 환류 등 보다 폭넓은 제도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기업과 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고용평등공시제와 AA를 본원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성별임금격차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책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강민정(2026.8.27.) '고용평등공시제의 의의와 정책과제'. 2026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미래전략포럼.
노사발전재단(2025).「202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남녀근로자 현황 분석보고서」(https://aa-net.or.kr)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5.9.30.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6.10.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7.14.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9.7
성평등가족부 업무계획, 2025.12.19.
OECD(2026). *Pay Transparency in Progress: Valuing Jobs, Closing Gender Pay Gaps*

단기육아휴직제 시행의 의의와 향후 과제[1)]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방학인데 아이를 어디에 맡기지?" 짧지만 반복되는 돌봄 공백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에게 방학은 반가운 말만은 아니다. 아이에게는 기다리던 방학이지만 부모에게는 몇 주 동안의 돌봄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면 학원, 조부모, 연차휴가를 조합해 빈 시간을 메워야 한다. 이런 가정에 필요한 것은 몇 달짜리 장기 육아휴직이 아니다. 학기 중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방학이나 어린이집 휴원, 자녀 입원처럼 돌봄 체계가 멈추는 시기에 1~2주만 쉴 수 있다면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2)]

이러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육아휴직'이 시행됐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게 법에서 정한 돌봄 사유가 발생하면 자녀별로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의 일종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된다.

현행「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더라도 1주, 2주의 짧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오랫동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는 제도로 인식해 왔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최소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개정 전「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급으로 짧은 육아휴직을 시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30일이라는 급여요건이 사실상 육아휴직의 최소 사용기간처럼 작동해 온 셈이다. 2026년 도입된 단기육아휴직은 이 문제에 있어 예외를 만든 것이

1) 이 원고는 정성미 외 (2024)와 구미영 외(2025) 보고서 중 필자가 집필한 원고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것임.
2) 아시아경제 2024. 1. 19. 기사, "여름방학 두배 '겨울방학 돌봄공백'…맞벌이 부부 근심".

다. 따라서 현행 제도는 '일반육아휴직은 급여를 받으려면 30일 이상, 단기육아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7일 또는 14일을 사용하면서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2. 누가,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표 1> 단기육아휴직 도입 관련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후
제19조(육아휴직) ① ~ ⑤ (생 략)	제19조(육아휴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⑦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⑧ 사업주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시기변경 사유,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⑨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 또는 근로자가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누가 사용할 수 있나

자녀 연령, 계속근로기간 등 신청 자격은 일반육아휴직과 같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입양 자녀도 포함된다.

• 언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나

단기육아휴직은 단순히 "짧게 쉬고 싶다"는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아니고 법률과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첫째, 자녀가 다니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에 따라 휴업·휴교·휴원한 경우이다. 둘째, 해당 기관의 방학기간이다. 셋째, 자녀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이다. 넷째, 감염병으로 자가격리되거나 학교에서 등교중지 조치를 받거나 어린이집에서 격리된 경우이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여기서 '기관'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므로 사설 영어학원이나 태권도장 같은 학원의 방학만을 이유로 단기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단기육아휴직이라고 해서 언제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칙은 단기육아휴직 개시 30일 전 신청으로 일반 휴직과 동일하다. 다만, 입원, 긴급휴원 등 긴급상황에서 3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휴업·휴교·휴원,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에 따른 격리·등교중지인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따라서 방학은 미리 예측할 수 있으므로 원칙대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단기육아휴직 사용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2주는 '1주+1주'로 나누어 쓸 수 없다. 하루나 사흘처럼 더 짧게 줄일 수도 없고, 10일이나 12일처럼 임의로 늘릴 수도 없다. 고용노동부는 7일 또는 14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 자녀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해를 넘겨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시작한 연도에 1회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한다(고용노동부, 2026). 이는 단기육아휴직 사용 가능 일수를 전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절차에 가해질 행정적 부담이 과도해질 위험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일반육아휴직은 1년이라는 상한(上限) 기간을 두고 있는데 단기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이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아니다.[3] 단기육아휴직으로 사용한 7일 또는 14일은 자신에게 남아 있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대신 일반육아휴직을 세 번까지 나누어 쓸 수 있는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짧은 방학 돌봄 때문에 일반육아휴직의 분할 기회를 하나 소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중요한 변화이다.

•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까

남녀고용평등법은 일반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육아휴직 기간과 시기를 선택할 권리를 엄격하게 보호한다. 그러나 단기육아휴직 사유 중 방학은 여러 명의 직원들의 사용 신청 시기가 겹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육아휴직처럼 권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신청한 시기의 휴직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같은 법 제19조 제6항 단서). 단기육아휴직 시기변경권은 사용자가 임의로 거부하는 권리가 아니라 사용 시기를 협의해 조정하는 권한이다. 변경한다면 이유와 변경된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제19조 제8항). 반대로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자녀 입원, 감염병 격리에는 시기변경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향후 과제 – 근로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유연한 휴직, 휴가제도의 문제

단기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기간이 부족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기보다 기존 제도의 '시간 단위'가 실제 돌봄 수요와 잘 맞지 않는다는 문제에서 출발했다. 정성미 외(2024)에서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 자녀의 방학 때문에 돌봄의 어려움을 느낀다는 근로자가 76.8%였다. 그런데 방학 기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85.6%에 달했다. 방학이 여름과 겨울 등 매년 반복되고 초등학교 저학년 기간 동안 여러 해 계속되는 돌봄 문제라는 점에서 기존 육아휴직의 분할방식과 사용

3) 한부모, 부부 둘 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는 일반육아휴직의 상한기간이 1년 6개월이다.

기간을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정성미 외, 2024: 139). 부모에게는 6개월이나 1년의 장기휴직도 필요하지만, 학교 방학 몇 주, 아이가 입원한 일주일, 갑작스럽게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며칠처럼 '짧지만 피할 수 없는 시간'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휴직도 필요하다. 이 점에서 단기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정책의 초점을 보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직장을 떠날 수 있는지 뿐만이 아니라 실제 돌봄이 필요한 때에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제도로 보완되었다. 따라서 단기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을 자녀양육 근로자의 필요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개선, 보완할 것인가의 쟁점에 대한 하나의 대답에 불과하다.

단기육아휴직이라는 이름의 제도가 모든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육아휴직 자체를 짧게 나누거나 부분근로와 결합하여 필요한 시간만 사용하는 방식이 흔하다. 스웨덴은 매 1년마다 육아휴직을 3번의 시기로 분할하여(연간 분할 횟수 2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한국과 달리 주당 육아휴직 일수와 일당 육아휴직 시간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총 사용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최소사용기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방학 기간 중 짧게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 초등 1학년 자녀가 있다면 여름, 겨울, 봄 방학에 대해 2주씩의 전일제 육아휴직이나 파트타임형 육아휴직(한국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을 쓸 수 있다.[4] 단기육아휴직이라는 별도의 유형을 만들기 보다는 육아휴직제도의 유연성을 통해 포섭하거나 자녀 및 가족돌봄 유급휴가 제도를 통해 대응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단기육아휴직제 도입 이후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유연한 사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녀 및 가족돌봄 목적의 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

방학 시기라는 예정된 시기의 돌봄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쓰는 것 외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간편할 수 있겠으나 한국에선 법정 유급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아래 〈표 2〉를 보면 상당수의 국가들은 단기간의 자녀, 가족 돌봄을 위한 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방학 기간에 매년 육아휴직을 하기 보다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해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 선택지가 되도록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수급의 최소 단위기간(30일)을 단축하고, 이 제도의 분할 사용 횟수를 상향하는 등의 법제도적 개선이 된다면, 휴직이 아닌 시간단축 근무 방식으로 방학 기간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상향하거나 6+6제도와 같은 소득대체율 강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구미영 외, 2025).

4) 다만, 이처럼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가 부모와 자녀의 개별적 사정 및 필요에 맞춘 유연한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이 완전하게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한국과 다른 제도적 특징으로 인한 제약이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육아휴직의 유연하고 자유로운 사용 관련한 첫 번째 제약은 자녀의 연령으로, 자녀 연령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 상한선을 정하고 있어서 자녀가 만4세 이후부터 12세(또는 초등 5학년을 마칠 때까지)까지의 기간 중에는 불과 96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한 자녀당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기간(부부 합산)이 480일인데 그 80%에 해당하는 384일은 4세까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제약은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진다는 점이다.

<표 2> 자녀 및 가족 돌봄휴가(유급) 제도 외국 사례

국가	신청 자격·사유	기간
노르웨이	12세 미만 자녀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부모 각각 자녀 수에 따라 연 10~15일, 한부모 20~30일
독일	질병으로 자녀를 직접 돌봐야 하는 법정 건강보험 가입 근로자 등	2024년 기준 자녀 수 등에 따라 정해지며, 유배우·파트너 부모의 연간 총 상한(上限) 최대 65일
오스트리아	12세 미만의 아픈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	연 최대 2근무주(勤務週) 상당
네덜란드	아픈 자녀 등에게 필요한 돌봄을 직접 제공해야 하는 근로자	매 12개월 주당 근로시간의 2배
체코	아픈 가족 또는 10세 미만의 아픈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	1회 연속 최대 9일, 연간 횟수 제한 없음
스웨덴	12세 미만의 아픈 자녀를 돌보는 경우 등	자녀 1명당 연 최대 120일

출처: Dobrotić, I., Blum, S., Kaufman, G., Koslowski, A., Moss, P. and Valentova, M. (eds.) (2024), 20th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search 2024, International Network on Leave Policies & Research, Table 5 "Statutory other measures", pp. 28-40 및 각국 country notes

• 단기육아휴직은 끝이 아니라 돌봄친화형 근로시간으로 가는 중간과정

현행 단기육아휴직은 7일 또는 14일만 선택할 수 있으나 실제 돌봄 수요는 훨씬 다양하다. 아이가 퇴원한 뒤 사흘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방학 2주 동안 매일 오후 네 시에 퇴근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기육아휴직만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사용기간을 더 줄일 것인지, 가족돌봄 관련 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기육아휴직이 오히려 성별 역할분담을 굳힐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방학이 시작될 때마다 엄마만 단기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급한 돌봄은 엄마의 몫'이라는 기존 관행이 법정 제도를 통해 반복될 수 있다. 향후 단기육아휴직 통계를 작성할 때 남성과 여성의 이용률, 1주와 2주 선택 비율, 자녀 연령, 사업장 규모별 격차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특히 남성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가 제도의 성평등 효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6. 카드뉴스 단기육아휴직, 어떻게 사용하나요?, 2026. 8. 14. 고용노동부

아시아경제 2024. 1. 19. 기사, "여름방학 두배 '겨울방학 돌봄공백'…맞벌이 부부 근심".

정성미·김은지·강민정·구미영·김효경·성재민·오상봉·김문정. 2024.『육아휴직 급여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구미영, 조선주, 권오성, 이성준. 2025. 성평등 돌봄사회를 위한 근로시간 휴식 법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Dobrotić, I., Blum, S., Kaufman, G., Koslowski, A., Moss, P. and Valentova, M. (eds.) (2024), 20th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search 2024, International Network on Leave Policies & Research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통계로 보는 여성

• **통계로 보는 여성 건강**
한진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통계로 보는 여성 건강[1)]

한진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2014~2024년 성별 건강 행태를 보면, 고위험음주율과 흡연율, 비만 유병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성별로 변화가 다르게 나타남. 또한, 건강인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좋지 않은 편이며, 건강관리 현황은 여성과 남성이 비슷하거나 여성이 더 높은 수준임.
  - 2024년 고위험음주율은 여성 8.6%, 남성 18.6%로, 남성은 2014년보다 낮아진 반면 여성은 2020년 이후 상승해 2014년보다 높아졌으며, 19~29세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아짐. 현재흡연율은 남성이 2014년 43.2%에서 2024년 28.5%로 감소했고, 여성은 4.2%로 낮은 수준을 유지함.
  - 비만 유병률은 남성이 2024년 48.8%로 2014년과 비교해 높아졌으며(11.0%p), 40대 남성은 61.7%로 나타남. 여성은 2024년 26.2%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져 70세 이상에서는 남성보다 높았음.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여성 49.3%, 남성 54.7%로 남녀 모두 2014년보다 낮았음.
  - 건강 인식에 대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주관적 건강인지율이 낮고(2024년 여성 33.1%, 남성 36.6%), 스트레스인지율은 높음(2024년 여성 32.9%, 남성 25.5%). 스트레스는 30대 이하에서 성별 격차가 컸고, 30대 여성이 41.5%로 가장 높았으며,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19~29세와 70세 이상에서 격차가 컸음.
  - 건강검진 수진율은 2024년 여성 72.5%, 남성 70.3%로 남녀 모두 높아졌고, 특히 30대 이하 여성의 증가폭이 컸음. 암 검진 수진율은 2024년 여성 61.4%, 남성 46.7%로 여성이 높았음.

1) 본 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센터의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제3장 "건강" 임. 2026년 분기별로 총 4장의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임.

■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음주, 흡연, 유산소 신체활동, 비만, 주관적 건강인지 정도, 스트레스 인지율 그리고 건강검진 현황을 통해 성별 연령별 건강 행태의 변화를 살펴봄

■ 음주

□ 고위험음주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으며 40~60대에서 차이가 큰 편

• (고위험음주율) 2024년 고위험음주율은 여성 8.6%, 남성 18.6%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0.0%p 낮음.
  - 2023년 대비 2024년 고위험음주율은 여성 0.9%p 증가, 남성 1.3%p 감소함.
  - 2014년 대비 2024년 고위험음주율은 여성 2.0%p 증가, 남성 2.1%p 감소함.
  - 여성은 2020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로 2014년보다 높은 수준이며, 남성은 등락이 있으나 2014년과 비교해 낮은 수준임.
    * 여성 고위험음주율(%): ('14년) 6.6% → ('19년) 6.5% → ('24년) 8.6%
    * 남성 고위험음주율(%): ('14년) 20.7% → ('19년) 18.6% → ('24년) 18.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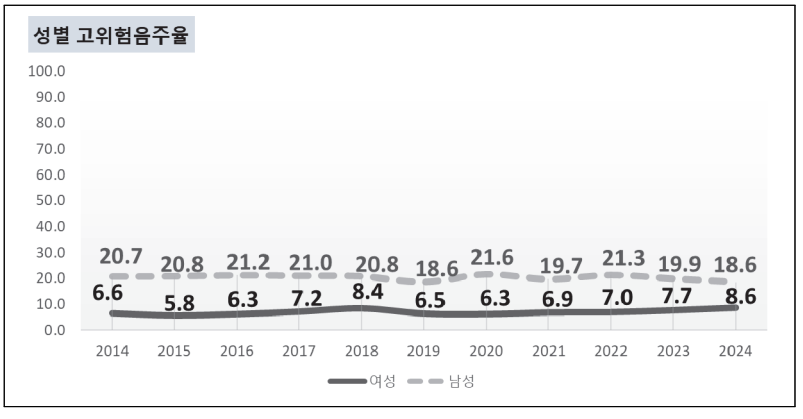

주 :1) 고위험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임.
2) 19세 이상으로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1] 성별 고위험음주율(2014-2024)

-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성별 연령별 고위험음주율을 살펴본 결과임.

• 전 기간에 걸쳐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고위험음주율이 낮게 나타남. 다만, 2024년 19~29세 고위험음주율은 여성 10.2%, 남성 9.7%로 여성이 남성보다 0.5%p 더 높음.

- 2024년 여성과 남성 간 고위험음주율 차이는 40~60대에서 상대적으로 크고, 30대 이하와 70세 이상에서 작은 편임. 특히 40대는 여성 10.3%, 남성 30.3%로 그 격차가 20.0%p로 가장 큼. 30대 이하에서는 여성의 고위험음주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남성의 고위험음주율이 낮은 수준이며, 70세 이상은 여성과 남성 모두 고위험음주율이 낮아, 30대 이하와 70세 이상에서 남녀 간 차이가 작은 편임.
- 2014년 이후 변화 양상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음. 30대 이하 남성의 고위험음주율은 2014년에 비해 낮아진 반면 여성은 높아지면서 2024년 남녀 간 차이는 19~29세 0.5%p, 30대 3.7%p로 나타남. 40대 이상은 남녀 모두 등락은 있으나 성별 격차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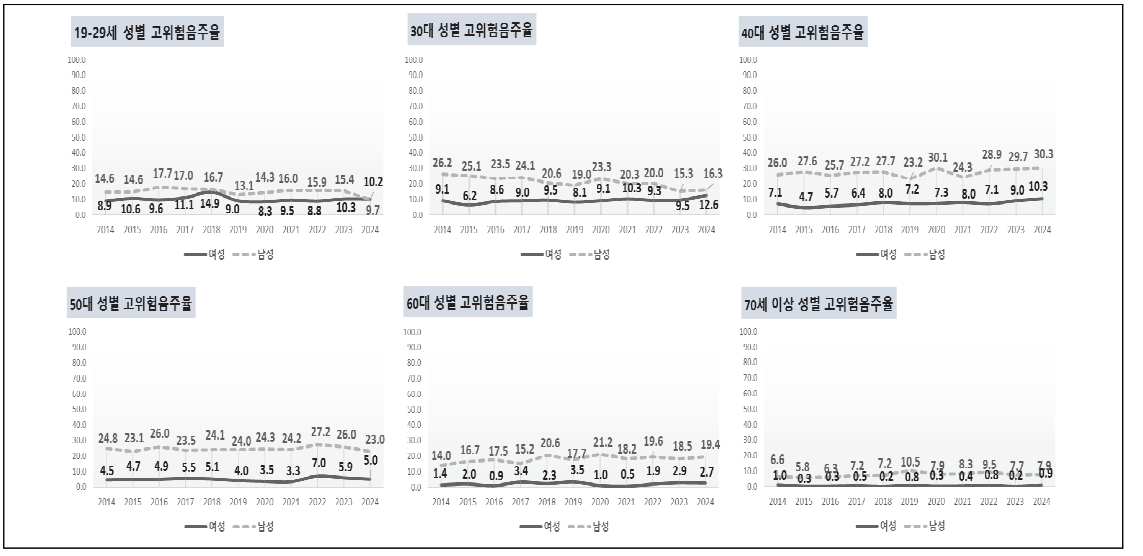

주 :1) 고위험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임.
2) 19세 이상.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2] 성별 연령별 고위험음주율(2014-2024)

■ 흡연

□ 현재흡연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편이며, 남성의 현재 흡연율은 감소 추세

- (현재흡연율) 2024년 현재 흡연율은 여성 4.2%로 남성 28.5% 여성이 24.3%p 낮음.
  - 2023년 대비 2024년 현재 흡연율은 여성 2.1%p, 남성 3.9%p 감소함.
  - 2014년 대비 2024년 현재 흡연율은 여성 1.5%p, 남성 14.7%p 감소함.
  - 여성의 현재 흡연율은 2014년 이후 큰 변화 없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남성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14년 43.2%에서 2024년 28.5%로 낮아짐.

* 여성 현재흡연율(%): ('14년) 5.7% → ('19년) 6.7% → ('24년) 4.2%
* 남성 현재흡연율(%): ('14년) 43.2% → ('19년) 35.7% → ('24년) 28.5%

- 한편, 현재 일반담배(궐련) 또는 궐련형 전자담배 또는 액상형 전자담배 또는 기타 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 분율을 의미하는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024년 여성 6.9%, 남성 36.0%로 평생 일반담배(궐련)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일반담배(궐련)를 피우는 분율을 의미하는 '현재흡연율'에 비해 여성은 2.7%p, 남성은 7.5%p 높게 나타남(〈표 1〉 참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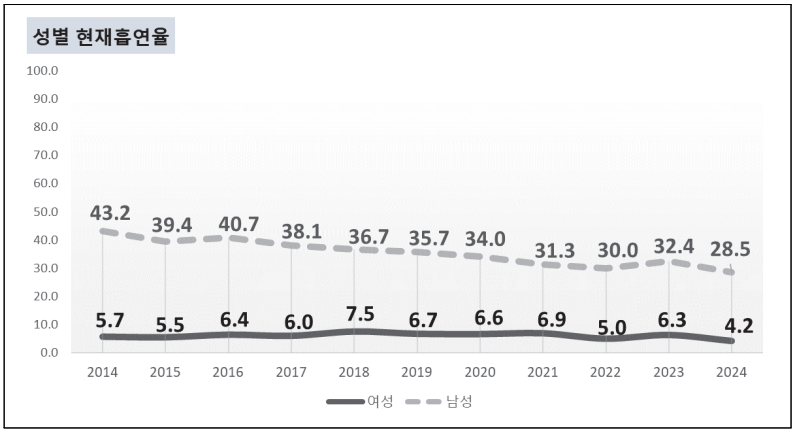

주 : 1) 현재흡연율은 평생 일반담배(궐련)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일반담배(궐련)를 피우는 분율임.
2) 19세 이상으로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3] 성별 현재 흡연율(2014-2024)

<표 1> 성별·연령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단위: %)

항목	연령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담배 제품 현재 사용률	전체 (표준화)	7.5	39.7	7.5	38.7	8.5	36.7	7.2	36.6	8.3	38.9	6.9	36.0
	19-29세	10.9	40.0	13.1	36.4	14.9	37.4	9.4	37.6	16.2	33.9	9.0	29.5
	30-39세	9.5	45.0	9.8	44.4	9.8	37.2	9.7	38.9	7.8	42.2	7.5	40.1
	40-49세	6.8	45.7	6.1	47.5	7.6	44.3	6.7	42.7	8.0	48.7	8.8	47.3
	50-59세	4.5	38.0	2.2	38.3	4.4	38.5	6.3	36.9	4.0	44.4	5.6	39.1
	60-69세	4.4	31.3	4.5	28.0	3.5	28.7	3.6	28.6	3.1	30.4	2.7	27.6
	70세 이상	2.5	17.3	1.7	15.0	1.2	16.2	0.6	16.4	1.5	14.0	0.9	13.7

주 : 1)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현재 일반담배(궐련) 또는 궐련형 전자담배 또는 액상형 전자담배 또는 기타 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 분율.
2) 19세 이상으로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성별 연령별 현재흡연율을 살펴본 결과임.
  - 전 기간에 걸쳐 전 연령대에서 여성의 현재흡연율은 남성보다 낮게 나타남. 여성과 남성 간 차이는 30~50대에 비교적 큰 편이며, 60대 이후에는 남성의 현재흡연율도 낮아지면서 그 차이도 작아지는 양상을 보임.
  - 2024년 현재흡연율은 30~60대까지 남성이 여성에 비해 20%p 이상 높아 그 차이가 큰 편임. 특히, 40대의 현재흡연율은 여성 6.0%, 남성 36.9%로 여성과 남성 간 30.9%p로 가장 큼. 19~29세와 70세 이상에서도 남성의 현재흡연율이 여성보다 각각 18.6%p, 12.6%p 더 높음.
  - 2014년 이후 연령대별 변화 양상을 보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현재흡연율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2014년과 비교해 30대 남성은 24.7%p, 40대 남성은 17.5%p가 감소해 감소폭이 큰 편임. 여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40~50대 여성은 2014년과 비교해 각각 1.0%p, 2.7%p 증가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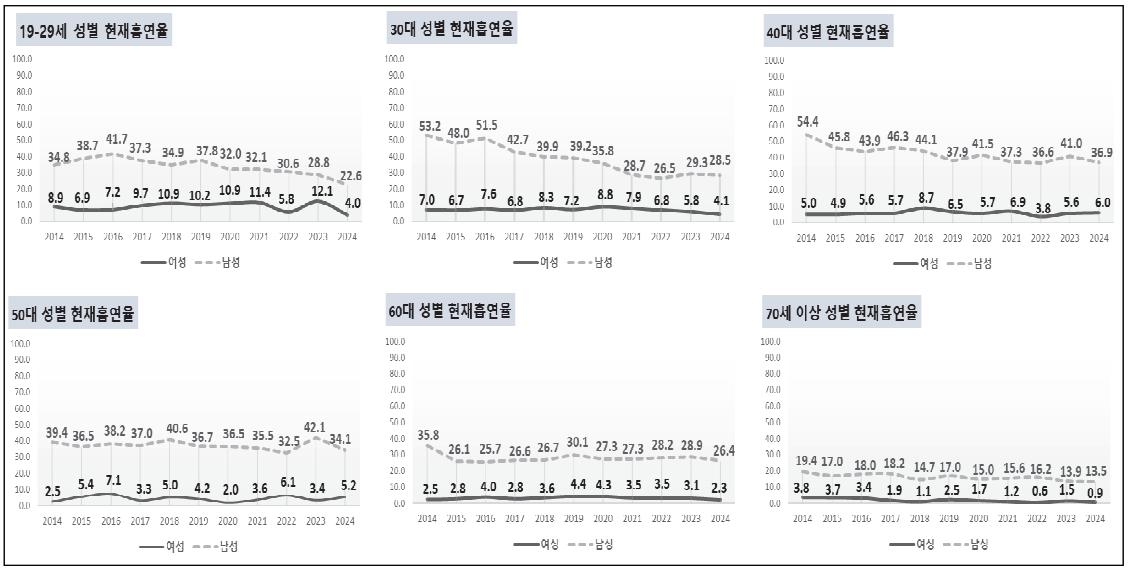

주 : 1) 현재흡연율은 평생 일반담배(궐련)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일반담배(궐련)를 피우는 분율임.
2) 19세 이상.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4] 성별 연령별 현재흡연율(2014-2024)

■ 신체활동 및 비만

□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녀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경향

•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2024년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여성 49.3%, 남성 54.7%로 여성과 남성 간 차이는 5.4%p임.

- 2023년 대비 2024년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여성 1.1%p 감소, 남성 0.3%p 증가함.
- 2014년 대비 2024년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여성은 5.4%p, 남성은 7.3%p 감소함.
- 여성과 남성 모두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낮아지다 최근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임.

  *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14년) 54.7% → ('19년) 42.7% → ('24년) 49.3%
  *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14년) 62.0% → ('19년) 52.6% → ('24년) 54.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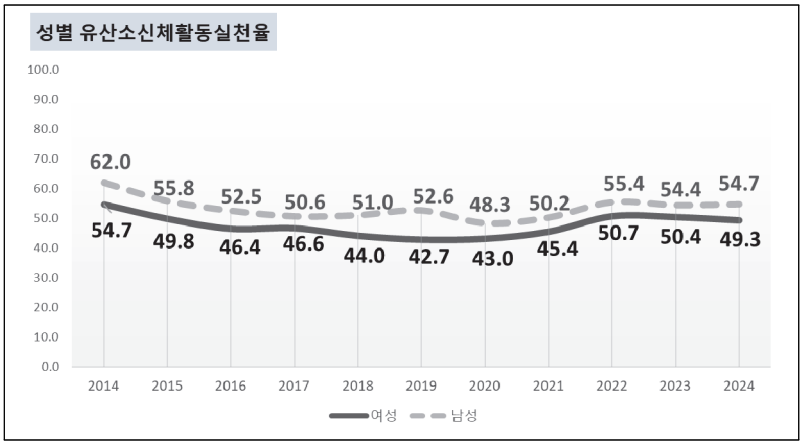

주 : 1)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 분율.
2) 19세 이상으로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5] 성별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2014-2024)

-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성별 연령별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을 살펴본 결과임.

• 전반적으로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양상을 보임. 30대 이하와 70세 이상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편이고, 40~60대는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수준임.

• 2024년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19~29세가 여성 63.8%, 남성 75.8%로 가장 높

고, 70세 이상이 여성 24.2%, 남성 31.8%로 가장 낮음. 19~29세는 여성과 남성 모두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남녀 간 차이도 12.0%p로 큼.

- 2014년 이후 변화 양상을 보면, 기간 중 등락은 있으나 30대 남성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2014년과 비교해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이 감소함. 특히 50대 이상 남성의 감소폭이 큰 편으로 50대 18.4%p, 70세 이상 16.4%p, 60대 12.9%p 감소함. 여성은 40대 10.3%p, 50대 10.0%p 감소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감소폭이 큰 편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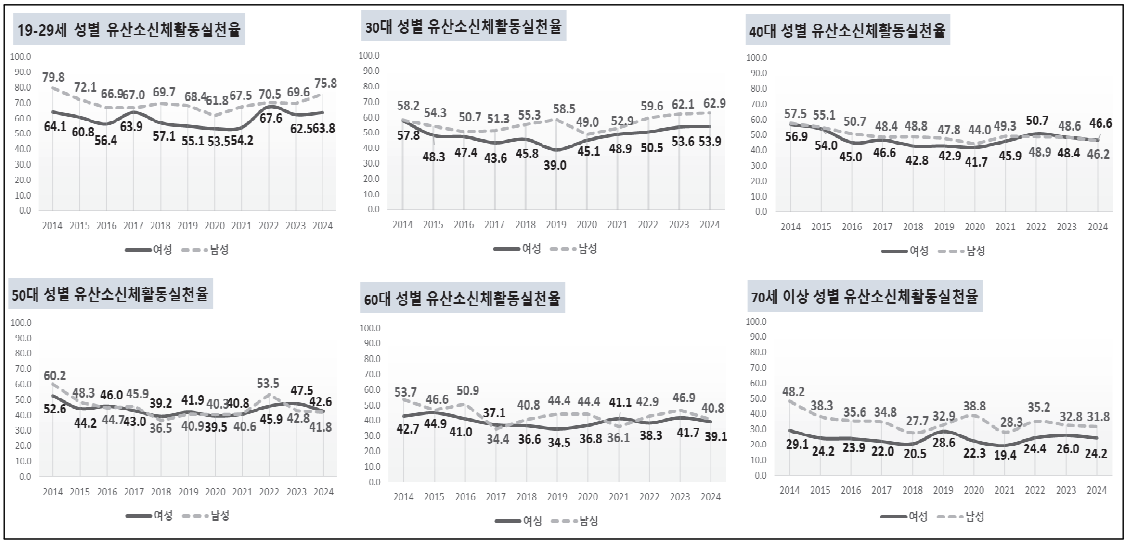

주 : 1)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 분율.
2) 19세 이상.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6] 성별 연령별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2014-2024)

□ 비만 유병률은 여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반면, 남성은 40대에 가장 높고 이후 연령대에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임

- (비만 유병률) 2024년 비만 유병률은 여성 26.2%, 남성이 48.8%로 여성과 남성 간 차이는 22.6%p임.
  - 2023년 대비 2024년 비만 유병률이 여성은 1.6%p 감소, 남성은 3.2%p 증가함.
  - 2014년 대비 2024년 비만 유병률이 여성은 2.9%p, 남성은 11.0%p 증가함.
  - 여성의 비만 유병률은 큰 변화는 없는 편이고, 남성은 높아지는 모습을 보임.
    * 여성 비만 유병률(%): ('14년) 23.3% → ('19년) 25.0% → ('24년) 26.2%

* 남성 비만 유병률(%): ('14년) 37.8% → ('19년) 41.8% → ('24년) 48.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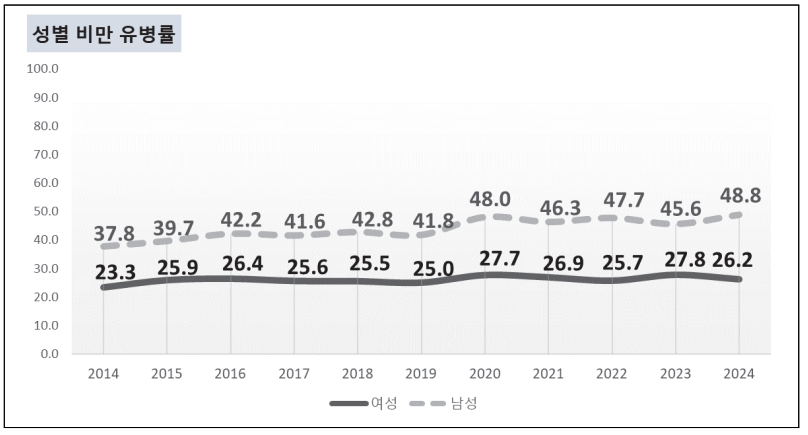

주 : 1) 비만 유병률은 체질량지수 25kg/㎡ 이상인 분율임.
2) 19세 이상으로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7] 성별 비만 유병률(2014-2024)

-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성별 연령별 비만 유병률을 살펴본 결과임.
  -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성의 비만 유병률이 여성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성과 남성 간 격차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임. 70세 이상은 여성의 비만 유병률이 남성보다 더 높음.
  - 2024년 여성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만 유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19~29세 20.4%, 70세 이상 38.3%로 나타남. 남성은 40대 61.7%로 가장 높고 이후 낮아져 70세 이상이 31.4%로 가장 낮음. 남녀 간 비만 유병률은 50대 이하에서 20%p 이상으로 큰 편이며, 특히 40대는 여성 25.7%, 남성 61.7%로 남녀 간 격차가 36.0%p로 가장 큼.
  - 2014년 이후 변화 양상을 보면, 남녀 모두 등락은 있으나 남성의 비만 유병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임. 2014년과 비교해 보면, 2024년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해 특히 40대 남성은 22.1%p 증가함. 여성은 50~60대를 제외하고 다른 연령대는 모두 높아졌지만, 남성에 비해 변화폭이 크지 않은 편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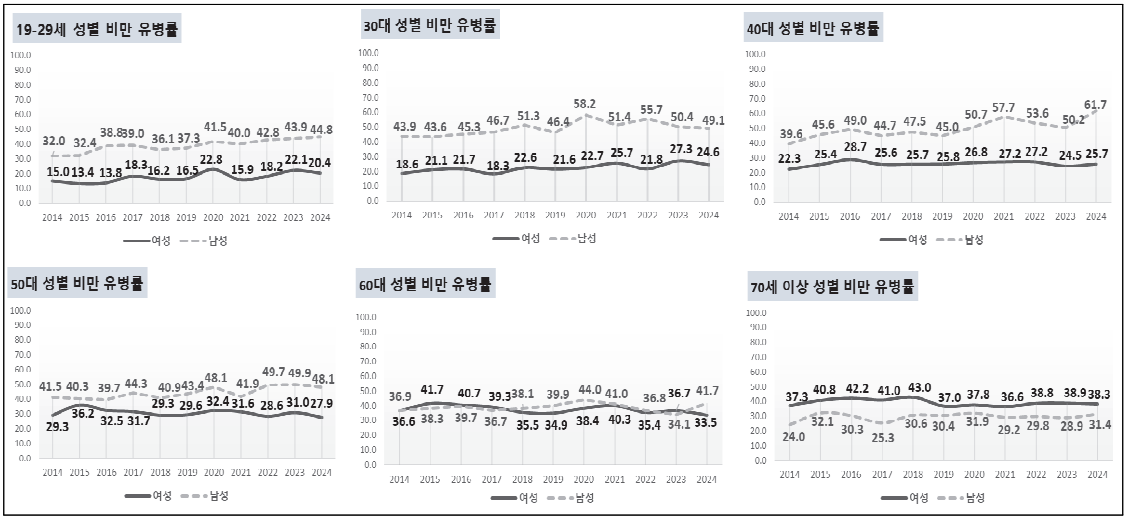

주 : 1) 비만 유병률은 체질량지수 25kg/㎡ 이상인 분율임.
2) 19세 이상.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8] 성별 연령별 비만 유병률(2014-2024)

■ 건강 인식

□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편이며, 19~29세, 70세 이상에서 성별 차이가 큰 편

- (주관적 건강인지율) 2024년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여성 33.1%, 남성은 36.6%로 여성이 남성보다 3.5%p 낮음.
  - 2023년 대비 2024년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여성은 변화가 없고, 남성은 4.1%p 감소함.
  - 2014년 대비 2024년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여성이 4.2%p, 남성이 0.6%p 증가함.
  - 2014년 이후 여성과 남성 모두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연도별로 등락이 있고, 여성은 대체로 30% 수준이고, 남성은 여성보다 높은 수준임.
    * 여성 주관적 건강인지율(%): ('14년) 28.9% → ('19년) 30.4% → ('24년) 33.1%
    * 남성 주관적 건강인지율(%): ('14년) 36.0% → ('19년) 37.3% → ('24년) 36.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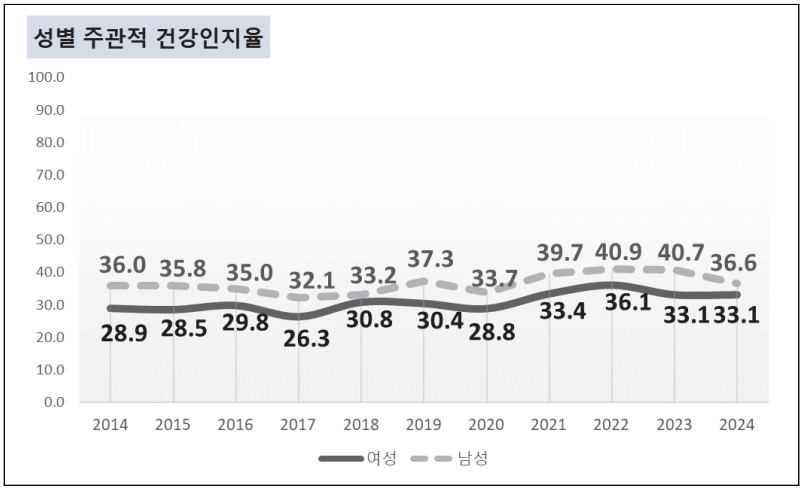

주 : 1)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율임.
2) 19세 이상으로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9] 성별 주관적 건강인지율(2014-2024)

-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성별 연령별 주관적 건강인지율을 살펴본 결과임.
  - 전반적으로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주관적 건강인지율이 높은 수준이며, 30~40대는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수준을 보임.
  - 2024년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19~29세 여성 40.5%, 남성 49.7%로 가장 높지만 남녀 간 격차도 9.2%p로 큰 편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대체로 낮아지고, 30~60대는 남녀가 비슷한 수준으로 남녀 간 격차도 5%p 이내로 나타남. 70세 이상은 여성 22.2%, 남성 32.2%로 남녀 간 격차가 10.0%p로 큰 편임.
  - 2014년 이후 변화 양상을 보면, 19~29세의 연도별 등락이 큰 편이고 2014년과 비교해 여성은 8.5%p 증가한 반면, 남성은 3.3%p 감소함. 30~50대는 연도별 등락이 있으며, 2014년과 비교해 30대 남성은 5.1%p, 50대 여성은 5.4%p로 증가함. 60대 이상은 남녀 모두 2014년에 비해 주관적 건강인지율이 높아졌고 특히 60대 여성은 9.5%p 증가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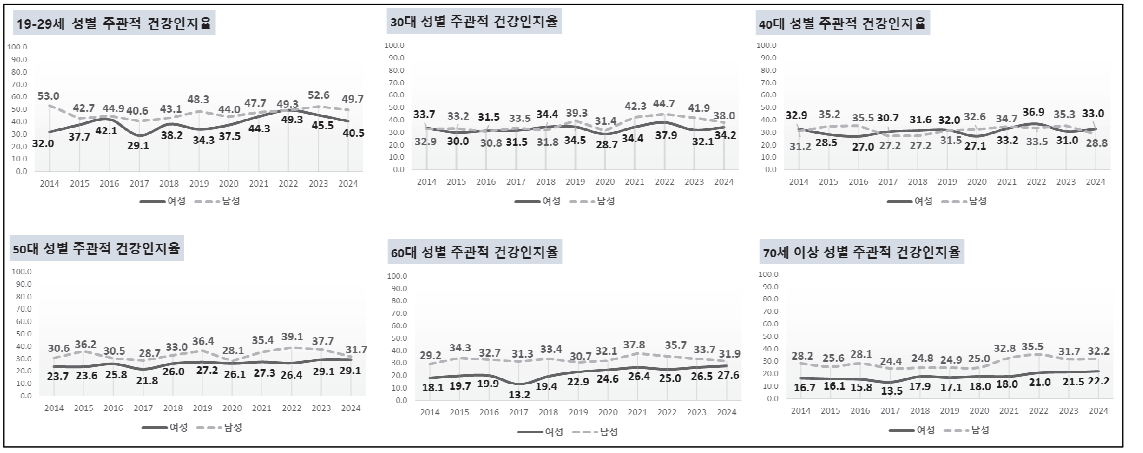

주 : 1)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율임.
2) 19세 이상.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10] 성별 연령별 주관적 건강 인지율(2014-2024)

□ 스트레스인지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편이며 2024년 30대 이하에서 성별 차이가 큰 편

- (스트레스인지율) 2024년 스트레스인지율은 여성 32.9%, 남성은 25.5%로 여성이 남성보다 7.4%p 높음.
  - 2023년 대비 2024년 스트레스인지율은 여성이 2.1%p 증가하고, 남성은 0.2%p 감소함.
  - 2014년 대비 2024년 스트레스인지율은 여성이 4.3%p, 남성이 1.1%p 증가함.
  - 2014년 이후 여성의 스트레스인지율은 등락은 있으나 3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 기간에 걸쳐 여성의 스트레스인지율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음.
    * 여성 스트레스인지율(%): ('14년) 28.6% → ('19년) 32.3% → ('24년) 32.9%
    * 남성 스트레스인지율(%): ('14년) 24.4% → ('19년) 29.3% → ('24년) 25.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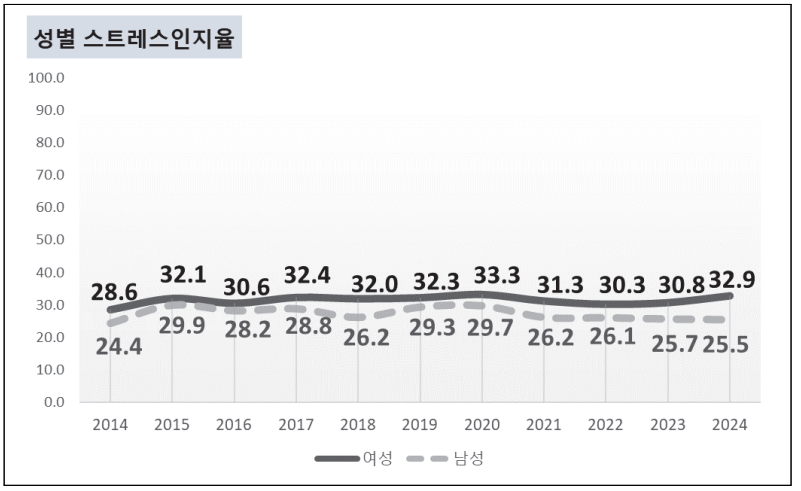

주 : 1) 스트레스인지율은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분율.
2) 19세 이상으로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11] 성별 스트레스인지율(2014-2024)

-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성별 연령별 스트레스인지율을 살펴본 결과임.
  - 전반적으로 여성의 스트레스인지율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임. 남녀 모두 대체로 30~40대에서 높고 60대 이상에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2024년 스트레스인지율은 여성의 경우 30대(41.5%)가 가장 높고, 남성은 40대(36.3%)가 가장 높음. 여성과 남성 간 차이는 30대 이하에서 큰 편으로 특히 19~29세 15.9%p, 30대 12.9%p의 차이가 있음. 40~50대는 여성과 남성의 스트레스인지율이 비슷한 수준임.
  - 2014년 이후 변화를 보면 19~29세는 전 기간에 걸쳐 여성의 스트레스인지율이 높은 수준이며, 2014년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음. 30대는 여성의 스트레스인지율이 2014년에 비해 6.1%p 증가한 반면 남성은 3.9%p 감소함. 40~50대는 남녀 모두 2014년과 비교해 스트레스인지율이 증가했고, 특히 40대 여성은 9.6%p 증가해 큰 편임. 60대는 남녀 모두 큰 변화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70세 이상은 여성은 2014년과 비교해 6.1%p 감소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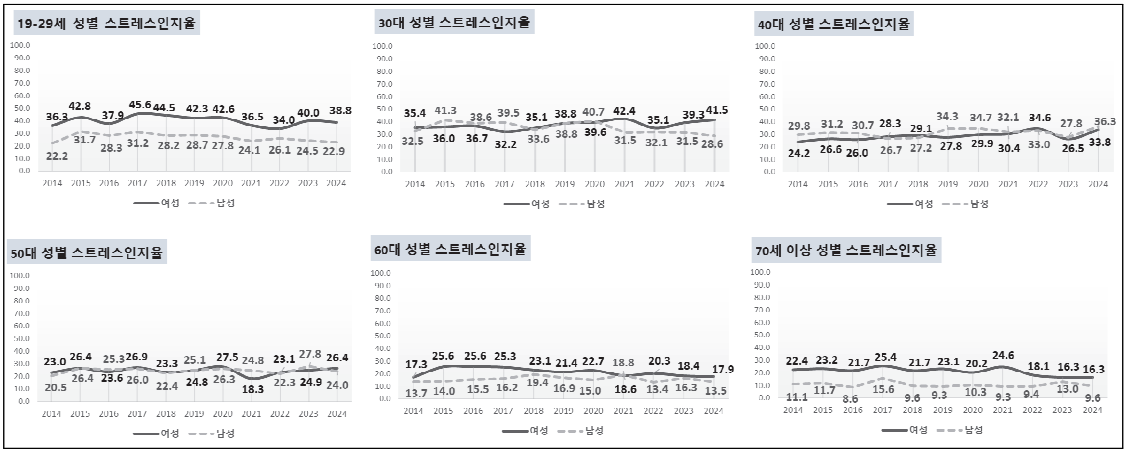

주 : 1) 스트레스인지율은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분율.
2) 19세 이상.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12] 성별 연령별 스트레스인지율(2014-2024)

□ 건강검진 수진율은 최근 남녀 모두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

- (건강검진 수진율) 2024년 건강검진 수진율은 여성 72.5%, 남성 70.3%로 여성이 남성보다 2.2%p 높음.
  - 2023년 대비 2024년 건강검진 수진율은 여성 1.0%p, 남성 1.4%p 증가함.
  - 2014년 대비 2024년 건강검진 수진율은 여성 18.7%p, 남성 11.2%p 증가함.
  - 2014년 이후 건강검진 수진율은 남녀 모두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임.
    * 여성 건강검진 수진율(%): ('14년) 53.8% → ('19년) 63.1% → ('24년) 72.5%
    * 남성 건강검진 수진율(%): ('14년) 59.1% → ('19년) 69.0% → ('24년) 70.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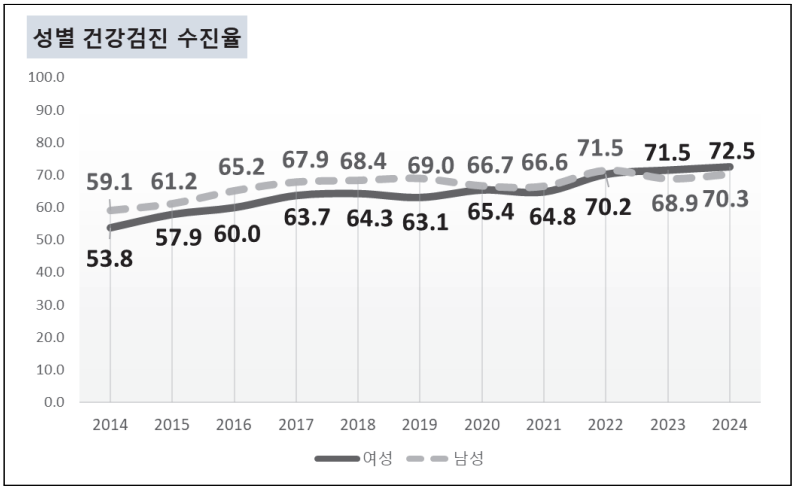

주 : 1) 건강검진 수진율은 최근 2년 동안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분율
2) 19세 이상으로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13] 성별 건강검진 수진율(2014-2024)

-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성별 연령별 건강검진 수진율을 살펴본 결과임.
  - 전반적으로 건강검진 수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70세 이상에서는 낮아짐. 40~60대는 남녀 모두 다른 연령대에 비해 건강검진 수진율이 높은 수준이며, 남녀 간 격차도 크지 않은 편임. 30대 이하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최근 여성의 건강검진 수진율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2024년 건강검진 수진율은 여성은 50대 82.1%, 남성은 60대가 83.0%로 가장 높음. 50대 이하는 여성의 건강검진 수진율이 남성보다 높은 반면, 60대 이상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음.
  - 2014년 이후 변화 양상을 보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녀 모두 건강검진 수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30대 이하 여성의 증가폭이 큰 편임. 19~29세는 남녀 모두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2014년과 비교해 여성 26.5%p, 남성 16.9%p 증가함. 30대는 남성의 건강검진 수진율이 여성보다 더 높았으나, 2023년 이후 여성이 더 높아졌으며, 여성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2014년에 비해 29.5%p 증가함. 40~60대는 남녀 모두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70세 이상도 연도별 등락은 있으나 2014년에 비해 남녀 모두 높은 수준이며, 특히 여성은 16.4%p 증가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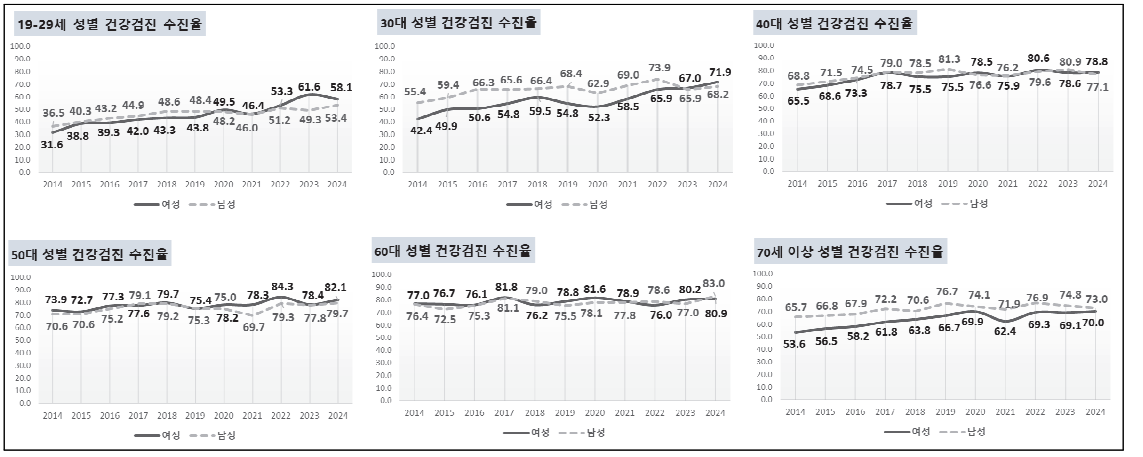

주 : 1) 건강검진 수진율은 최근 2년 동안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분율
2) 19세 이상.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14] 성별 연령별 건강검진 수진율(2013-2023)

□ 암 검진수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40대 이하에서 성별 차이가 큰 편

- (암 검진수진율) 2024년 암 검진수진율은 여성 61.4%, 남성 46.7%로 여성이 남성보다 14.7%p 높음.
  - 2023년 대비 2024년 암 검진수진율은 여성이 1.3%p 감소, 남성은 2.0%p 증가함.
  - 2014년 대비 2024년 암 검진수진율은 여성 8.2%p, 남성 11.5%p 증가함.
  - 2014년 이후 암 검진수진율은 남녀 모두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며, 전 기간에 걸쳐 여성의 암 검진수진율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여성 암 검진수진율(%): ('14년) 53.2% → ('19년) 60.7% → ('24년) 61.4%
    * 남성 암 검진수진율(%): ('14년) 35.2% → ('19년) 45.4% → ('24년) 46.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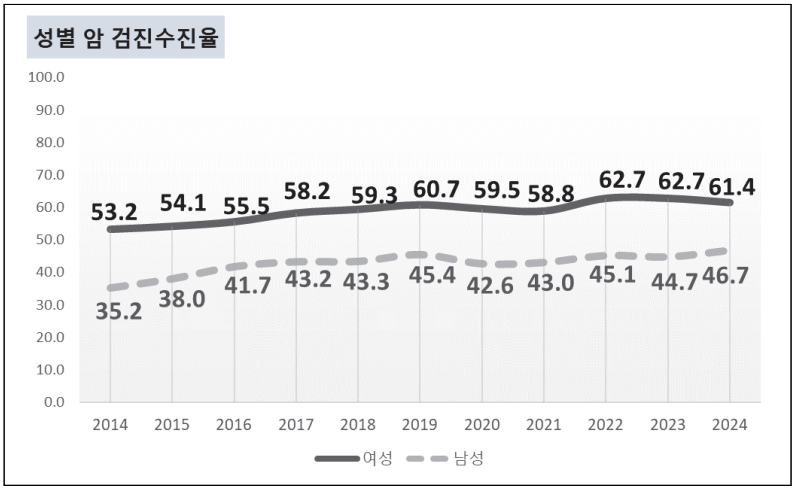

주 : 1) 암 검진수진율은 최근 2년 동안 암검진을 받은 분율
2) 19세 이상으로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15] 성별 암 검진수진율(2014-2024)

-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성별 연령별 암 검진수진율을 살펴본 결과임.
  - 전반적으로 여성의 암 검진수진율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이며, 40대 이하에서 성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편임. 19~29세는 전 연령대에서 남녀 모두 낮은 수준이지만 특히 남성의 암 검진수진율이 10% 이하로 낮은 편임. 30대부터 암 검진수진율은 남녀 모두 높아져 40~60대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70세 이상에서는 낮아짐.
  - 2024년 암 검진수진율은 남녀 모두 50~60대에서 높은 수준이며, 19~29세에서 여성 32.4%, 남성 6.8%로 가장 낮게 나타남. 50대 이하 여성의 암 검진수진률은 남성보다 높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30대 27.7%p, 19~29세 25.6%p로 큰 편임. 60대는 남녀가 비슷한 수준이며, 70세 이상은 남성의 암 검진수진율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음.
  - 2014년 이후 변화 양상을 보면, 남녀 모두 암 검진수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로, 2014년과 비교해 여성은 19~29세(17.3%p), 70세 이상(18.4%p)의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남성은 30대(18.0%p)의 증가폭이 큰 편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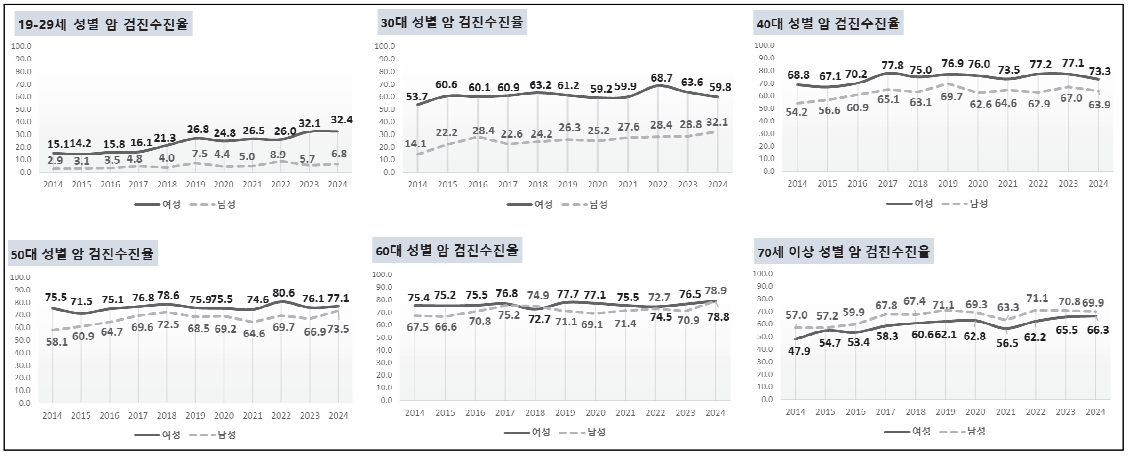

주 : 1) 암 검진수진율은 최근 2년 동안 암검진을 받은 분율
2) 19세 이상.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16] 성별 암 검진수진율(2014-2024)

•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국내·외 정책동향

- 해외
- 국내

해외*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영국 사회돌봄교섭위원회(Social Care Negotiating Body) 설립 계획[1)]

- 영국 정부는 2025년 9월 30일 사회돌봄(Adult Social Care) 부문 노동자를 위한 공정 임금 협약(Fair Pay Agreement, FPA) 도입 관련 협의안(consultation document)을 발행하였다. 해당 문서는 사회돌봄교섭위원회(Adult Social Care Negotiating Body)의 설립 방식과 역할, 교섭 절차,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10월 20일 영향평가서가 추가되면서 공정 임금 협약 추진과 관련한 검토 자료가 보완되었다.
- 공정 임금 협약(FPA)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 개정안은 노동당이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노동당은 산업 부문 전체(sector-wide)에 적용되는 임금 및 노동조건의 최소 기준을 노사 교섭을 통해 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공정 임금 협약(FPA)을 사회돌봄 부문에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영국에서 사회돌봄교섭위원회 설립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노동법 개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024년 7월 총선으로 집권한 영국 노동당 정부는 1996년 고용권리법 제정 이후 약 30년 만에 대대적인 노동법 개혁을 추진하며, '근로 보상 계획(Plan to Make Work Pay)'을 이 개혁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였다. 해당 개혁은 직장 내 권리를 현대 경제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노동자에게 그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며,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고용권리법은 2025년 12월 국왕 재가를 받았으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노동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착취적인 호출근로(zero-hours contracts) 금지, 해고 후 불리한 재고용(fire and rehire) 금지, 취업 첫날부터 병가, 육아휴직, 부당 해고 보호 등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 등을 포함한다.
  - 호출근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무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 해외 여성통신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제동향 중 「해외통신원」 주요 기사를 정리한 것임.
1) 윤선우,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호출하여 일을 배정하며, 이렇게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이는 최소 근무 시간과 최저 임금 수준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 고용 형태 중 하나이다. 해고 후 불리한 재고용의 경우 기업들이 노동자를 해고한 뒤 임금을 삭감하거나 노동 조건을 수정하여 다시 고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해당 법안 제3부 부문별 임금과 노동조건(pay and conditions in particular sectors) 중 제2장 사회적 돌봄노동자(social care workers)에 관한 조항은 사회돌봄교섭위원회(Adult Social Care Negotiating Body)의 구성과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사회복지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and Social Care)은 정부, 노동조합, 고용주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며, 해당 교섭기구는 돌봄노동자들의 최저 임금 및 기타 근로 조건에 대한 지침과 범위를 설정하고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해당 교섭기구의 합의 내용은 하위 법령(secondary legislation)을 통해 비준되어 사회돌봄 부문 모든 노동자의 고용 계약에 법적으로 강제 적용되며, 이는 공정 임금 협약(FPA)을 사회적 돌봄 부문에서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 영국 정부가 발표한 협의안(consultation document)에 따르면, 2023~2024년 기준 사회돌봄 부문 일자리의 약 21%가 호출근로(zero-hours contracts) 형태로 고용되었으며, 이는 경제 전반의 호출근로 형태 비중인 3.5%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또한 사회돌봄 부문의 이직률은 약 25%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부문 일자리의 상당수가 국가 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 수준이거나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저임금 일자리라는 점에 기인한다.
- 이러한 특성은 부문별 단체교섭(sectoral collective bargaining)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돌봄교섭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해당 기구는 노동자 권한 강화, 해당 부문 내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 돌봄인력들이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에 대한 인정과 보상 보장, 생산성 향상 및 생활 수준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영국 정부는 2026년 가을까지 하위 법령 제정을 완료하여 해당 위원회를 정식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이후 위원회를 중심으로 첫 공정 임금 협약(FPA)의 예산 및 임금 기준 등을 협상하여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뒤, 2028년 4월 최종 비준을 거쳐 영국 전역의 돌봄 노동자 노동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 영국 정부는 이처럼 대대적인 법 개정과 유관 위원회 설립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내 사회돌봄 부문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과 인력 유지를 위해 국가적 경력 구조인 '돌봄 인력 경로(care workforce pathway)'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전문적인 돌봄인력 양성을 위한 조치이다. 사회적 돌봄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영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Employment Rights Act 2025.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5/36/enacted (접속일: 2026.05.06.)

GOV·UK,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2025.10.20.). "Closed consultation. Fair pay agreement process in adult social care – consultation document",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fair-pay-agreement-process-in-adult-social-care/fair-pay-agreement-process-in-adult-social-care-consultation-document#background (접속일: 2026.05.06.)

UK Government (2025.07.). "Implementing the Employment Rights Bill: Our roadmap for delivering chang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981e6e4e833d031a3158f87/implementing-the-employment-rights-bill-roadmap.pdf (접속일: 2026.05.10.)

UK Government (2025). "Factsheet: Employment Rights Act 2025 – Evidence and Analysi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95e61e72a4a53b73d51382f/employment-rights-act-analysis.pdf (접속일: 2026.05.11.)

UK Parliament (2025.09.12.). "Employment Rights Bill 2024-2025: Lords stages and amendments",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CBP-10334/CBP-10334.pdf (접속일: 2026.05.10.)

남선우(2025). 영국: 고용권리법안의 쟁점과 전망. 「국제노동브리프」11·12월호, pp.51~60. https://repository.kli.re.kr/bitstream/2021.oak/11924/2/%EA%B5%AD%EC%A0%9C%EB%85%B8%EB%8F%99%EB%B8%8C%EB%A6%AC%ED%94%84_v.23_no.6_6.pdf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성별균형 명부제 확대 시행[2)]

- 2025년, 프랑스는 지방의회 내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기존에 인구 1,000명 이상 지자체에만 적용되던 성별균형 명부제를 1,000명 미만 지자체에도 전면 확대하는 법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개혁은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녀 후보가 교차로 배치된 명부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리고 해당 법은 2026년 3월에 실시된 지방선거부터 처음 적용되어 프랑스 전역의 소규모 코뮌(Communes) 의회 선거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 프랑스는 1999년 헌법 개정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선출직 공직 및 직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2000년 제정된 성별균형 명부제, 일명 '남녀동수법(La loi sur la parité)'은 정당이 명부식 선거에서 남녀 후보를 동수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했다.
- 그러나 프랑스는 인구 규모에 따라 투표 방식을 이원화하여 운영해 왔다. 인구 1,000명 미만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는 프랑스 전체 코뮌의 약 70%를 차지하며 전체 인구의 13%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성별균형 명부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 결과, 1,000명 미만 지역의 여성 지방의원 비율은 37.6%에 머물렀으며, 명부제가 적용되는 1,000명 이상 지역의 48.5%와 비교해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 2025년 법 개정을 통해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성별 균형 명부식 투표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인구 1,000명 이상 지역에만 적용되던 투표 방식이 약 2만 5천 개에 달하는 1,000명 미만 소규모 지자체로 확대되었다. 과거 이러한 소규모 지역에서는 다인 선거구 방식의 다수대표제가 시행되어 성평등 확보에 구조적

2) 곽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강사(Lecturer)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인구 1,000명 미만 지역에서는 2차 투표제(결선 투표제) 기반의 다수대표제와 더불어 유권자가 명부 내 일부 후보를 삭제하거나 타 명부 후보를 추가할 수 있는 교차투표 제도(panachage)가 실시되어 왔다. 이러한 방식은 유권자가 특정 후보를 의도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를 표적 투표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 2026년 지방선거부터 확대 적용된 비례대표 명부식 투표제에서는 모든 후보 명부가 남녀 교차 배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후보 명부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유권자가 임의로 후보를 삭제하거나 순서를 변경하는 선호투표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새 제도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부 완화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인구 1,000명 미만 지역에서는 후보 명부가 법정 정원보다 최대 2명 부족하더라도 이를 완전한 명부로 인정하여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는 인적자원 확보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구간별 최소 후보자 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구 100명 미만: 최소 5명 (법정 정원 7명 대비 2명 적은 수준)
  - 인구 100~499명: 최소 9명 (법정 정원 11명 대비 2명 적은 수준)
  - 인구 500~999명 (신설 구간): 최소 13명 (법정 정원 15명 대비 2명 적은 수준)
- 해당 법안 상정 당시 야당은 인구 밀도가 낮은 소규모 지역에서 성별 균형을 엄격하게 갖춘 명부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반대한 바 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단일 후보 명부만 상정해 오히려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 지방선거 1차 투표를 며칠 앞두고, 여론조사 기관 Ipsos와 CESI 공과대학(CESI École d'ingénieurs)은 프랑스 국민들이 지방 정치 내 여성의 지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조사를 실시했다.[3] 그 결과 인구 1,000명 미만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 성별균형 명부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 대다수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1%는 이 제도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답했으며, 78%는 여성의 지방 정치 참여를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77%는 본 제도가 앞으로 여성의 시장직 진출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과 더불어 현실적인 우려도 있었다. 응답자의 70%는 해당 제도가 후보 명부 구성 자체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답했으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75%까지 높게 나타났다.
- 프랑스의 성별균형 명부제가 지방선거 전반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소규모 지역에 별도의 후보 명부 인정 기준을 적용한 것은 해당 지역의 현실적

3) 해당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로, 응답자 개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조사 대상: 만 18세 이상의 프랑스 성인 인구를 대표하는 전국 표본 1,000명.
- 할당 추출법 적용: 응답자 성별, 연령, 사회적/직업 상태 유형, 거주지역 및 도시 규모 기준으로 할당. 자세한 내용은 조사보고서 원본 참조: Ipsos & CESI (2026), "Municipales 2026: Vers la parité?," https://www.ipsos.com/sites/default/files/ct/news/documents/2026-03/municipales-2026-enquete-place-femmes-politique-locale-rapport-complet-web.pdf

인 후보 발굴 어려움을 완화하고, 선거 절차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반면 선거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론은 단일한 방향으로 수렴되기보다 제도 확대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 우려가 함께 존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Ipsos (2026.3.12.) "Municipales 2026: quelle place pour les femmes en politique locale?," https://www.ipsos.com/fr-fr/municipales-2026-quelle-place-pour-les-femmes-en-politique-locale (접속일: 2026.5.14.)

La Nouvelle République du Centre-Ouest (2025.4.7.) "Municipales 2026 : le Parlement étend aux petites communes le scrutin de liste paritaire," https://www.lanouvellerepublique.fr/a-la-une/municipales-2026-le-parlement-etend-aux-petites-communes-le-scrutin-de-liste-paritaire-1744056716 (접속일: 2026.5.14.).

Ministry of the Interior (2026.3.24.) "Élections municipales et communautaires 2026 : bilan chiffré du premier et du second tour," https://www.interieur.gouv.fr/actualites/communiques-de-presse/elections-municipales-et-communautaires-2026-bilan-chiffre-du-premier-et-du-second-tour (접속일: 2026.5.14.).

Vie-Publique (2026.2.16.) "Lois pour la parité politique : un dispositif contraignant, des résultats contrastés,"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19618-parite-politique-hommes-femmes-quels-resultats (접속일: 2026.5.14.).

아일랜드, 여성 및 소녀를 위한 국가 전략 2025-2030 수립[4)]

- 2025년 11월, 아일랜드 아동·장애·평등부(Department of Children, Disability and Equality)는 「여성 및 소녀를 위한 국가 전략 2025~2030(National Strategy for Women and Girls 2025-2030)」을 발표하였다. 이번 전략은 앞으로 5년간 아일랜드 정부의 성평등 정책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략으로, 성평등 증진과 보다 평등한 사회 구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 공공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번 전략은 2017~2021년 시행된 기존 국가 전략의 성과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이해관계자 및 시민 의견 수렴, 청년 참여 회의, 정부 부처 및 기관 간 협의, 특별 부처 간 위원회 운영 등 폭넓은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되었다.
- 이번 전략은 '성평등 사회에서 여성과 소녀가 번영할 수 있는 아일랜드(An Ireland where women and girls can thrive in a gender equal society)'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다음의 7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 존재의 반영(Being Counted): 정책 및 법률 수립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주류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모든 공공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4) 이지원,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개발보건학 석사

- 나답게 살아가기(Being Me): 유해한 성별 규범과 고정관념의 확산을 줄이고, 여성과 소녀가 성별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리더십(Being a Leader): 여성의 동등한 리더십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정치·경제·스포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안전한 삶(Being Safe):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5]을 예방·근절하고, 공공장소와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 공정한 몫(Having a Fair Share): 노동시장 내 성별 불균형과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돌봄 부담과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여 여성의 경제적·재정적 권한 강화를 추진한다.
- 건강한 삶(Being Well): 구조적 불평등과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여 여성들이 생애 전반에 걸쳐 건강과 웰빙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원받기(Being Supported):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 책임을 보다 평등하게 분담함으로써, 여성이 돌봄을 제공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 모두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이번 전략의 특징은 여성정책을 단순한 권익 증진 차원이 아니라, 성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구조적·사회문화적 요인에 대응하는 종합 전략으로 설계했다는 점이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여성 혐오, 왜곡된 남성성, 전통적 성 역할 규범 등을 주요 문제로 지목하고, 성평등 교육과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성평등을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화와 인식 변화를 필요로 하는 과제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또한 이번 전략은 여성의 경험과 필요가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반영하여, 각 정책 목표에 생애주기 접근법(life course approach)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는 성평등 교육과 온라인 안전, 청년기에는 노동시장 진입과 리더십 확대, 중장년기에는 돌봄 부담과 경제적 안정, 노년기에는 건강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는 여성정책을 단기적 지원 중심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친 구조적 경험과 연결해 설계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아울러 이번 전략은 국내 정책 중심의 전략이면서도 성평등 증진을 아일랜드의 핵심 외교정책 우선순위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략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의제 등 국제규범과 연계하여 성평등을 기본적 인권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평등을 국내 사회정책 차원을 넘어 국제규범 이행과 대외 책임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 마지막으로, 이행 점검 체계를 이원화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이번 전략은 이행 점검 체계를 '활동 모니터링(Activity Monitoring)'과 '성평등 모니터링(Gender Equality Monitoring)'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활동 모니터링은 실행계획 과제의 추진 여부와

5) 아일랜드 정부에 따르면 범죄 경험 양상에는 성별 차이가 존재하며, 여성은 가정폭력, 성폭력, 공공장소 및 온라인 공간에서의 괴롭힘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물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방식이며, 성평등 모니터링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성평등 지표를 활용하여 실제 사회 변화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이중 모니터링 체계는 단순히 정책 추진 실적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이 실제 성평등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평가하려는 장치라는 점에서 실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 종합하면, 이번 아일랜드 국가 전략은 여성과 소녀의 삶을 둘러싼 불평등을 개별 사안이 아니라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성평등 주류화, 돌봄의 재분배, 폭력 예방, 노동시장 평등, 건강권 보장 등을 하나의 정책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생애주기 접근과 이행·성과에 대한 이중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선언적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변화를 측정·평가하고자 했다는 점은 향후 아일랜드 성평등 정책의 실행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gov.ie (2025.11.18.), "National Strategy for Women and Girls 2025 – 2030", https://www.gov.ie/en/department-of-children-disability-and-equality/campaigns/national-strategy-for-women-and-girls-2025-2030/ (접속일: 2026.5.20.)
gov.ie (2025.11.18.), "Strategy Document and Formats", https://assets.gov.ie/static/documents/dfe2f9bb/The_National_Strategy_for_Women_and_Girls_2025_-_2030.pdf (접속일: 2026.5.20.)
gov.ie (2025.11.18.), "Seven Strategic Objectives", https://www.gov.ie/en/department-of-children-disability-and-equality/publications/seven-strategic-objectives/ (접속일: 2026.5.20.)

호주 2026-2027년 여성예산 성명서를 통해 본 여성 정책 방향[6)]

- 호주 연방정부는 5월 12일(화)에 「2026-2027 회계연도 여성 예산 성명서(Women's Budget Statement)」를 발표하였다. 해당 성명서는 여러 주요 핵심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가 11.5%로 사상 최저 수준에 도달했으며, 도달했으며, 세계 성평등 순위가 2022년 43위에서 13위로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이후 현 정부가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종식을 위해 총 44억 달러(약 4조 원)를 투입해 왔다고 언급하였다. 본고에서는 해당 성명서를 바탕으로 호주 연방정부의 예산 배분 방향을 살펴보고, 호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 정책 분야를 분석한다.
- 호주 연방정부는 ① 젠더 기반 폭력, ② 돌봄, ③ 여성의 경제적 평등과 안정, ④ 건강, ⑤ 리더십 및 대표성 등 다섯 가지 영역을 우선순위 분야로 제시하였다.
  - 먼저, 젠더 기반 폭력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이에 대한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양육비 제도(Child Support Scheme)가 폭력과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원주민 여성과 아동이 비원주민 여성과 아동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젠더 기반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젠더 기반 폭력에 대응하는 현장 인력을 지원하고, 피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재정·법률주

6) 조혜인, 모나시대학교 Global Studies 조교수·서울대학교 여성연구원 객원연구원

거 지원 등 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무급 노동으로서의 양육과 돌봄이 여전히 여성에게 불균형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조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유급 육아휴직 제도 확대를 통해 돌봄의 공동 책임과 분담 문화를 확산하고,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질의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여성 비중이 높은 돌봄 분야 종사자에게 공정한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제시하였다.
- 여성의 경제적 평등과 안정 영역에서는 더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재정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개혁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직장 내 성평등 문화 확산과 관련 제도 개혁을 통해 성평등 조치를 강화하고, 시간제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금 감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의 은퇴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연금(superannuation)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건강 영역에서는 여성 건강 패키지를 기반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가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여성 대상 1차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더 많은 벌크 빌링(bulk billing) 클리닉*과 공립 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문화 사회인 호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적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과 웰빙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지속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호주의 공공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진료 방식 중 하나로, 환자가 진료비를 직접 내지 않고 의료기관이 메디케어에 직접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을 의미함. 따라서, 환자 본인 부담금이 없어, 결과적으로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료 진료에 해당됨.

■ 리더십 및 대표성 영역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여성 리더십과 성별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평가하고, 향후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이번 성명서는 기존 여성 예산 성명서와 비교할 때, 개별 정책 영역에 대한 재원 배분을 넘어 젠더 관점을 정책 설계와 규제 구조 전반에 보다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기존 성명서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젠더 기반 폭력 대응, 돌봄 지원 등 분야별 정책 방향과 예산 배분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 성명서는 제도적 허점과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 젠더 기반 폭력 영역에서는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넘어 제도적 남용과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었다. 예컨대 양육비 제도 개혁과 집행 강화는 가족제도나 복지제도가 폭력과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경제적 평등 영역에서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저·중소득 근로자 대상 세제 혜택과 고용 규제 개편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 자체를 조정하려는 흐름이 나타난다. 돌봄과 건강 영역 역시 유급 육아휴직 확대, 연금 개혁, 벌크 빌링 클리닉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 종합하면, 이번 성명서는 호주의 여성 관련 예산 체계가 점진적 정책 확대 단계를 넘어,

젠더 관점의 제도적 내재화와 구조적 개편을 지향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정책이 특정 분야의 지원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예산·노동시장·돌봄·보건·대표성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 구조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영역에서 여전히 예산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향후 정책 이행 과정에서 재정 투입의 지속성과 실질적 효과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Australian Government. (2026). Women's Budget Statement 2026-2027. https://budget.gov.au/content/womens-statement/index.htm (접속일: 2026.5.13.)

영국, 사회주택법 개정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안정 확보 추진[7)]

■ 2026년 6월 영국 정부는 사회주택법안(Social Housing Bill)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저렴한 주거 형태로, 장기적인 거주 안정성과 임대료 보조를 제공하며, 주로 저소득 가구, 취약계층, 민간 주택시장에서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2026년 6월 의회 2차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임대인과 법원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강제퇴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번 조치는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집을 떠나지 않고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동 임대 형태로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집에 머물거나, 집을 떠나 노숙과 경제적 불안정의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지만을 남겨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되면서도 기존 생활공간과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입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집은 보호받아야 할 생활 기반이지만, 동시에 가해자가 통제와 협박을 행사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가정폭력은 대체로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며,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주거 문제는 가장 현실적인 장벽 중 하나가 된다. 주거가 불안정해지는 순간 피해자는 직장,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학교와 돌봄 환경의 변화까지 감수해야 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안전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다면 자녀의 생활 안정과 돌봄 연속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생계와 회복 기반도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일은 단순히 가해자와의 관계를 끊는 문제가 아니라, 생계와 주거 기반 전체를 다시 세우는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영국 가정폭력 국가센터(National Centre for Domestic Violence)에 따르면 성인

7) 이지원,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개발보건학 석사

5명 중 1명이 생애 동안 가정폭력을 경험하며, 여성은 4명 중 1명, 남성은 6~7명 중 1명꼴로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여성만이 경험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피해 양상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여성은 반복적인 폭력, 신체적 위협, 성폭력, 살해 등 고위험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학대적 관계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전 파트너에 의한 심각한 폭행이나 살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정책은 모든 피해자를 포괄하면서도, 여성이 겪는 구조적 위험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이번 사회주택법 개정안에 직접적인 가정폭력 대응 조치가 포함된 것은 정부가 가정폭력을 가능하게 하거나 지속시키는 조건 중 하나로 주거 불안정에 주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사회주택 임대인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먼저 집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공동임대의 경우 피해자가 임대계약 자체를 종료하지 않고서는 가해자와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기 어려웠고, 이는 피해자를 노숙과 경제적 불안정의 위험에 노출시켰다. 또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퇴거 통지를 제출해 공동임대계약을 종료시키고, 피해자가 집을 잃게 되는 허점도 존재했다. 결국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주거권이 오히려 가해자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사회주택 임대인과 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집을 떠나지 않아도 가정폭력 가해자를 사회주택에서 퇴거시킬 수 있게 된다. 공동임대의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임대계약을 피해자 단독 명의로 이전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한 범위에서 적절한 대체 주거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가해자가 제출한 퇴거 통지가 공동임대계약을 종료시키는 효력을 갖지 않도록 했다. 이는 가해자가 주거를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집에서 내쫓는 것을 막는 조치이다.
  - 이처럼 개정안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장치를 마련하지만, 적용 범위와 작동 조건은 제한적이다. 법안은 사회주택 공동임대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나 가해자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폭력 사실을 드러내고 임대인 또는 법원 절차에 접근할 수 있어야 보호 조치가 작동한다는 점도 한계다. 따라서 신고부터 법원 절차까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와 함께, 보복 위험 평가와 대체 주거 제공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 대응이 주거 정책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은 신고, 처벌, 보호 조치만으로 보장되기 어렵고, 주거 안정, 생계 기반, 자녀 돌봄, 지역사회 지원망과 함께 다뤄질 필요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은 민간 주택시장에서 대체 주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폭력에서 벗어나거나 안전한 생활 기반을 회복하는 데 더 큰 제약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는 여성·가족, 형사사법, 복지, 주거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다분야 협력의 과제다. 이번 법안은 피해자

가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주거를 잃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정폭력 대응을 위기 개입 이후의 생활 안정과 회복 기반까지 확장한 사례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GOV UK (2026.6.1.), "Domestic abusers to be evicted under new landmark housing law", https://www.gov.uk/government/news/domestic-abusers-to-be-evicted-under-new-landmark-housing-law (접속일: 2026.6.18.)

GOV UK (2026.5.13.), "THE KING'S SPEECH 2026",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a18713db95db968c8f3bbfd/The_King_s_Speech_2026_-_background_briefing_notes.pdf (접속일: 2026.6.18.)

National Centre for Domestic Violence (2026), "Domestic Abuse Statistics UK", https://www.ncdv.org.uk/domestic-abuse-statistics-uk/ (접속일: 2026.6.18.)

스페인, 임신중지 권리 보장하는 헌법개정안 추진[8)]

- 스페인 정부가 여성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을 헌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개헌안은 임신중지를 여성의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스페인 내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 및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2026년 4월 초, 내각은 국무회의를 통해 헌법 제43조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승인했다. 추가하고자 하는 조항은 "공공기관은 여성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평등한 조건하에 임신중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고, 그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페인 보건부에 따르면 임신중지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법적 인정이며, 정부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제도적으로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 아나 레돈도 가르시아(Ana Redondo García) 평등부 장관(Minister of Equality)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헌안이 스페인 정부의 최고 법률 자문기관인 국무원(Consejo de Estado)의 검증을 거쳐 합헌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무원은 스페인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안, 시행령, 행정조치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고 자문 의견을 제공하는 자문기구이다. 레돈도 장관은 임신중지권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본 존엄성 및 인격과 직결된 권리로 인정받았으나, 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법적으로 더 강력하게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 스페인의 현재 임신중지법(Law 2/2010 of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Abortion)은 임신 14주까지 본인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한 경우에는 그 이후 단계에서도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제도는 2010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미성년자의 접근권, 공공의료 제공기관의 역할 등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해 개정되어 왔다.

8) 곽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강사(Lecturer)

- 정부가 개헌을 서두르는 여러 배경 중 하나는 지역별로 극심한 공공의료 서비스 격차다. 임신중지는 전국적으로 합법화되어 있으나,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 시술을 수행하려는 의료진 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역별 서비스 제공 수준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실정이다. 보건부에 따르면, 현실에서 전체 임신중지 수술의 20%만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는 공공의료 시스템과 계약을 맺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상당수의 임신중지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의료진은 양심적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별 서비스 제공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수의 의사가 임신중지 시술 수행을 거부하고 있어 외부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 아나 레돈도 가르시아(Ana Redondo García) 평등부 장관은 헌법 수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차별이나 어려움 없이 임신중지 관련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하원 관보(Boletín Oficial de las Cortes Generales)의 공식 초안에 따르면 기존 헌법이 보건권을 포괄적으로 다뤘다면, 이번 개정안은 임신중지를 특정하여 명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여성의 신체와 인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15조와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실현을 규정한 제10.1조를 구체화한 것이다.
- 정부의 헌법 개정안은 정치권 전반에서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정당들은 이번 개헌이 기존의 임신중지 권리를 더욱 강력하게 보장하는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 측은 현재의 법적 체계만으로도 충분한데 헌법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특정한 정책 영역을 헌법에 포함하는 것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사법적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 2026년 4월 30일, 하원은 보수 야당인 국민당(PP)과 복스(Vox)가 제출한 임신중지 관련 헌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 수정안(Enmiendas a la totalidad)을 부결하고, 내각의 헌법 개정안 심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일각의 반대 움직임을 저지하고 입법 절차를 지속할 동력을 얻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개헌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스페인 헌법이 요구하는 특별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 스페인에서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3/5(6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근 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177표, 반대 171표로 과반은 넘었지만 개헌에 필요한 210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 따라서 보수 야당과의 협치 및 사회적 합의가 향후 입법 과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원 합동 위원회의 재조정 또는 하원 2/3 및 상원 과반수의 찬성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당(PP)은 이미 임신중지권은 법적으로 보장하며 헌법개정안은 정치적 도구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정부의 헌법개정안은 임신중지 권리를 헌법에 새로운 조항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접근 방식에서 주목할 만 하다. 임신중지권을 일반 법적 조항을 넘어서 보다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권리로 보장하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정치적으로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개정안의 성패는 의회 내 정치적 협상과 표결 결과가 관건일 것이다.

• 참고문헌 •

Congreso de los Diputados (2026.4.13.), "Proyecto de reforma constitucional 102/000001: proyecto de reforma del artículo 43 de la Constitución Española," https://www.congreso.es/public_oficiales/L15/CONG/BOCG/A/BOCG-15-A-92-1.PDF (접속일: 2026.6.16.)

Euro Weekly News (2026.4.10.), "Spain could give abortion rights constitutional status under new proposal," https://euroweeklynews.com/2026/04/10/spain-could-give-abortion-rights-constitutional-status-under-new-proposal/ (접속일: 2026.6.16.)

La Moncloa (2026.4.7.), "El Gobierno aprueba el proyecto de reforma constitucional para blindar el derecho a la interrupción voluntaria del embarazo," https://www.lamoncloa.gob.es/consejodeministros/resumenes/paginas/2026/070426-rueda-de-prensa-ministros.aspx (접속일: 2026.6.16.)

Ministerio de Sanidad. (2026, April 7), "El Gobierno da luz verde al proyecto de reforma para constitucionalizar la vertiente prestacional del derecho a la interrupción voluntaria del embarazo," https://www.sanidad.gob.es/gabinete/notasPrensa.do?id=6879 (접속일: 2026.6.16.)

RTVE (2026, April 30), "El Congreso tumba las enmiendas a la totalidad de PP y Vox a la reforma constitucional para blindar el aborto,"
https://www.rtve.es/noticias/20260430/congreso-tumba-enmiendas-a-totalidad-presentadas-por-pp-vox-a-reforma-constitucional-para-blindar-aborto/17048261.shtml (접속일: 2026.6.16.)

여성·아동을 위한 주거 지원과 사회적 가치[9)]

- YWCA 오스트레일리아와 Per Capita Centre for Equitable Housing은 여성과 가족을 위한 장기 사회주택(social housing) 및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사회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가 입장에서 경제적 선택이기도 하다는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연구 결과는 호주 전역에서 주택 위기가 심화되고, 여성 노숙이 증가하며, 보건·사법·사회복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발표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 보고서에 따르면 안정적인 주거는 응급의료, 경찰, 위기숙소, 사법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를 줄여 공공 부문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치상으로는 여성의 필요를 반영한(gender-responsive) 사회주택 및 부담가능한 주택에 정부의 예산 1달러가 투자될 경우, 정부는 최소 2.02달러의 측정 가능한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주택을 제공할 경우 경제적 편익은 더욱 커졌으며, 안정적인 주거가 가족 재결합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정부 예산 투입 대비 최대 4.66달러까지 사회•경제적 편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또한, 해당 주택 지원 프로그램은 매년 약 350만 호주달러 (약 37.7억 원)의 의료비용과 280만 호주달러(약 30.2억 원)의 사법시스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YWCA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룹 최고경영자(CEO)인 미셸 필립스(Michelle Phillips)는 이번 연구가 사회주택과 부담가능한 주택을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할

9) 조혜인, 모나시대학교 Global Studies 조교수·서울대학교 여성연구원 객원연구원

수 있는 가장 수익성 높은 투자 중 하나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그동안의 주택정책이 성별에 따라 주거 불안을 경험하는 방식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gender-neutral)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 이번 보고서가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호주 주택시장에서 여성들이 여전히 다양한 구조적 장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드니와 멜버른 등 주요 대도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심각한 임대주택 위기(rental crisis)를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심 지역에 임대 매물이 나오면 여러 가구의 세입자가 동시에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일반적이다. 또한 한국의 전세 제도와 달리 호주에서는 전세 제도가 없어, 대부분의 세입자는 높은 수준의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 2025년 10월 기준 시드니의 주당 중위 임대료는 807호주달러(약 86만 9천 원)로,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495 호주달러(약 376만 원)에 달한다.
- 이러한 상황은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주거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고, 무급 돌봄 노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며,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 가구의 경우 여성 가장의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과 아동의 노숙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가정폭력이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안전한 주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거 및 위기지원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번 연구 결과는 호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호주 국가 주택 투자 기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사회주택과 부담가능 주택에 투자하고 있는 시점에 발표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보고서가 매우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분석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여성과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세대 간 빈곤의 감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 편익을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사회·경제적 가치는 보고서에서 제시된 수치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
- 이번 연구는 정부가 복지 지출의 경제적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요구받는 상황에서, 여성과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투자임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안전, 가정폭력 예방, 노숙 감소, 가족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주택정책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에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공공투자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 참고문헌 •

Forbes (2026), Average Rent in Australia: The Complete Guide. https://www.forbes.com/advisor/au/property/average-rent-price-in-australia/ (접속일: 2026.6.22.)

Percapita (2026), Gender Responsive Housing. https://percapita.org.au/our_work/gender-responsive-housing/ (접속일: 2026.6.20.)

스웨덴의 국가 성평등 전략과 성폭력·성매매 대응 방안[10)]

- 스웨덴 정부는 2026년 4월 20일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및 인신매매, 명예에 기반한 폭력과 억압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10개년 국가 전략(2026-2035)을 제시했다. 니나 라르손(Nina Larsson) 성평등부 장관(Minister for Gender Equality), 카밀라 발터손 그뢴발(Camilla Waltersson Grönvall) 사회서비스부 장관(Minister for Social Services), 그리고 야콥 포르스메드(Jakob Forssmed) 사회복지보건부 장관(Minister for Social Affairs and Public Health)은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비전 제로(Vision Zero)' 접근법을 지침으로 장기적이고 예방적인 사회 보호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몇 년간 스웨덴 정부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성폭력·성매매 대응 방안들의 연장선상에서 새롭게 제시된 성평등 국가 전략의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스웨덴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여성안전위원회(Council for Women's Safety)'를 신설한 바 있다. 해당 위원회는 '비전 제로' 접근법을 지침으로 삼는데, 이는 모든 형태의 폭력이 반드시 끝나야 한다는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업무가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괄한다. 여성 대상 폭력의 사회적 용인 수치가 오직 0명이라는 정부의 이러한 방향성은 폭력을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 및 시스템적 실패(systemic failure)로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 '비전 제로' 접근법하에서 정부는 과거의 파편화된 성평등 정책에서 나아가 국가가 책임지는 강력한 거버넌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10개년 전략을 발표했다. 5가지의 핵심 전략 분야는 폭력 예방 업무, 폭력 징후 감지, 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범죄 예방, 그리고 재범 방지 업무이다. 이러한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3대 기본 전제로 인권 기반 개입 및 강화된 피해자 관점, 모든 폭력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 협력, 그리고 지식 및 정보 기반의 업무를 제시하였다.
- 또한 기관 간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에 따라 성평등청(Gender Equality Agency)을 컨트롤 타워로 각 공공 부처에 세분화된 책임이 부여되었다. 성평등청이 전략의 지침 원칙에 따라 전반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면 국립보건복지위원회(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는 사회서비스, 보건 및 의료 분야에서 지원을 담당한다. 이 외에도 지방 행정위원회(County Administrative Boards), 국립

10) 윤선우,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여성폭력 지식센터(National Centre for Knowledge on Men's Violence Against Women, NCK), 통계청 등에서 국가 전략 지원 및 평가지표 개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 올해 이러한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스웨덴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온 바 있다. 예컨대 정부는 2025년 9월 25일, 국가의 새로운 성평등 정책 목표로 '명예 관련 폭력 근절(honor-related violence)'을 법제화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폭력이 여타 폭력의 형태와 달리 집단적인 형태로 표출될 수 있음에 주목하였으며, 구체적인 해결 목표를 별도로 도입하고 관련 대응 업무의 주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연계하여 2026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2026년도 성평등 정책 내 새로운 이니셔티브(신규 사업)에 1억 6,600만 스웨덴 크로나(SEK, 한화 약 210억 원)를 투자하였다. 이는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의 성평등 예산이었으며 이니셔티브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친밀한 관계 내의 폭력, 명예 관련 폭력, 성매매 및 인신매매 대응 등을 포함하여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었다.
- 이러한 국가 주도의 성폭력·성매매 근절 대응 방식은 노르딕 모델(Nordic Model)로 대표되는 성 구매자 처벌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해당 모델은 성매매 관련 정책에 있어 기본적으로 성을 판매하는 사람을 구조적 피해자로 규정하고 성을 구매한 사람만을 처벌하며, 성 판매자가 성 산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주거, 일자리, 심리 치료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 스웨덴은 형법 제6장을 통해 성범죄 및 성착취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중 제11조(성적 행위의 구매)가 개정되면서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 구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는 2022년 8월 1일 공식 발효되었다. 개정 전 법문의 처벌 대상이 성적 서비스 구매(purchase of sexual services)로 명시되었던 것이 성적 행위 구매(purchase of sexual act)로 개정되면서 물리적 공간에서 행해지는 신체 접촉 요건이 아닌 성적 행위 자체에 주목하여 온라인 상의 성매매를 오프라인 성매매와 동일한 범죄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 여성 폭력 근절과 관련한 최근 스웨덴 정부의 성평등 계획안은 정부 수준의 통합적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계획안이 만들어진 나라의 사회문화 및 역사적 배경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성폭력 가해 및 피해 양상, 식민지 및 전쟁하는 동안의 정부 개입의 역사, 성매매 산업의 규모는 스웨덴과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Criminal Code (1962: 700),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brottsbalk-1962700_sfs-1962-700/#K6 (접속일: 2026.06.11.)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26.04.20.), "New National Strategy for a society free from violence, oppression and exploitation", https://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26/04/new-national-strategy-for-a-society-free-from-violence-oppression-and-exploitation/ (접속일: 2026.06.10.)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25.09.25.), "New seventh target to prevent and combat honor-related violence and oppression",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9/nytt-sjunde-delmal-for-att-forebygga-och-motverka-hedersrelaterat-vald-och-fortryck/ (접속일: 2026.06.11.)

Swedish Gender Equality Agency (2026.04.16.), "New Strategy to Strengthen Work Against Violence, Oppression and Exploitation", https://jamstalldhetsmyndigheten.se/en/news/new-strategy-to-strengthen-work-against-violence-oppression-and-exploitation/ (접속일: 2026.06.11.)

The Swedish Criminal Code, https://www.government.se/contentassets/7a2dcae0787e465e9a2431554b5eab03/the-swedish-criminal-code.pdf (접속일: 2026.06.12.)

오스트리아 육아휴직 사용 및 제도 현황[11)]

- 2026년 2월 초, 오스트리아 국립 학술연구기관인 오스트리아 학술원(Austrian Academy of Sciences, ÖAW) 연구진은 부모들의 첫 자녀 출산 전후 노동시장 행태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본고에서는 해당 연구 결과 내용과 함께 최근 오스트리아의 육아휴직 및 육아수당 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오스트리아 학술원이 실시한 이 연구는 연구 대상은 1942년-1997년에 태어나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5,130명의 고용 이력과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결과와 연계해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12)] 이 연구에 따르면, 첫 자녀 출산 이후 어머니가 된 여성들은 평균 416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반면, 남성은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평균 9일로 나타나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유급 휴직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장기간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육아휴직 사용에서의 성 격차 양상은 직업적 숙련도 수준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직업 전문성이 높은(고숙련) 여성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보다 노동시장에 더 빠르게 복귀하는 경향을 보이긴 했으나, 이들 역시 상당 기간 경력 단절을 경험하거나 복귀 후에도 시간제 근무 형태로 재진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반면 남성의 경우 부모가 되었다는 사실이 경력 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숙련도 또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직업 전문성이 높은 남성 근로자조차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학력 수준, 이주 배경, 거주 지역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대부분의 집단에 걸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11) 곽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강사(Lecturer)

12) 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는 만 16-65세의 사회생활과 직무생활에서 필요한 핵심기본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여러 지표로 측정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국제 대규모 조사이다.

- 해당 연구진은 오스트리아의 관대한 육아휴직 제도가 경제적 안정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성별 역할 분업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연구 책임자인 클라우디아 라이터(Claudia Reiter) 박사는 "저출산과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자주 언급되지만, 현실에서는 사회적 규범이 여성을 장기간 노동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상황에서 관대한 육아휴직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오스트리아의 현 육아관련 정책 제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자면, 먼저 육아휴직(Elternkarenz)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휴직 기간 동안 자녀와 동일한 가구에서 생활해야 하며, 최소 2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 한 부모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자녀 생후 22개월까지 가능하며, 부모가 번갈아 사용하는 경우 최대 자녀 만 2세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부모 간 첫 번째 전환 시 일정 기간 공동 휴직을 허용하고, 상대 부모가 육아휴직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예: 자영업자, 실업자, 학생 등) 예외적으로 휴직 기간이 최대 생후 23-24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 육아수당(Kinderbetreuungsgeld, KBG)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제도이다. 육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소득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육아휴직 중에도 근로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육아수당은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임의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녀를 주로 돌보는 주 양육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주 양육자가 변경되면 양육 책임과 수급 대상의 변경 사실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를 최대 두 차례까지 변경할 수 있다.
- 오스트리아의 육아수당은 부모가 선택한 급여 모델에 따라 수급 기간과 지급액이 달라지는 구조이다. 제도는 크게 정액형 육아수당 계좌 모델과 소득연동형 모델로 구분된다. 정액형 모델은 수급 기간을 길게 선택할수록 하루 지급액이 감소하며, 부모가 육아를 분담할 경우 두 번째 부모의 사용 기간을 포함해 전체 수급 가능 기간이 늘어난다. 소득연동형 모델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이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 부모가 이용할 경우 최대 365일, 부모가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최대 426일까지 지급된다. 선택한 모델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 육아수당은 선택한 지급 기간이 길수록 하루 지급액이 낮아지고, 지급 기간이 짧을수록 하루 지급액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정액형 육아수당 계좌 모델의 경우, 최단기간을 선택하면 하루 약 41유로(한화 약 6만 6천 원), 최장기간을 선택하면 하루 약 17~18유로(한화 약 2만 7천~2만 9천 원)가 지급된다. 실제 지급액은 기준연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수급액은 선택한 육아수당 유형과 지급 기간, 부모 간 사용 방식 및 소득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 이 밖에도 오스트리아 육아수당 제도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부모-자녀 패스(Eltern-Kind-Pass)와의 연계이다.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임신을 확인한 후 부모-자녀 패스를 발급받으며, 이를 통해 임신 중 산전검사와 출산 후 아동 건강검진 기록을 관리한다. 임신 중에는 총 5회의 필수 검사가 이루어지며, 출산 이후에는 자녀의 건강과 발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부모-자녀 패스 검진이 실시된다. 오스트리아는

2024년 1월 기존 Mutter-Kind-Pass(모자수첩) 제도를 Eltern-Kind-Pass(부모-자녀 패스)로 변경했다. 해당 검진 프로그램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아동의 발달 상태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 육아수당(KBG)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서는 관련 검진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검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육아수당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는 선택한 육아수당 모델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 이처럼 세분화된 육아수당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육아휴직 활용과 여성의 경력 단절 간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 확인된 성별 격차는 여전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오스트리아 정부가 제도 운영과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지 그 정책적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2026.2.11.) "Unabhängig von der Qualifikation: Elternkarenz wird fast nur von Frauen genutzt," https://www.oeaw.ac.at/news/unabhaengig-von-der-qualifikation-elternkarenz-wird-fast-nur-von-frauen-genutzt-1 (접속일: 2026.7.15.)

Bundesministerium für Soziales, Gesundheit, Pflege und Konsumentenschutz (no date) "Eltern-Kind-Pass," https://www.sozialministerium.gv.at/Themen/Gesundheit/Eltern-und-Kind/Eltern-Kind-Pass.html (접속일: 2026.7.15.)

Bundesministerium für Soziales, Gesundheit, Pflege und Konsumentenschutz (no date) "Elternkarenz," https://www.sozialministerium.gv.at/Themen/Arbeit/Arbeitsrecht/Karenz-und-Teilzeit/Elternkarenz.html?utm_source=chatgpt.com (접속일: 2026.7.15.)

Finanz (no date) "Karenzgeld in Österreich – Anspruch, Höhe, Dauer – Rechner, https://www.finanz.at/arbeitnehmer/karenzgeld/ (접속일: 2026.7.15.)

영국 국방부, 여성 군인을 위한 고강도 훈련 지침서 발간[13)]

- 2026년 7월 9일, 영국 국방부는 여성 군인의 고강도 군사훈련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인간 수행 능력의 과학: 고강도 과정에 대비하는 여성 군인을 위한 지침서(Science of Human Performance: A guide for servicewomen preparing for arduous courses)」를 발간했다. 영국 국방부가 세계 최초의 여성 군인 고강도 훈련 지침서라고 소개한 이번 지침서는 지난 10년 동안 약 2천만 파운드(한화 약 400억 원)를 투자해 실시한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연구진은 고강도 군사훈련이 여성의 신체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2만 2천 건의 데이터 세트를 활용해 66건의 연구를 수행했다.
- 이 연구는 2016년 여성의 지상 근접 전투 역할 참여 제한이 해제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여성 군인에게 고강도 전투 역할이 개방되었지만, 군사훈련과 수행 능력에 관한 기존 연구 대부분이 남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 군인은 남성의 신체와 경험을 기준으로 설계된 훈련 방식과 건강관리 체계에 적응해야 했다.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직무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훈련·영양·회복·건강 보호

13) 이지원,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개발보건학 석사

까지 남성 기준으로 획일화할 경우 형식적 평등은 유지될 수 있지만, 여성의 부상과 중도 이탈 위험은 커질 수 있었다. 이에 영국 국방부는 여성 군인들이 기존의 기준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근거 기반의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 지침서는 훈련(Train), 임무 수행을 위한 영양(Performance Nutrition), 보호(Protect)의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1) 훈련(Train) 영역은 지구력, 근력, 군장 운반과 부상 예방을 다룬다. 핵심 원칙은 실제 훈련 과정이나 임무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맞춰 조기에 훈련을 시작하고, 개인의 체력과 약점을 고려해 훈련량과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특히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근육량과 절대 근력이 낮지만, 체계적으로 훈련하면 남성과 유사한 비율의 근력이 향상될 수 있다. 지침서는 이러한 성별 차이를 여성의 능력 부족으로 해석하는 대신, 충분한 준비 기간과 지속적인 근력 및 군장 운반 훈련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한다.
  2) 임무 수행을 위한 영양(Performance Nutrition) 영역은 고강도 훈련 중 여성 군인에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낮은 에너지 가용성, 철분 결핍과 골 건강 저하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충분한 에너지 섭취와 철분, 칼슘, 비타민 D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수분과 탄수화물·단백질·지방 섭취를 훈련 수행과 회복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한다. 지침서는 영양 관리를 개인의 식습관에만 맡기지 않고, 부상 예방과 작전 수행 능력을 뒷받침하는 지원 요소로 다룬다.
  3) 보호(Protect) 영역은 수면, 극한 환경, 장비 및 호르몬 건강을 다룬다. 특히 월경 주기를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활력징후(vital sign)로 보고, 월경 중단, 주기 불규칙성, 출혈량 변화 등을 에너지 부족, 과도한 훈련 또는 건강 악화의 신호로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여성의 체형에 맞는 군장 조절법과 스포츠 브라, 서서 소변을 볼 수 있는 배뇨 보조 기구, 비상 생리용품과 폐기 시설, 체형을 고려한 전투복과 방탄복 등을 제시한다. 이는 장비의 적합성이 단순한 편의의 차원을 넘어 호흡, 이동성, 부상 예방과 전투 수행 능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 이번 지침서는 남성의 신체와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계된 기존 군사훈련 및 건강관리 체계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는 여성 군인에게 완화된 기준이나 별도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직무 기준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충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형평성 있게 제공하는 조치이다. 또한 여성 군인 개인에게 신체 관리의 책임을 맡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침서를 지휘관과 훈련 교관이 함께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훈련 계획 수립, 영양 · 회복 · 의료 지원과 장비 조달에 대한 조직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나아가 여성의 신체에 관한 연구 결과를 실제 훈련과 조직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국방 분야의 성별 데이터 격차를 보완하고 이를 정책과 물자 제공 방식의 개선으로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 영국 국방부는 이번 지침서가 여성 군인의 부상을 줄이고, 안정적인 복무와 고강도 직무 진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여성의 체형에 맞는 방탄판 등 핵심 장비의 조달

과 보급은 여전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향후에는 지침 배포에 그치지 않고 훈련 교관 교육, 영양·의료 지원과 여성 체형에 맞는 장비 보급을 병행하는 한편, 부상률, 훈련 중도 탈락률, 과정 수료율 및 복무 유지율을 성별로 구분해 지속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연구 결과가 실제 훈련 환경과 복무 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GOV UK (2026.7.10.), "New training guide launched to revolutionise health of servicewomen",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training-guide-launched-to-revolutionise-health-of-servicewomen (접속일: 2026.7.20.)

Ministry of Defence (2026.7.13.), "Guide for Servicewomen Preparing for Arduous Cours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uide-for-servicewomen-preparing-for-arduous-courses (접속일: 2026.7.20.)

Forces News (2026.7.10.), "Fit for the fight: MOD spends 10 years and £20m researching women's bodies", https://www.forcesnews.com/women/fit-fight-mod-spend-10-years-and-ps20million-researching-womens-bodies (접속일: 2026.7.20.)

THEiPAPER (2026.7.11.), "The Army is letting female soldiers down in one key area – lives could be at risk", https://inews.co.uk/news/world/army-letting-female-soldiers-down-lives-risk-4636168?srsltid=AfmBOoqbczjYatJw0HYgJWsut7GgNLr-lLa2RwsSezKxiFGzYHhonFhO (접속일: 2026.7.20.)

The Guardian (2026.7.12.),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6/jul/12/how-to-build-an-elite-servicewoman-british-military-top-scientists-look-to-unleash-oestrogen-advantage",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6/jul/12/how-to-build-an-elite-servicewoman-british-military-top-scientists-look-to-unleash-oestrogen-advantage (접속일: 2026.7.20.)

스웨덴의 유럽연합 임금 투명성 지침(EU Pay Transparency Directive) 이행 지연 실태[14)]

- 2026년 3월 26일, 스웨덴 정부는 유럽연합 임금 투명성 지침(EU Pay Transparency Directive, 이하 EU PTD)의 시행 시기를 연기하고 관련 규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EU 차원의 재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별 임금 평등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스웨덴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2026년 5월 22일, EU 집행위원회가 규제 단순화를 위한 재협상이나 '시행 일시 정지(stop-the-clock)' 조치에 EU PTD를 포함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스웨덴은 입법 절차를 재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만 스웨덴 의회가 여름 휴회를 앞두고 있고 가을 선거도 예정되어 있어, 관련 국내법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마련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EU PTD의 취지에 동의하고 성별 임금 평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조치를 시행해 온 스웨덴 정부가 지침에 반대하는 이유와 주요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EU PTD는 2023년 5월 채택되었으며, 회원국들은 국내법 전환 기한(transposition deadline)인 2026년 6월 7일까지 이를 국내법에 반영해야 했다. EU PTD는 유럽연합

14) 윤선우,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회원국 내 성별 임금 격차(Gender Pay Gap)를 해소하고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된 지침이다.

- EU PTD는 고용주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 첫째, 고용주는 노동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노동자의 개별 임금 수준과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 집단의 성별 평균 임금 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는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 간 임금 격차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셋째, 임금 보고 결과 정당한 사유로 설명되지 않는 성별 임금 격차가 5%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 임금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임금 차별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진다. 예를 들어 투명성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고용주는 임금 차별이 없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 EU PTD가 채택될 당시 스웨덴은 이미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침의 설계가 스웨덴의 기존 규정 및 노동시장 모델에 부합하지 않고, 회원국들이 각국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지침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스웨덴 성평등 담당 장관 니나 라르손(Nina Larsson)은 지침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각국의 상황에 맞게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스웨덴이 성별 임금 평등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EU PTD에 우려를 나타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임금 투명성 지침의 설계가 행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정도로 복잡하며, 특히 '동등 가치 노동(equal value work)'의 개념을 실무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유럽 비즈니스 연합(BusinessEurope)이 제기한 우려와도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둘째, 해당 지침이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을 토대로 형성된 스웨덴의 노동시장 모델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 규제가 적절하게 설계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성평등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 이처럼 스웨덴은 해당 지침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지침 이행에 따르는 복잡성과 비용에 대해 고용주들이 제기해 온 우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EU PTD의 핵심 개념인 '동등 가치 노동'을 실무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웨덴 정부와 유럽 비즈니스 연합이 단체교섭, 행정적 부담, 규제 단순화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해당 지침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coordinated pushback)이 힘을 얻고 있음을 시사한다.
- 국내법 전환이 지연됨에 따라 스웨덴의 공공부문 고용주들은 지난 6월 8일부터 지침의 '수직적 직접효력(vertical direct effect)'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민간 고용주에게는 '지침 합치적 해석(directive-consistent interpretation)'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EU PTD에 맞게 아직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은 기존 국내법을 해석할 때에도 가능한 한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EU PTD 이행 지연은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 여성과 남성이 동등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는 1957년 이래로 EU의 근간을 이루어 온 원칙이다. 현 스웨덴 정부가 EU 노동법의 핵심 개념인 '동등 가치 노동'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지침의 복잡성을 이유로 EU PTD의 이행을 지연하고 있다는 점은 이 사안을 단순한 행정적 조정의 차원을 넘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지침 시행과 관련한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대응 방향과 유럽 비즈니스 연합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Criminal Code (1962: 700),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brottsbalk-1962700_sfs-1962-700/#K6 (접속일: 2026.06.11.)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26.04.20.), "New National Strategy for a society free from violence, oppression and exploitation", https://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26/04/new-national-strategy-for-a-society-free-from-violence-oppression-and-exploitation/ (접속일: 2026.06.10.)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25.09.25.), "New seventh target to prevent and combat honor-related violence and oppression",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9/nytt-sjunde-delmal-for-att-forebygga-och-motverka-hedersrelaterat-vald-och-fortryck/ (접속일: 2026.06.11.)

Swedish Gender Equality Agency (2026.04.16.), "New Strategy to Strengthen Work Against Violence, Oppression and Exploitation", https://jamstalldhetsmyndigheten.se/en/news/new-strategy-to-strengthen-work-against-violence-oppression-and-exploitation/ (접속일: 2026.06.11.)

The Swedish Criminal Code, https://www.government.se/contentassets/7a2dcae0787e465e9a2431554b5eab03/the-swedish-criminal-code.pdf (접속일: 2026.06.12.)

국내*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성평등부(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5월 18일부터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의 역할과 전문성을 살린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의 위험성에 따른 맞춤형 보호 ·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힘.

• 최근 관계성 범죄의 증가와 함께 피해 양상이 복잡 · 다양해지고 있고, 피해자에 따라서는 트라우마, 심리적 무력감, 고립감 등을 호소함에 따라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한 정서적 · 심리적 지원이 요구되거나 일부 피해자의 경우 막연히 경찰 개입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경찰 단독 대응만으로는 피해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보호 · 지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최근 3년간 관계성 범죄 신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4-2025년 대비
계	339,804	356,988	439,382	23.1%↑
가정폭력	230,830	236,647	289,368	22.3%↑
교제폭력	77,150	88,394	105,327	19.2%↑
스토킹	31,824	31,947	44,687	39.9%↑

•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가 협의한 내용에 따라,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 · 도의 가정폭력 등 상담 기관(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등) 189개소가 서로 매칭되어 상호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관계성 범죄 신고 접수 시 피해자보호경찰관-전문상담사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피해자의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보호·지원을 제공할 예정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내동향」 중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의 주요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임.

<공동대응체계 구축>



•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6. 5. 17.]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081

성평등가족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관계부처 합동 국정성과보고에서 핵심 국정성과 보고

■ 성평등가족부는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관계부처 합동 국정성과보고(`26.5.20.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그간 추진해 온 핵심 국정성과를 보고함.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법·제도 강화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의 부인·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위안부피해자법」을 개정*하여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규정 신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추모공간 보호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

■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AI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유인정보를 24시간 자동 탐지·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앙·지역 피해자지원센터를 확충하여, 불법촬영물 탐지와 피해지원 기능 강화

* 예산 : ('25) 45.5억 → ('26) 76.2억$^{67.5\%\uparrow}$ / 지원실적 : (`24) 35.7만건 → (`25) 38.1만건

-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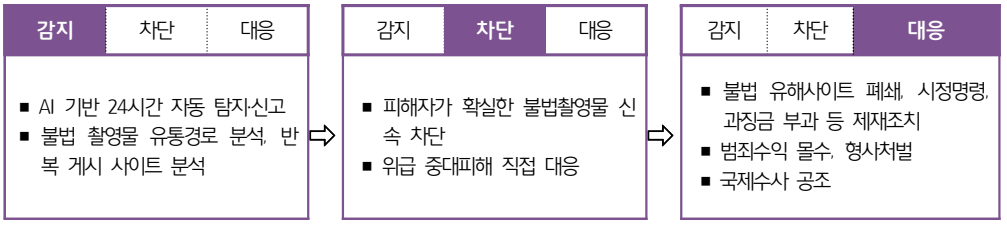

■ 양육비 지원 제도 개편을 통한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 전면 개편
-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5. 20.]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091

성평등가족부, 취약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 관계부처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는 5월 26일(화)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힘.
- 그간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어 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 모색
- ▲13세 전후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연계 개선,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협력 강화 방안 ▲위기임신보호출산제 홍보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5. 2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095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 성평등가족부는 6월 2일(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6.7.1.)에 맞춰,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회복과 자립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학업 지속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둠.
- 법률 개정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인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행령을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초과 연장 사유를 개정 법률 취지에 맞게 정비함.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2.]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04

성평등가족부-법원행정처,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협력

-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은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발생한 스토킹·교제폭력 사건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스토킹·교제폭력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결정 시 피의자 위험도 판단 등과 관련한 다양한 방식의 참고자료(피해자 상담사실 확인서 및 상담이력 등 피해자 진술 관련 자료 등)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 수사나 재판 중에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취하는 조치(1호 : 서면 경고, 2호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호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2호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호 :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 교제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교제폭력 관련 법률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함.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4.]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11

성평등가족부,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 구현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6~'30) 확정

■ 성평등가족부는 정부의 가족정책 추진 방향과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9일(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힘.

■ 이번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향후 5년간 급변하는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모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음.

■ 이번 기본계획은 1인가구, 이주배경가족의 증가와 새로운 취약·위기가족의 등장, 돌봄 부담 심화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돌봄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비전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	
목표	모든 가족의 기본적인 삶 보장	가족친화적 일터·사회환경 조성
대과제	포용적 사회 기반 조성	모든 가족을 위한 포용적 지원 강화
		가족 변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
		민주·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지원
	기본생활 보장 강화	다양한 가족을 위한 경제적 자립 지원 확대
		가정 내 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가족이 함께하는 소통·여가공간 조성
	사회적 돌봄 확충	지역사회 돌봄 강화 및 질 제고
		돌봄위기 대응 서비스 강화
		돌봄자 지원 강화 및 인식 개선
	일생활·가족의 균형 강화	성평등한 일터 조성
		가족친화 사회환경 기반 마련
		일·생활·가족이 공존하는 일터 확산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9.]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23

디지털성범죄 대응 범정부 협의체 출범

■ 성평등가족부는 9일(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이하 '범정부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힘.

■ 범정부 협의체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수사·차단·피해자 지원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업체계로, 이날 회의에는 4개 기관의 기관장이 직접 참여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함.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9.]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28

성평등가족부, 성별 인식격차 해소 위한 국민 소통·참여 플랫폼 개설

■ 성평등가족부는 국민 누구나 성별 인식격차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www.youthcce.or.kr) 누리집을 개설하고 6월 10일(수)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밝힘.

■ 이번 누리집은 2026년 3월 출범한 '제1기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성별 인식격차 해소 논의를 온라인으로 확장하고,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사회적 공감과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 누리집에는 ▲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감사례 게시판, ▲청년 공존 · 공감위원회 활동 및 홍보 등의 다양한 기능이 제공됨.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10.]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29

성평등가족부,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6월 11일 본격 시행

■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2026년 6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힘.

※ 정의 조항인 제2조와 명예훼손 금지 조항인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26.3.10.)부터 기 시행 중

■ 이에 따라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는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됨.

■ 이번 법 시행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10.]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30

성평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6월 10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평등공시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이번 협약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고용평등공시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 총괄 부처와 여성 고용 분야 전문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설계와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이번 협약을 계기로 '27년 고용평등공시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사업의 체계적 준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 성평등가족부는 고용평등공시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 공무원 인력을 확보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평등정책 관련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와 원인 분석, 국내외 제도 연구 등 전문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지원할 예정임.

■ 또한 양 기관은 오는 7월 중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을 발족하고, 세부 운영방안 마련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업무 이관 준비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임.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10.]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30

성평등가족부·한국기자협회 공동포럼 개최, 여성폭력 사건보도 원칙 논의

■ 성평등가족부는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와 공동으로 「더 나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제목으로 포럼 개최

■ 최근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건보도가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성평등한 사회 인식 확산에 미치는 영향 등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여성폭력 사건보도의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 모색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17.]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42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논의 본격화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 강조
- 성평등가족부는 그간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해 경영계·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수차례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 총 1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임.
- 또한, 지난 6월 10일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7월부터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을 구성하여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18.]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43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184건 의결

- 성평등가족부는 6월 8~9일(월~화)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조치 의결
-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으로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약 1억 92백만 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천 5백만 원임.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21.]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46

디지털성범죄 대응 범정부 협의체 출범

- 성평등가족부는 9일(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이하 '범정부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힘.
- 범정부 협의체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수사·차단·피해자 지원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업체계로, 이날 회의에는 4개 기관의 기관장이 직접 참여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함.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9.]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28

범부처 성평등 정책 협력체계 재가동 6년 만에 중앙 성평등위원회 협의체 개최

- 성평등가족부는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6개 부처 성평등위원장이 참여하는 「중앙 성평등위원회 협의체」개최
- 이번 협의체에서는 각 부처 성평등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고, 성평등 정책 발굴·수립·시행.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교육 등 성주류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부처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평등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
- 최근 돌봄 부담의 성별 불균형, 직장 내 성차별, 일·생활 균형 등 구조적 불평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협의체 재가동은 각 부처 민간위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2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50

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성평등가족부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0,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이번 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
- 지난 2022년 조사체계를 유지해 성폭력 피해양상을 비교 분석하면서 피해 지원체계 이용 경험과 지원 수요, 디지털성범죄 유형 등 최근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해 조사 문항을 보완하였으며, 내년부터 「여성폭력 실태조사」로 통합 조사된다.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2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51

성평등가족부-경찰청, 여성폭력 대응 위한 정책협의체 출범

-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국장급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 개최
-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은 그동안 필요에 따라 사안별로 협의해 왔으나, 최근 스토킹·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여성폭력의 양상 또한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여성폭력에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례적인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함.
- 정책협의체는 차관 주재 회의를 반기별 1회, 국장급 실무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 사건 발생 등 현안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임.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24.]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53

성평등가족부, 이주민 증가 시대 맞춤형 다문화정책 모색 위한 간담회 개최

■ 성평등가족부는 다문화 정책 대상 확대에 따른 정책적 대응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이날 간담회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총리 소속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민간위원과 다문화가족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책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교류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2009.~) : 다문화가족 삶의질 향상 및 사회통합 주요정책 심의·조정 기능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25.]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56

성평등가족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물놀이장·해수욕장 운영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적용

■ 성평등가족부는 7월1일(수)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물놀이장·해수욕장 운영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밝힘.

■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충분히 축적된 사업에 대해 담당자가 표준화된 점검 양식(체크리스트)을 활용해 신속하게 성인지적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성평등가족부는 정책 현장에서 성별영향평가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자가진단형 점검 양식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왔음.

* ('25년)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사업, CCTV 설치·운영사업, ('26.4월)축제·기념행사 사업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25.]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56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 급증하는 AI기술 이용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가 공식 출범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해 온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

및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함.

■ 이번 협의체는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AI 악용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 및 서비스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됨.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2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64

양육비 선지급제 1주년,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 167억 원 지원

■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7월 처음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지난 1년간('25.7.~'26.5.)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총 167억 3천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했다고 밝힘.

■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로, 양육 공백을 줄이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됨.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7. 5.]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79

성평등가족부, 「2025년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성평등가족부는 만 19세 이상 54세 이하 대한민국 여성 8,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재취업까지 평균 7.5년 소요
-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시간제 증가, 근로시간 감소
- 정책 수요는 일·생활 균형 강화, 돌봄 인프라 개선 가장 많아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7. 9.]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46

성평등가족부, "모두의 성평등·모두의 안전·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에 정책 역량 집중

■ 성평등가족부는 7월 16일(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 실시

■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 대통령 지시사항 31건 중 28건 완료
-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등 이행 중

■ 상반기 성과

- 양성평등위원회 대면 개최 및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 성주류화·고용평등·성평등문화 분야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4.30) 등 피해자 보호체계 고도화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법적 근거 마련
- 청소년상담1388 상담인력 확충
- 아이돌봄서비스와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하반기 6대 역점과제

① (모두가 공감하는 성평등 거버넌스 개편) 성평등위원회 개선권고 기능 신설, 성평등정책 전담부서 9개→24개 부처 확대, 「(가제)성별균형 성평등정책(안)*」 마련,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27년 전국 확대 추진

* (예) 남성 돌봄 참여 확대, 직무·진로 성별 분리 완화 등

②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 노동시장 성별격차 완화) '고용평등공시제' 법적 근거 하반기까지 마련 및 현장 안착 노력, 지역 중소기업 대상 성평등 기업문화 확산 교육 실시

③ (디지털성범죄 강력 대응 및 신속한 피해지원)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장관 직접 차단 요청 제도개선 추진, 광고수익 차단 및 사이트 개설 행위 처벌 강화 등 제재 강화, 범정부 협의체 중심 상시 협력체계 지속 운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조기 탐지 AI 시스템 고도화

④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방지 강화) '스토킹·교제폭력 강화 방안' 추진,「친밀 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최초 실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임대주택 확대 및 "레드플래그 10" 제작·홍보

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안전 강화) AI 활용 고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청소년회복지원시설·자립지원관 확충 및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대상 집중치유 프로그램 확대

⑥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 아이돌봄사 돌봄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가족관계교육 주간 지정,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지원기준 완화, 주거지원 확대, 민관 협력 등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07.15]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207

성평등가족부, 가족관계교육 주간 전국 가족센터에서 부모·부부 교육 집중 실시

■ 성평등가족부는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가족관계교육 주간'을 운영하며, 전국 가족센터에서 부부·부모·조부모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교육을 집중 실시함.

■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이번 가족관계교육 주간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교육에 참여하길 기대하며 성평등가족부는 생애주기와 가족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 간 소통과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라고 밝힘.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7.20.]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212

「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 성평등가족부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이 2026년 7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힘.
- 이번 개정령은 인신매매등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정된 시행규칙은 피해자 확인서 서식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와 현장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마련되었음.
-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인신매매등피해자 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하단에 기재되어 있던 제한적 유의사항 문구가 삭제되어, 피해자가 권리구제 절차 과정에서 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7.21.]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221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개최

- 성평등가족부는 7월 24일(금)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개최하고,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대응 정책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함.
- 현재 전국 성매매집결지 40개소 가운데 25개소는 폐쇄되었으며, 운영 중인 15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집결지 폐쇄 추진계획 수립 및 TF팀 운영, 성구매 차단 및 집결지 점검 단속 강화, 탈성매매 여성 지원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 방향을 모색함.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7.2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223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연구 결과보고회 개최

- 성평등가족부는 7월 23일(목)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연구」 결과보고회를 개최함.
- 이번 분석 결과를 ▲불법사이트 차단·삭제 등 대응 ▲불법사이트 생태계 구조 파악, ▲수사 단서 제공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자세한 분석 결과는 8월 중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에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임.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7.2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224

성평등가족부, 여성고용 개선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 미이행 사업장 37개소의 명단을 공표함.

■ 이번 공표 대상은 동종 업종, 사업장 규모에 비해 여성고용 비율이 3년 연속 낮고, 개선계획 이행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관리자 비율을 제고하는 등 노동시장의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며, 2026년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346개소, 지방공사·공단 166개소, 민간기업 2,283개소 등 총 2,795개소임.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07.29]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236

성평등가족부,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 이번 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단위 조사로, 2025년에는 디지털 강압적 통제*, 기술매개형 스토킹** 문항을 신설·확대해 다변화된 가정폭력 양상을 반영함.

* 디지털기기 이용 위치 확인 및 일상 감시, 온라인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받도록 함

** 전화·이메일·메신저·SNS 등으로 연락 시도 및 문자·영상 전송, 본인 SNS나 온라인 공간에 개인정보나 허위사실 유포, GPS·휴대폰 앱 등으로 위치 감시 및 추적 등

〈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

■ **(1년간 피해 경험)**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5.9%로, 2022년 7.6% 대비 1.7%p 감소

■ **(이별 폭력)** 이혼·별거·동거종료 경험자의 50.0%(여성 59.6%, 남성 40.0%)가 이별 전·후로 폭력 피해를 경험, 평생 동안의 피해 경험률 14.4%보다 3배 이상 높음

■ **(스토킹)**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율은 여성 29.1%, 남성 18.9%였고,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 SNS 감시 등 기술매개형 스토킹 모두 여성 피해율이 높아

- 스토킹 피해 여성의 38.2%가 6개 이상 폭력유형이 중첩된 복합 피해를 경험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는 낮아졌으나, 가정폭력을 피해자나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인식은 일부 강화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7.30.]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237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 성평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힘.

■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기관별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불법사이트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

■ 특히 지난 4월 출범한 통합지원단이 분석한 불법사이트 3만4,628건의 심층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발표 예정인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안)'의 주요 내용을 협의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업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임.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7.30.]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238

아동·청소년 성착취 상담채널 '디포유스', 3년간 1,283명 상담 지원

■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상담채널 '디포유스(d4youth)' 개설 3년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전국 1,000여 개 아동·청소년 유관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힘.

* 디포유스(@d4youth: 청소년(Youth)을 위한(for=4) 디지털(Digital) 채널) / 카카오톡(채널), 라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트위터)에 상담 채널 운영 중

■ 성과 분석 결과, 디포유스는 지난 3년간 피해 아동·청소년과 조력자 등 1,283명을 상담했으며, 이 가운데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심리상담, 수사·법률 지원 등 총 325건의 피해 지원을 연계함.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7.31.]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240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전문위원회 개최

■ 성평등가족부는 원민경 장관 주재로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법조계, 현장 관계자 등)가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힘.

•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여성폭력 대응 환경 변화에 발맞춰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관련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함.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로, 제1전문위는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성희롱 · 성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함.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8.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244

[보건복지부]

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금)부터 8월 24일(월)까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 동 개정안은 인구 관련 사전협의 대상 범위,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업무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음.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2026. 9. 10. 시행)됨에 따라 인구 관련 예산의 사전협의 대상, 인구전략위원회 참여부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임.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7.30.]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486&tag=&nPage=3

보건복지부,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 급여 수준 및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현황,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등에 관해 조사한「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 장기요양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19년 이후 3년마다 실시하고 있음.

■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장기요양 수급자) 85세 이상 비율 증가, 재가 생활 욕구 확대
• (수급자 가족) 장기요양서비스로 부양부담 완화, 재가 돌봄 의향 증가
• (장기요양요원) 종사자 고령화, 비경제적 근무 이유 증가
• (장기요양기관) 재가 기관 확대, 이용자 모집·인력채용 어려움
• (정책 요구) 이용시간 및 서비스 종류 다양화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8.7.]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533&tag=&nPage=2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및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 · 의결함.

■ 이번 개정은 「남녀고용평등법」('26.2.19, 3.17. 공포), 「고용보험법」('26.3.17.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등이 본격 시행될 예정임.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8.11.]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6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족이 있는 삶"을 위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소통 확대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가족소통교육' 등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 방향을 논의하고 주요 추진과제 발표

*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 참석

■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녀 양육과 건강한 부부관계 및 역할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부처간 논의를 거쳐 발표되는 내용은 오는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 중점 과제에 포함되어 추진 예정

• 참고문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6. 6. 26.]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577&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S&pageIndex=1

결혼 페널티 해소하는 세제개편 발맞춰 혼인·출산 지원 강화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혼인·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지원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고 밝힘.

- 이번 개편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던 세제상 불이익, 이른바 결혼페널티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결혼을 해도 기존에 받던 혜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한 것이 핵심으로 무주택 주말부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각각 적용, 혼인으로 경차 2대 보유시 1대분 유류세 환급, 출산지원금 비과세, 임신단계까지 확대 등이 포함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인구전략 기본계획」

에 이번 세제개편안의 혼인·출산 지원 조항들을 청년·신혼가구 자산형성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로 통합 반영할 예정이며,「2026년 세제개편(안)」은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됨.

• 참고문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6.8.12.]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588&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S&pageIndex=1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원고투고 및 자료구독 안내

- 『젠더리뷰』 원고투고 안내
- 『여성연구』 논문투고 안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구독회원제' 가입 안내
- 연구보고서 판매 안내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원고투고 안내

『젠더리뷰』는 국내외 여성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특집기사 기획 및 쟁점도출과 새로운 연구주제 및 정책개발 홍보를 위한 정기간행물로서 연 4회(봄, 여름, 가을, 겨울) 발간하고 있습니다. 젠더리뷰는 각계에서 활동하는 여성관련 전문가나 일반대중과 여성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기 위해 원고를 상시 공모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여성·가족정책과 연구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독자여러분의 적극적인 투고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젠더리뷰』가 더욱 알찬 계간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원고 내용

여성·가족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동향(기획특집), 여성·가족 관련 현안에 대한 진단(이슈리뷰), 국내·외 여성·가족 관련 정책 정보(국내·외 정책동향), 통계로 보는 여성 등 부문별 원고

고지사항

『젠더리뷰』는 2025년 봄호(vol.76)부터 인쇄본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젠더리뷰』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kwdi.re.kr) 및 온라인 학술저널 플랫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투고 요령 및 발간 예정일

원고 분량은 A4 7매(11pt, 줄간격 160, 좌우여백 30) 내외로 하되 10매를 초과할 수 없음.

- 기획특집 원고 : 10매 내외(원고료 편당 30만 원)
- 이슈리뷰, 국제리뷰 원고 : 7매 내외(원고료 편당 20만 원)

계간지 발간일이 2월, 5월, 8월, 11월 말임을 감안하여 발간일로부터 최소 45일 이전에 원고를 제출해야 해당 월에 게재될 수 있음.

투고 관련 사항

- 기고자의 자격은 별도로 제한 없음.
- 기고된 원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함.
- 게재되는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 원고 제출 시 반드시 원고 작성자의 연락처를 제출하고, 원고 작성 시 참고문헌 등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람.
- 『젠더리뷰』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있음.

원고 제출처

- 주 소 :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간행물발간 담당
- 전 화 : (02) 3156-7288
- E-mail : journal@kwdimail.re.kr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학술지『여성연구』2026년 4호 논문투고 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여성연구』는 성평등 및 여성정책 관련 기초이론 및 관련 이슈를 탐색하고, 현안 해결에 기여할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학술지입니다.『여성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여성연구』2026년 4호(통권 131호)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게재 논문 내용

- 여성문제 및 여성정책과 관련되는 학문분야의 논문으로서 학술 논문에 요구되는 형식과 체계를 갖춰 작성된 연구 논문에 한합니다. 단,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고지사항

- 『여성연구』는 2025년 2호(통권 125호, 2025년 6월 발행)부터 인쇄본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자들께는 별쇄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여성연구』게재 논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kwdi.re.kr), KCI 홈페이지(kci.go.kr) 및 온라인 학술저널 플랫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행을 계기로 학술지 질 제고와 온라인 배포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여성연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성연구 투고 요령

- 원고분량은 인쇄쪽수 20쪽(200자 원고지 120매 해당) 이내(요약 포함)로 하되 최대 30쪽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원고 편집 기준 및 자세한 내용은「여성연구」논문작성요령을 참조해야 합니다.

투고 자격

- 성평등 및 관련 정책 연구 전문가

발행예정일 및 접수 마감일

- 2026년 10월 31일 (2026년 12월 31일 발간 예정)

논문제출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s://kwdi.jams.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직접 논문 투고

논문 관련 문의

- 전 화 : (02) 3156-7288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구독회원제' 가입 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과 관련된 정책자료, 기초연구자료, 학술지, 통계자료, 여성 관계자료 등 매년 30여 종의 각종 연구보고서와 『젠더리뷰』, 『여성연구』 등 정기간행물을 발간·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에서는 여성정책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각급 도서관 그리고 여성문제 연구자 등이 우리원에서 생산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구독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와 같이 자료구독회원으로 등록하시어 우리원 자료를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종류 및 연회비

- 기관회원 : 우리원에서 발간한 모든 자료 제공
  단, 대외배포를 제한한 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제외(연/150,000원)
- 개인회원 : 우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연/100,000원)

회원 특전 및 유효기간

- 회원이 되시면 우리원의 여성정보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음.
- 회원에게는 우리원의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함(회원가입 시 꼭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람).
- 회원에게는 우리원 자료 구입 시 우송료를 면제.

가입 방법

- 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람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는 영수증 사본을 통보해 주시기 바람).
- 회비납부
  우리은행 019-219842-01-006(예금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의처

- 주 소 :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관리 담당
- 전 화 : (02) 3156-7283
- E-mail : kdata@kwdimail.re.kr

*** 새로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연구보고서 판매 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 판매' 서비스 안내

자료 판매 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정책의 저변 확대와 사회 일반의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정책 관련 연구자 등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원에서 생산한 모든 자료에 대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매 대상 자료

- 본원에서 발간·제작한 연구보고서 자료(용역과제 제외)

판매 방법

- 전화 주문 판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관리 TEL. (02) 3156-7283
- E-mail 주문 판매 : kdata@kwdimail.re.kr
- 자료 구독 회원가입 및 주문 판매 : 본원 홈페이지 참조(www.kwdi.re.kr)

판매 대금 납부

-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019-219842-01-006(예금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문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의 양성평등 및 가족정책 전담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등록번호: 서울바 02992(계간)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TEL 02)3156-7000 FAX 02)3156-7007 https://www.kwdi.re.kr